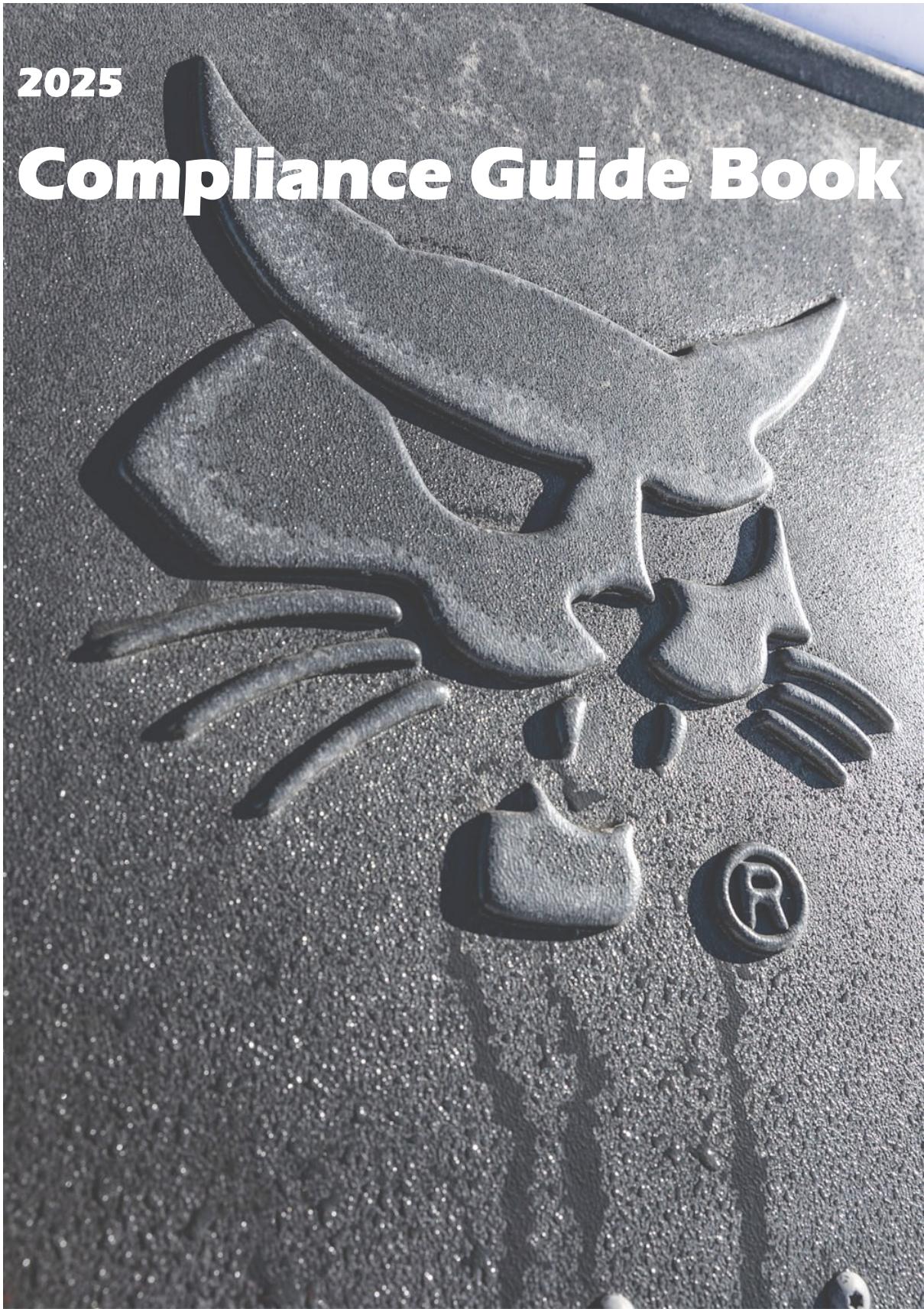


2025

Compliance Guide Book



 **Bobcat**

자율준수관리자 발간사

안녕하십니까? 두산밥캣 자율준수관리자 양영모입니다.

오늘날 지속가능 기업의 최우선 요건은 ESG경영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투명한 법규준수 문화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우리 임직원 모두는 국내외 법률 및 규정 준수를 최우선으로 삼고 업무 과정에서 올바른 행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Compliance Guide Book'은 임직원들에게 국내 공정거래 관련법규, 글로벌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에 대해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업무 시 주의사항들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과 규정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법 위반에 따른 Risk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본 가이드 북은 '1.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이해'를 제외하고 총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도급법, 대리점법, 공정거래법, 경제제재의 순서로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실무 과정에서 법과 규정 준수 관점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손쉽게 찾아보고,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업무과정에서 스스로 점검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법률에 대한 소개와 유의사항, 관련 사례 및 Do/Don't 형태로 업무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것입니다.

또한 두산밥캣의 협력사, 딜러, 파트너사 등과의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본 가이드 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산밥캣 CLO&CCO

양영모



1. Compliance Guide Book 개정 연혁

구분	시기	주요 변경 내용
발간	2004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최초 발간
개정 1차	2007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개정
개정 2차	2011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개정
개정 3차	2013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개정
개정 4차	2015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개정
발간	2016년	내부거래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개정 5차	2017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개정
발간	2018년	하도급거래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대리점거래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개정 6차	2020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개정
개정 7차	2023년	Compliance Guide Book 전면 개정
개정 8차	2024년	주요 법개정 내용 반영,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예방가이드 추가
개정 9차	2025년	주요 법개정 내용 반영, 2025년 법령별 사례 추가

*2023년 이전 개정은 (주)두산, 두산산업차량(주)에서 진행

2. Compliance Guide Book 소개

본 Compliance Guide Book은 두산밥캣 및 자회사 임직원들이 업무 수행에 있어서 공정거래 관련 법률과 글로벌제재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임직원들은 이를 잘 활용하여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 Compliance Guide Book 내용

하도급법	대리점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당 대금결정·부당특약, 기술유용 등	구입강제행위
공정거래법	무역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불공정 거래행위·부당지원 부당 공동행위 등	UN 제재, EU 제재, 전략물자 등

4. 주요 개정 이력

관련법	개정내용	개정 연도
하도급법(23.07.18 신설)	『하도급대금 연동제』 하도급대금에서 10% 이상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 변동시(상승/하락) 연동제 적용	2024
하도급법(22.01.11 신설)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 설치여부 연 2회 공시	2024
공정거래법(24.01.01 공포)	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대상이 되는 기준 금액 변경(50 억 → 100 억)	2024
공정거래법(24.06.21 신설)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평가기준, 절차, 유인 부여 안내	2025
하도급법(24.08.28 개정)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손해액의 3 배 → 5 배)	2025
대외무역법(24.08.21 개정)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	2025
하도급법(25.04.01 개정)	부당 특약에 대한 무효 신설 조항 반영	2025
공정거래법(25.04.23 개정)	CP 'A'등급 기업에 대한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삭제	2025

Contents

I. 자율준수 프로그램의_ 관련부서: 전사	10
1.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개요.....	10
2. 자율준수 운영의 필요성 및 목적.....	10
3.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핵심 8대요소.....	12
4. 자율준수 프로그램 모범 운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14
II. 하도급법_ 관련부서: 구매/연구개발/생산/AM/PS/영업 등	16
1. 하도급법 목적 및 특성	16
가.하도급법 목적	16
나.하도급법 특성	16
2. 하도급법 체계.....	17
3. 하도급법 적용 범위	17
가.하도급법 기본개념	17
나.하도급법 적용대상 요건	18
다.하도급법 적용대상 거래	19
라.하도급법 적용대상 기간	22
마.상생협력법(중소벤처기업부 소관)과 하도급법(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비교	23
4. 하도급법 주요 내용	24
가.원사업자의 의무사항.....	25
나.원사업자의 금지사항.....	68
다.발주자의 의무사항	131
라.수급사업자의 준수의무사항	131
5. 하도급법 위반시 제재	133

III. 대리점법_ 관련부서: 영업/AM/PS/마케팅 등	140
1. 대리점법 개요	140
가.대리점 거래의 정의	140
나.대리점 거래 적용 제외	141
다.다른 법률과의 관계	141
라.분쟁조정(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협의회를 두고 분쟁조정)	141
2. 대리점법 상세내용	142
가.대리점거래 계약서 작성 의무	142
나.대리점법상 금지행위	143
3. 대리점법 위반시 제재	163
IV. 공정거래법_ 관련부서: 전사	169
1. 공정거래법 목적 및 특성	169
2. 불공정거래 행위	170
가.부당한 거래거절	170
나.차별적 취급	175
다.거래상 지위남용	180
라.구속조건부 거래	186
3.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3배 배상제 대상]	191
가.부당한 공동행위 정의	191
나.부당 공동행위 유형	192
다.공동행위의 예외적 허용	196
라.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196
마.자진신고자 감경제도(Leniency Program)	197
4. 부당한 지원행위(내부거래)	202
가.부당한 지원행위 정의	202

나.부당한 지원행위 유형	203
다.부당한 내부거래 제재	205
V. 무역거래_ 관련부서: 수출 및 수입업무 담당부서.....	213
1. 무역거래 자율준수의 필요성 및 프로그램 운영 목적.....	213
2. 주요 경제제재	214
가.UN 제재	214
나.대한민국의 경제제재.....	214
다.미국의 경제제재.....	214
라.EU의 경제제재.....	215
마.전략물자(Strategic Goods) 거래 제한 국제 협정 준수	215
3. 적용범위	216
4. 기본원칙	216
5. 업무 시 준수사항	216
6. 업무 상 주의사항	221
7. 관련 사례	223
가.대우종합기계(邱 두산공작기계, 現 DN솔루션즈) 미얀마 불법 수출(2006)	223
나.ZTE의 대 북한-이란 제재 위반(2017).....	223
다.3M의 대 이란 제재 위반(2023)	224
VI. 업무 시 점검사항_ 관련부서: 전사	230
1. 공정거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230
가.하도급법 관련	230
나.대리점법 관련	235
다.공정거래법 관련.....	236
2. 무역거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238

3.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예방가이드.....	238
가.부당지원 행위 예방을 위한 행동 지침	238
나.하도급법 준수를 위한 행동 지침.....	241
다.대리점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위한 행동 지침	245
4. 신고센터 절차	246
가.접속경로.....	246
나.신고하고자 하는 회사 선택 후 신고 접수.....	246
5. 유관 부서	247
6. 법규 위반사항 발생시 신고 (HOT-LINE)	248

자율준수 프로그램



I. 자율준수 프로그램_관련부서: 전사

1.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개요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 및 행동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의 핵심은 법규 위반시 수반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동규범을 마련하는 것을 말함

2. 자율준수 운영의 필요성 및 목적

가. 필요성

1) 대내외 신인도 제고 및 ESG 경영의 핵심 요소

자율준수 도입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투명경영, 공정경영 실천 기업의 이미지를 더욱 제고할 수 있으며, ESG 기업 경영을 실천할 수 있음

2) 법 위반에 따른 기업의 손실을 사전 예방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기업은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 뿐만 아니라 법 위반 사실 보도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같은 유형, 무형의 손실이 발생하기에 이러한 리스크의 사전예방을 위해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3)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에서도 실무자들이 우발적으로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경쟁당국은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에 대한 과징금 경감의 혜택을 줄 수 있음

나. 두산밥캣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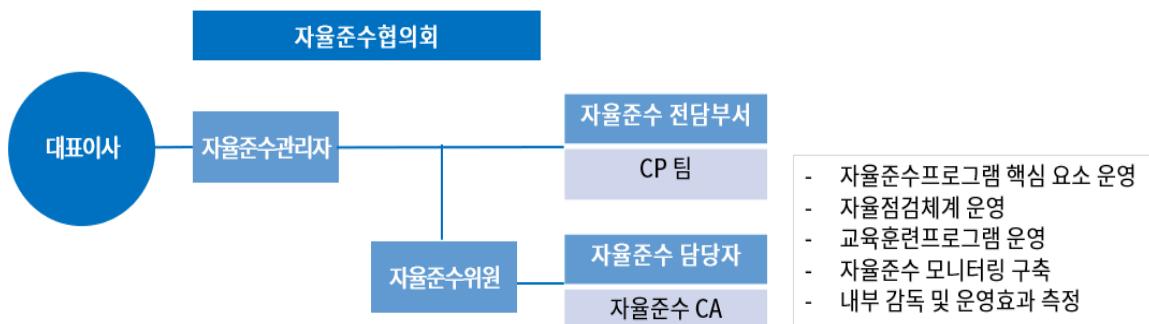
두산밥캣은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규정을 제정, 운영하고 있음

- 규정 명: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규정

다. 자율준수협의회 및 자율분쟁조정기구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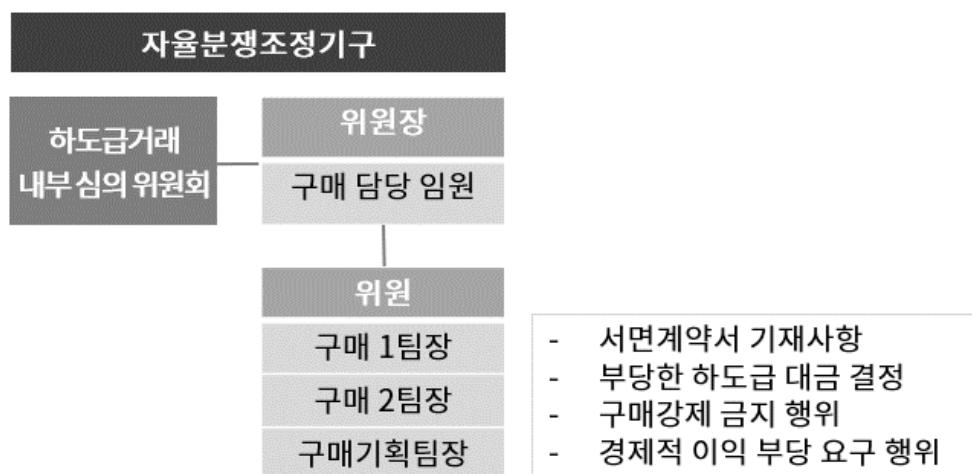
1) 자율준수협의회

- ① 기능: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수행 자문, 자율준수와 관련된 중요사항 심의 및 필요사항 권고, 자문
- ②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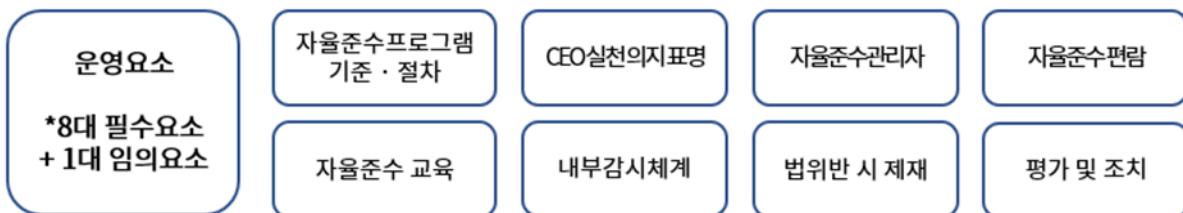
2) 자율분쟁조정기구

- ① 기능: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을 당사 스스로 점검하고 사전에 심의
- ② 조직도



3.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핵심 8대요소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래의 8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가. 자율준수 프로그램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등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함

나. 최고 경영자의 자율준수 실천의지 표명

최고 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등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함

다.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이사회 등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조직 내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효과적인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함

라.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자율준수편람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된 것으로 기업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관련된 법규 및 자율준수프로그램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하고, 편람은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되어야 함

마.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자율준수 프로그램 기준과 절차 및 법규 준수 사항 등에 대하여 최고 경영자 및 구매·영업부서 등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바. 내부감시체계 구축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감사 및 감사결과는 주기적으로(최소 연 2회 이상)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되어야 함

사.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관련 법규 위반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운용하여야 하며, 또한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추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함

아.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자율준수프로그램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함

4. 자율준수프로그램 모범 운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가. 인센티브 제도 의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 불가피하게 혹은 임직원의 실수로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제재 수준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

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 인센티브

공정위 등급평가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 심층면접평가의 3단계로 평가하고 있음. 1~2 단계 평가 결과 80점(AA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3단계 심층면접평가를 거쳐 최종 등급을 부여하게 됨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해당기업에게는 평가등급 유효기간(2년) 중 1회에 한하여 아래와 같은 인센티브가 주어짐

[평가등급 별 인센티브]

등급	과징금 감경률 (최대)	직권조사 면제	시정조치 공표명령	
			간행물 크기/매체 수	사업장/전자매체 공표
AAA	15% (20%)	2년	2단계 하향조정	공표기간 단축
AA	10% (15%)	1년 6개월	1단계 하향조정	

※ 당해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 전에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당해 법 위반행위를 탐지하여 중단하였음을 입증한 경우, 감경률에 더하여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추가 감경 가능

다만, 다음의 경우는 위의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음

- (1) 자율준수 전담부서가 위반행위에 개입한 경우
- (2) 위반행위가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 (3) 경쟁제한성이 강한 부당공동행위(가격, 거래조건,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 담합)의 경우
- (4) 이사 또는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하도급법



II. 하도급법_ 관련부서: 구매/연구개발/생산/AM/PS/영업 등

1. 하도급법 목적 및 특성

가. 하도급법 목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대기업)와 수급사업자(중소기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하도급법 제1조(목적))

하도급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경제활동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수평적, 협력적 관계를 통해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거래상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함

나. 하도급법 특성

1) 민법 내지 상법의 특별법

하도급법은 강행법으로 당사자 간 합의로 법 적용을 배제하지 못함

2) 공정거래법의 특별법

하도급법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보다 우선 적용됨

3)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특별법

건설산업기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과 중복 적용가능. 단, 위 법 적용이 하도급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됨

4) 하도급법은 국내법

발주자가 해외사업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국내사업자(법인)인 경우에만 하도급법이 적용됨. 또한,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을 가진 경우에는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됨

2. 하도급법 체계

가. 체계도

목적 및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적용업종: 제조, 수리, 건설, 용역✓ 적용대상: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거래, 중견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거래✓ 적용기간: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원사업자의 의무사항(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1) 서면발급 및 서류보존 의무(2)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3) 하도급대금 지급의 의무(4)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및 통지 의무(5)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6) 선금금 지급의 의무(7) 관세 등 환급금 지급의 의무(8) 내국신용장 개설의 의무
하도급 거래 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1)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2)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3)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4) 부당한 반품의 금지(5)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의 금지(6) 물품 구매대금 등의 부당 결제청구의 금지(7)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8)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유출행위 금지(9)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금지(10)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11) 보복조치의 금지(12) 탈법행위 금지(13) 부당한 특약의 금지
발주자의 의무사항(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1)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수급사업자의 준수의무사항(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1) 서류보존 의무(2) 신의성실의 원칙준수(3) 원사업자의 위법행위 협조거부

3. 하도급법 적용 범위

가. 하도급법 기본개념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호 보완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법이면서 강행법규임(하도급법에 위반된 사항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경우라도 처벌을 받음)

하도급법은 양사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의 서면발행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원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수급사업자로부터 위반행위의 정보제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위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나 수위탁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음

하도급법의 주된 목적은 수급사업자의 교섭력을 보완하고 원·수급사업자 간의 수직적이고 불공정한 거래관계를 대등한 협력관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금지사항, 의무사항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1차적인 입증 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음

나. 하도급법 적용대상 요건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대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사는 하도급법상 대기업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봄 ☞ 두산그룹 계열회사 간 거래는 하도급법 적용 안됨
대기업	위탁 받은 중견기업의 연간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중견기업	연간 매출액 2조원 이상의 중견기업이 연간매출액 800억원 미만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에 위탁한 경우 적용
중소기업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보다 원사업자의 직전 년도 매출액 (건설: 당해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이 많은 경우 적용

1) 중소기업 정의

- ① 제조·서비스 업종별: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3개년 평균·연간매출액 4백억원 이하 ~1천5백억원 이하
- ② 건설업: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3개년 평균·연간매출액 1천억원 이하

2) 중견기업 정의: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 공공기관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한 회사가 아닌 기업

※ 법 개정에 따라 중견기업이 수급사업자로 보호되는 경우

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이하 ‘대기업’)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

② 소규모 중견기업이 대규모 중견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

3) 적용 제외 대상 중소기업(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연간매출액(시공능력 평가액)이 일정규모 미만 중소기업은 원사업자 대상에서 제외

위탁 유형	연간매출액(시공능력평가액)
용역위탁	10억원 미만
제조·수리위탁	30억원 미만
건설위탁	45억원 미만

다. 하도급법 적용대상 거래

1) 제조위탁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業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함

① 물품의 제조 ② 물품의 판매 ③ 물품의 수리 ④ 건설

※ 그 업에 따른 ‘물품의 범위’는 공정위가 별도 고시

①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사업자가 물품의 제조, 판매, 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

(ㄱ) 제조, 수리, 판매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 단, 당해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는 제외한다.

(ㄴ) 물품의 제조·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로서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 단 대량생산품목

으로 샘플 등에 의해 단순 주문한 것은 제외한다.

- (ㄷ) 물품의 제조를 위한 금형, 사형, 목형 등
- (ㄹ) 물품의 구성에 부수되는 포장용기, 라벨, 견본품, 사용안내서 등
- (ㅁ) 상기 물품의 제조·수리를 위한 도장, 도금, 주조, 단조, 조립, 염색, 봉제 등 (임)가공

2) 수리위탁

주문에 의해 물품을 수리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수리를 業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것

※ 대상: 차량수리업자가 차량수리를, 선박수리업자가 선박수리를 다른 사업자에 위탁

① 수리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 (ㄱ) 사업자가 주문을 받아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하며, 예를 들어 자사의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 등의 수리를 사내에서 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수리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함

※ 만약 사내에서 행하여 지지 않고 전적으로 외부에 위탁하는 기계 수리는 해당사업자의 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수리위탁에 해당하지 않음

3) 건설위탁

건설업자가 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① 건설위탁의 범위

- (ㄱ)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의 건설위탁: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시공자격이 있는 공종에 대하여 당해 공종의 시공자격을 가진 다른 등록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 (ㄴ) 전기공사업자의 건설위탁: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

른 공사업자가 도급 받은 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 (ㄷ)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건설위탁: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 받은 정보통신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한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 (ㄹ) 소방시설공사업자의 건설위탁: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도급 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한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 (ㅁ) 주택건설 등록업자의 건설위탁: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록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자격이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 (ㅂ) 환경관련 시설업자의 건설위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업자가 그 업에 따른 해당환경전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자격이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 (ㅅ) 에너지관련 건설사업자의 건설위탁: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등록업자,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시공자가 그 업에 따른 해당 에너지 관련 시설공사를 시공자격이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 (ㅇ) 경미한 공사의 건설위탁: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건설사업자 및 「전기공사업법」 상의 공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를 상기 법령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 (ㅈ) 자체 발주공사의 건설위탁: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신축공사 등 건설공사를 자기가 발주하여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4) 용역위탁

지식·정보 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業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業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사업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이 경우 지식·정보 성과물의 작성 또는 용역의 범위는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함

① 용역위탁의 범위

- (ㄱ)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물류사업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물류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 (ㄴ)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업, 물류시설 운영법, 물류서비스업의 활동
- (ㄷ) 「항만운송 사업법」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 및 제2조 제4항의 규정

라. 하도급법 적용대상 기간

하도급법에 의하면, 공정위는 당해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단, 기술자료를 유용하거나 유출한 경우에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건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다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되거나 분쟁조정 당사자가 분쟁조정 신청을 한 사건의 경우 3년이 경과하여도 조사가 가능함(하도급법 제23조)

1) 거래종료일

- ① 제조·수리 및 지식·정보성과물의 제작위탁: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 ②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
- ③ 건설위탁: 공사가 완공된 날
- ④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중지된 경우: 해지 또는 중지된 날

마. 상생협력법(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과 하도급법(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의 비교

1) 상생협력법 제정 배경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상생협력법상 수탁거래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수탁기업)에게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 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의미함

3) 하도급법과의 주요 차이점

구분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법 적용 대상 거래관계	7 가지 위탁 내용에만 적용		30 가지 유형의 거래 모두 포함 (위탁기업의 업(業)과 위탁내용 관계 없음/ 예시: 제조업자의 공사위탁, 용역업자의 제조 위탁 등) ☞ 하도급법 보다 적용대상 확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제조/판매/수리/건설업자	제조업자	
	수리업자	수리업자	
	건설업자	건설업자	
	용역업자	용역업자	

준수사항

서면교부의무	서면교부의무(3 조)	약정서 교부 의무(21 조)
서면보관의무	서면보관 의무(3 조 12 항)	서류비치 의무(39 조, 시행규칙 11 조)
부당한 대금결정 금지	동종, 유사품의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결정 금지(4 조)	동종, 유사품의 통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 결정 금지(25 조 1 항 3 호)
물품 등 구매강제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 지정 물품 등 구매강제 금지(5 조)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기업 지정 물품구매강제 금지(25 조 1 항 5 호)

선급금 지급 의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 지급(6 조)	-
부당한 수령거부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 수령, 인수거부 금지(8 조)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음에도 물품 수령 거부 금지(25 조 1 항 1 호전단)
부당한 발주취소 금지	제조 등 위탁 후 수급사업자 책임이 없음에도 위탁 취소 금지(8 조)	제조 의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를 기피하는 행위(25 조 1 항 10 호)
발주 감소 또는 중단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적 발주 수량보다 현저히 감소 중단 금지(25 조 1 항 7 호)
검사의무	객관적, 공정, 타당한 검사기준 납품일로부터 10 일 이내 검사 통지의무(9 조)	객관적, 타당한 검사기준에 따라 공정, 신속한 검사 불합격 사유 서면 통보(23 조)
부당한 반품 금지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10 조)	-
부당한 대금 감액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 시 정한 대금 감액 금지(11 조)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음에도 납품대금 감액금지(25 조 1 항 1 호 후단)
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 등 경제적이익 제공 요구 금지(12 조의 2)	-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12 조의 3 1 항)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12 조의 3 3 항) 기술자료 유용 금지(12 조의 3 4 항)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25 조 1 항 12 호)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21 조의 2) 기술자료 유용 금지(25 조 2 항)
기술자료 임차제도	-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보관(임차)함으로써 기술유출 방지(24 조의 2) 기술자료 임차 요구 수탁기업에게 불이익 제공 금지(25 조 1 항 13 호)
경영상 정보 요구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상 정보 요구 금지(18 조 2 항 3 호)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상 정보 요구 금지(25 조 1 항 13 호의 2)

4. 하도급법 주요 내용

가.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1) 서면발급 및 서류보존 의무

서면 교부 의무는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발생시 사실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 사후분쟁 예방 필요성으로 공정위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① 관련 법 조항

의무사항	내용
서면의 발급(제 3 조)	원사업자는 발주시에 수급사업자의 급부내용,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및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음
서류의 보존(제 3 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함. 단 기술자료 관련 서류(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비밀유지계약 등)은 7년간 보존해야 함.

② 위반유형

- (ㄱ) 법정 기재사항이 일부 또는 전부 누락된 서면을 교부한 경우(불완전한 서면교부)
- (ㄴ) 추가 또는 변경된 위탁 수행 내용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 간의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ㄷ) 위탁 이후에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 등 서면을 자연 교부한 경우
- (ㄹ) 하도급거래 당사자의 서명,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한 경우
- (ㅁ) 계약서면의 내용은 사실관계를 반영하여야 하나 실제의 하도급거래와 상이한 서면을 교부한 경우
- (ㅂ)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ㅅ) 구체적인 계약서의 형태를 갖추지 않았으나 원사업자의 현장관리자가 추가공사에 대한 금액산정이 가능한 약식서류 등을 제공한 경우

③ 원칙

- (ㄱ) 중요 사항(법정 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 발급
- (ㄴ) 원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정 기재사항(7가지)을 작성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업무를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여야 함
- (ㄷ) 교부된 서면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 명의의 기명날인(서명)이 되어 있어야 함

④ 법정 기재사항(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

- (ㄱ)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목적물의 내용(수량, 단가 포함)
- (ㄴ)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는 시기 및 장소
- (ㄷ)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역무의 위탁 시 제외)
- (ㄹ)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ㅁ)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 수리 또는 시공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ㅂ)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 (ㅅ)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 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 하도급법에서는 발주서면의 양식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발주시에 하도급법상 요구되는 구체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거나 기본 계약서를 보완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

⑤ 서면의 발급시기: 사전 발급(하도급법 제3조)

위탁 종류	발급 시기
제조위탁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수리위탁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건설위탁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용역위탁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

⑥ 거래 단계별 발급 서면 종류

단계	발급 서면의 종류
거래개시	① 하도급계약서(추가, 변경계약서 포함)(제 3 조 제 1 항)

(하도급법 제 3 조)	<p>② 하도급계약 확인서면(제 3 조 제 6 항,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관련) - 수급사업자로부터 구두발주 내용에 대해 확인요청을 받았을 경우, 인정 또는 부인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p>
거래과정 (하도급법 제 8~16 조)	<p>③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제 8 조 제 2 항) ④ 검사결과 통지서(제 9 조 제 2 항) ⑤ 감액서면: 감액 시 그 사유와 기준, 물량, 금액, 감액방법 등 기재 (제 11 조 제 3 항) ⑥ 기술자료 요구서: 기술자료 요구 시 명칭 및 범위, 목적, 비밀유지, 권리귀속 관계, 기술자료 사용기간, 반환 또는 폐기방법 대가 등 기재(제 12 조의 3 제 2 항) ⑦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변경 내역(증액 또는 감액) 통지서(제 16 조 제 2 항)</p>

⑦ 사전 서면발급의무 예외

- (ㄱ) 원사업자는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해,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음.
 - ☞ 이 경우 해당사항이 정하여 지지 않은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는 원사업자가 입증해야 함
 - ☞ 원사업자는 해당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새로운 서면을 발급 해야함
- (ㄴ) 기본계약서를 발급하고, FAX, 이메일 또는 개별계약서 형태로 위탁일, 품명, 수량, 단가, 하도급대금, 납기 등 하도급법상 중요 기재사항을 담은 서면발급은 적법한 서면 발급임
- (ㄷ) 빈번한 거래에 있어 계약서에 법정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 별 발주 시 제공한 물량표 등으로 누락사항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적법한 서면 발급임
- (ㄹ) 법정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으나 업종의 특성 등에 비추어 거래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서면 발급임
- (ㅁ) 2종 이상의 계약서가 존재할 때는 실제의 하도급 거래관계에 입

각한 서면을 적법한 것으로 봄

※ 하도급계약 추정제(하도급법 제3조 제8항, 제9항)

원사업자가 위탁을 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일정한 사항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01 해당사례

사실
관계

세은건설은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금속구조물과 창호공사업을 하는 건설사업자에 3건의 공사를 합계 6억 8860만원에 건설 위탁하고 해당 공사를 시공토록함. 그러나 공사 시공 중 총 68건의 세부 내역을 추가해 공사 내용을 변경했는데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추가 계약서 등 하도급법상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지 않았음

공정위
판단

세은건설의 이 같은 행위는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추가·변경 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지 전까지 법정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며, 세은건설에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함(의결일: 2023.2.27)

사실
관계

SK옵션플랜트는 2018년 4월말 A사에 위탁한 선박블록 조립작업의 물량과 단가를 변경했음에도 이에 대한 변경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고, 2018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는 A사에 맡긴 해양플랜트 구조물공사에 대해 추가 작업 물량을 위탁했지만 이에 대한 추가계약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음

공정위
판단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 이후 추가 위탁을하거나 계약 내용을 바꿀 경우 이에 대한 계약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공정위는 SK옵션플랜트에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함(의결일: 2023.4.19)

**사실
관계**

삼성중공업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06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38,451건의 선박, 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후에 발급함. 삼성중공업은 계약일자를 하도급 업체와의 전자 서명이 완료된 날이 아닌 자신이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로 설정하였으며, 계약서 작성 시점에 작업이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공사 시작일이 계약서 작성 시점 이후가 되도록 설정함

**공정위
판단**

삼성중공업의 계약 시스템 문제점으로 인해 표면상으로는 계약 서면을 늦게 발급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전자 서명 완료일과 최초 공사 실적 발생일 등을 추가적으로 비교 검토한 결과 계약서 작성 시점에 이미 작업이 시작된 점이 발견되었고 이는 서면 지연 교부로 불공정하도급거래에 해당함.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에 서면발급 의무 위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등 총 과징금 36억원 부과 및 검찰 고발함(의결일: 2020.4.23)

**사실
관계**

삼성SDI는 2015년8월4일부터 2017년2월23일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이차전지 제조 등과 관련한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이를 납품 받는 과정에서 해당 부품의 제작이나 운송(트레이)과 관련한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음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삼성SDI가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기술자료를 통해 다른 부품 등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으나, 법정 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해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 공정위는 삼성SDI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7,000만 원을 부과함(의결일: 2022.4.18)

사실 관계

테라젠테크는 2018.7.12. ~ 2019.9.2.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디스플레이 기계 장비의 조립, 제작 등 3건을 제조 위탁하면서, AP4공장 및 B9 공장 기계장비 제조위탁 건의 경우 법정기재 사항 중 검사방법 및 시기가 기재된 서면을 지연 발급했고, 위탁일과 위탁 목적물 등 4개 사항에 대해서는 양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않은 서면을 발급했으며, 납품 장소 및 시기, 조정요건 등이 기재된 서면은 발급하지 않았음. 또한, 우한공장 판넬 제조위탁 건의 경우 법정 기재 사항 중 위탁일과 위탁목적물 등 5개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음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테라젠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디스플레이 장비 제작 등을 제조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하거나 제조위탁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하도급대금 및 어음 할인료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1,600만 원, 잠정)을 부과함(의결일: 2023.7.12)

신규사례

사실 관계

에스케이오션플랜트(주)는 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선박 부분 품의 도금·도장 등 작업 관련 20건의 거래에 대하여 단발성 거래라는 이유로 별도 계약서면 없이 자사와 수급사업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발주서만을 발급하고, 4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 부분품 등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416건의 거래에 대하여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법정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고 작업이 종료되고 약 9~100일이 지난이후에 정산합의서로 대체해서 발급함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 부분품 등에 대한 제조를 위탁하면서, 양 당사자의 서명·기명날인이 없는 발주서만을 발급하거나 작업종료 후 정산합의서만을 발급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함(의결일 2025.3.71)

02

Q&A



계약서 서면교부 시 적법한 시점은? 또한 긴급상황으로 인해 납품절차가 이루어진 후에 소급적용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요?



서면(계약서)은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를 하여야 하므로 납품절차가 이루어진 후에 소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거래 당사자 간 상이한 견해가 지속되어 계약갱신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계약서 서면 미교부에 대한 책임이 원사업자에 있는지요?



서면(계약서)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를 하여야 하므로 계약갱신의 경우에도 변경된 작업에 착수하기 전 갱신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견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제조를 위탁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계약체결 후 제품 생산 및 공급과정에서 추가된 물량 또는 설계 변경된 내용이 있었는데, 당사자 사이에 정산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서면 교부의무를 위반하는 것인지요?



향후 추가된 물량 또는 설계 등이 변경된 사실이 입증된 경우 원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이에 서면 미발급으로 판단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임

업무상 유의사항 Do&Don't



Do

- ✓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묵시에 의한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연장된 계약기간이 명시된 새로운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 업계 표준이나 거래 관행의 특성을 근거로 한 공정위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활용하여 서면에 기재해야 할 항목이나 내용에 대해 표준화를 도모하여야 함
- ✓ 발주서면에 하도급법상 정해진 사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 서면 교부 시 미 확정 사유에 대한 정당성이 존재하여도, 그 내용이 정해진 경우 보충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Don't

- ✓ 거짓서면 및 서류(허위계약일자, 이중계약(실 계약, 허위계약), 허위내용의 서류 사후 작성 등)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아야 함
- ✓ 하도급 관련 서류는 증거인멸의 의도로 폐기해서는 안됨
- ✓ 협력업체에 하도급 관련 서류 등을 3년 이내에 폐기하도록 요구하지 않아야 함
- ✓ 거래종료일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워서면(서류)이거나 허위내용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지 않아야 함(허워서류 보존)
- ✓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없는 불완전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야 함

2)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

① 관련 법 조항

의무사항	내용
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제 9 조)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

② 위반유형

- (ㄱ) 검사기준과 방법에 관해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 (ㄴ)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 (ㄷ) 검사기준이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위탁취소, 수령거부, 반품, 감액, 대금미지급 하는 경우

③ 원칙

(ㄱ) 검사기준의 결정방법

검사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일방적으로 결정될 경우, 목적물 완성 및 납품여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하도급대금 지급의 기준시점이 불명확해짐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시기를 확정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하도급법에서는 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이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객관적인 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협의 하에 제3의 공인기관 등에 의하여 검사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함

(ㄴ) 검사결과의 통지기간

검사결과는 목적물을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여기서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라 함은 제조 수리위탁의 경우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며,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함

(ㄷ) 통지의무의 예외

검사대상 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하거나 상당 기간 경과 후에야 비로소 합격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ㄹ) 통지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봄. 따라서,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반품하거나 감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날을 기산일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진행됨

(ㅁ) 검사비용문제

검사는 원사업자를 위한 것이므로 검사에 따른 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또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제3의 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도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④ 검사 결과 통보 의무의 예외

- (ㄱ)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보다 더 장기의 기간을 통지기간으로 정할 수 있음. 통지의무의 예외는 다음과 같음
 - (ㄴ) 거대한 건설공사(댐 · 교량공사, 대단위 플랜트 공사 등), 시스템 통합 용역 등 복잡 · 다양한 기술적 검사가 필요하여 장기간의 검사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 (ㄷ) 단, 일일 평균 검사물량의 과다, 발주처에의 납기 준수 등 통상적인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함

01 해당사례

사실
관계

대진전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온도조절기 등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을 받았으나, 목적물을 수령한 후 1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음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이 사안에서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는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에 대하여 정한 사실이 없고,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도 없으므로, 검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함
(의결일: 2013.1.21)

02 Q&A

Q

지속적으로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어 월 1회 마감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월 1회로 정한 마감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보고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물품의 검사결과를 해 줄 경우 하도급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요?

A

하도급대금 지급시에는 월 1회로 정한 마감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볼 수 있지만, 검사결과의 통보는 실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주어야 함

Q

수급사업자가 기성으로 요청한 경우, 원사업자는 기성검사 증빙서류를 접수한 이후에 검사를 하여도 무방한지요?

A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성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포장된 상태로 위탁상품을 인수하기 때문에 인수시에 하자를 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쌍방 합의하에 납품 후 발견되는 불량을 1개월 단위로 취합하여 서면 통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와 납품 이후에 발생되는 불량에 대비하여 일정 기간의 평균 불량률 범위 내에서 하자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약정하는 경우 하도급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요?



목적물 인수시 검사가 불가능하다면 일단 합격한 것으로 보되, 판매 단계에서 발견되는 불량품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해결방법을 정해 약정할 수 있을 것임. 하자보증금 예치에 대한 약정 자체가 법에 위반되지는 않으나, 다른 담보수단이 있는데도 보증금의 예치를 요구하거나, 정상적인 상관행을 초과하여 납품 대금에서 유보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소지가 있음



납품 받은 부품 중 불량품으로 인한 손해발생시 보상 요구가 가능한지요?



보상비용 청구는 당사자 간 협의하여 정하면 될 것이나, 수급사업자 의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법 위반 소지가 있음

업무상 유의사항 Do&Don't



Do

-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화 시켜야 함
- ✓ 목적물 수령 후 검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수령증명서와 함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 불합격을 판정할 경우에 그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Don't

- ✓ 검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지 않음
- ✓ 법정검사기일 이후에는 반품이나 불량을 이유로 감액을 하지 않음

3) 하도급대금 지급의 의무

① 관련 법 조항

의무사항	내용
하도급대금의 지급(제 13 조)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 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② 위반유형

- (ㄱ)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 등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는 경우
- (ㄴ)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경우
- (ㄷ)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 등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결제 되는 장기여음으로 지급함에 따른 어음 할인료를 미지급하는 경우
- (ㄹ)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도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 등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원칙

- (ㄱ) 하도급대금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 [제조 · 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의 납품을 받은 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 부분의 통지를 받고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
- (ㄴ) 납품이 빈번하여 상호 합의하에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괄 마감하는 날(세금계산서 발행 일)을 말함
- (ㄷ) 제조위탁의 경우 목적물 수령일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산정 시 기준일이 됨. 여기서의 목적물 수령일이라 함은 이동이 가능한 물건의 경우 원사업자에게 납품한 날(사실상 원사업자의 지배에

두게 된 날)을 의미하고, 이동이 불가능한 물건의 경우에는 검사
를 개시한 날을 의미함

④ 기간의 계산

- (ㄱ)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기간을 계산
함에 있어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기간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는 그 다음 거래일에 기간이 만료하는 것으로 봄

⑤ 자연이자 지급 의무

- (ㄱ)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연
이자(연 15.5%)를 지급해야 함
- (ㄴ) 목적물을 수령하고 90일째 되는 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면
30일에 대한 자연이자를 지급해야 함

⑥ 어음 할인료 지급의무

- (ㄱ)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
우 어음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 할인료(7.5%)를 수급사업자에게 의무적으
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ㄴ) 원사업자가 법정지급기일에 30일이 만기인 어음을 수급사업자에
게 지급하였을 경우, 30일에 대한 어음 할인료를 지급해야 함

⑦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지급의무

- (ㄱ)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명
세 전송일)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대출이자 포함)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ㄴ)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
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함

⑧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

- (ㄱ)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하도급대금은 현금 외에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음
- (ㄴ) 단,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신설 법 조항

- 제2조의17항(정의) ⑯ 이 법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 7. 18.>
- 제13조의3(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및 하도급대금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기되는 분쟁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자신의 회사에 설치하는 하도급대금 분쟁 조정기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 받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의 방법 ·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위가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1>
- ☞ 두산밥캣은 두산 기업집단 소속으로 해당 법령의 적용을 받으므로 업무 관련부서는(IR, 구매, 재무) 반드시 해당 사실을 인지하시고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01 해당사례

사실
관계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는 2016년 1월~2019년 3월 기간 중 46개 수급사업자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2,121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3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5,431천 원을 지급하지 않음

공정위
판단

190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및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 원 부과함(의결일: 2022.1.1.)

사실
관계

두산건설은 2012년 7월부터 2년 1조 2,350억원 공사대금을 조달청 등 발주자로부터 전액 현금을 지급받았으나, 86개 하도급업체에는 대금을 늦게 주거나 외상매출채권 담보매출로 지급하며 지연이자와 수수료 총 1억 8,983만원을 제공하지 않았음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현금결제비율 유지 의무를 위반한 두산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800만 원을 부과함(의결일: 2019.6.28)

사실
관계

포스코ICT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한국씨씨에스 등 4개 수급사업자에게 브라질CSP 제철소 관련 전자기기, 배전반 등을 제조 위탁하고, 2014년 6월 25일부터 2015년 11월 14일까지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53,918천원을 목적물을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또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휴먼에어텍 등 15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건설·용역 위탁을 한 후, 2013년 9월 30일부터 2015년 5월 28일까지 목적물을 수령하였으나,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1,907,669천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88,617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공정위
판단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포스코ICT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됨. 또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도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공정위는 과징금 및 시정명령 조치함(의결일: 2017.2.12)

사실
관계

엠브이지토건은 전남 무안 지역의 아파트 건설공사 중 조적·타일·방수 등 14건의 공사를 7개의 하도급업체에 위탁하고, 하도급업체들이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법정지급기일(60일) 내에 대금 중 일부(3억9,624만원)를 지급하지 않았음. 또 엠브이지토건은 5개 업체에 하도급대금 8억6,885만원 중 4억7,261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였고, 이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1,068만원)는 주지 않음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엠브이지토건(주)에 시정명령(지급명령,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함

**사실
관계**

다인건설은 17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25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한 후 2017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각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약 54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또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초과해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약 8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다인건설이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지급·시정명령을 내림
(의결일: 2023.3.19)

**사실
관계**

레줄러는 전기공사업과 태양광발전소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2020년 9월과 2021년 5월 철원두루미 2차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 2건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수급사업자가 2021년 1월과 8월 각각 전기공사를 완료했지만,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2억 8,02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음. 또 하도급대금 3억 1,041만원 중 1억 2,099만원을 법정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초과기간 263일에 대한 지연이자 1,351만원을 주지 않았음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레줄러가 수급사업자에게 전기공사를 시공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2억 8,029만원과 지연이자 1,351만원을 미지급한 행위와 하도급 계약서에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지급명령과 함께 재발방지 명령을 내림(의결일: 2023.6.9)



하도급법상 기간계산 원칙, 기산일 결정, 어음 할인료 또는 지연이자 계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간계산 원칙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시작일을 기간에서 산입하지 않고 해당기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에 만료 기산일의 결정, 원사업자는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어음 할인료 또는 지연이자의 기산일은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1일째 되는 날임

[계산 예시]

목적물 수령일: 2X년 3월 31일

Case1.	4 월 20 일 외담대 지급 (만기일 6 월 30 일)	지연이자 미 발생 (지급일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20 일임)
Case2.	4 월 20 일 외담대 지급 (만기일 7 월 20 일)	지연수수료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발생 (20 일분, 7 월 1 일 ~ 20 일)
Case3.	7 월 10 일 외담대 지급 (만기일 7 월 31 일)	지연이자 발생(7 월 1 일~ 10 일) ☞ 지연대금 X 15.5% X 10 일/365 (지연이자는 공정위 고시 기준) 지연수수료 발생(7 월 11 일 ~31 일) ☞ 지연대금 x 은행약정 할인율 x 21 일/365 일
Case4.	7 월 10 일 현금지급	지연이자 발생 (7 월 1 일 ~ 10 일) ☞ 지연대금 X 15.5% X 10 일/365 (지연이자는 공정위 고시 기준)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의 기산일이 되는 목적물 수령일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제조/수리 위탁]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의 납품을 받은 날. 다만, 납품이 빈번하여 상호합의 하에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마감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괄 마감하는 날(세금계산서 발행일)

[건설위탁]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검사가 완료된 날

[용역위탁]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인수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지요?



하도급거래 당사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이기 때문에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을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 주어야 함. 즉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의 대금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에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일수 30일 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당사자 간 약정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더라도, 실제 지급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경우에는 하도급상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단, 당사자 간의 약정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하도급 법의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인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로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임



현금성 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행하여 지급하였으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자연이자 지급해야 하나요?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인 바,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였더라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일수에 해당하는 자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임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의 예외조항으로 ‘대등한 지위에서의 약정’과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이 인정될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어떻게 되나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대등한 지위’라 함은 회사의 외형규모인 자본금, 종업원수, 매출액 등을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상호 대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와 업종의 특성에 따른 시장점유정도, 생산능력 및 기술수준, 제품 경쟁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 합의할 수 있는 경우라 할 수 있으며 ‘당해업종의 특수성’이란 당시의 경제여건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당해업종의 상관행 및 경제현상의 비정상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대금지급 기일을 지킬 수 없을 경우라 하겠음. 상기 예외규정의 적용은 하도급법의 입법취지로 볼 때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함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의 청구서에 근거하여 지급 시, 수급사업자로부터 청구서가 제출되지 않아 대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하도급법상 지급 자연인지요?



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은 원사업자의 의무로서 수급사업자가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임

업무상 유의사항 Do&Don't



Do

- ✓ 하도급대금의 지급 기일은 대금 지급 기일인 60일 이내에 당사자 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음
- ✓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Don't

- ✓ 수급사업자의 대금 청구 지연을 이유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됨
- ✓ 수급사업자의 하자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유보하여서는 아니됨

4)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및 통지 의무

① 관련 법 조항

의무사항	내용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제 16 조)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받은 경우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 비용이 들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음

② 위반유형

- (ㄱ)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추가금액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와 약정이나 국가계약법(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않고 물가 변동률이 5% 미만이면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을 이유로 조정해주지 않는 경우
- (ㄴ) 설계변경 등에 의해 하도급대금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함
- (ㄷ)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동 또는 물가연동 금액을 수령 받고도 이를 미지급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이나 내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는 법 위반에 해당함
- (ㄹ)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금액 또는 물가연동 금액을 수령하고도 15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거나 15일을 초과하여 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어음 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것으로서 법 위반에 해당함

③ 조정절차

(ㄱ) 조정내역 통지

원사업자는 설계변경 등에 의해 하도급대금이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 해당 하도급대금 조정내역을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함. 다만,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별도로 통지할 필요가 없음

(ㄴ) 변경계약 체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과 관련된 변경계약을 해야 함. 즉,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조정 받은 내용을 반영해 주어야 함

(ㄷ) 조정금액 지급

원사업자가 추가금액을 발주자로부터 지급을 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함.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 할인료,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함

(ㄹ) 조정기준

- 분명한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 설계변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함
- 불분명한 추가금액의 내용: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평균비율에 따라 지급해야 함

(ㅁ) 총액지급 방식

총액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면 됨.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 각각에 해당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증액 시켜 주는 경우에는 적법하나, 수급사업자 각각에 해당하는 비율 미만으로 증액 시켜 주는 경우에는 위법함

④ 조정방법

- (ㄱ)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준 내용과 비율에 따라 물가변동 대금조정의 경우, 복잡한 개별품목의 조정방법보다는 전체 계약금액에 물가변동지수를 적용하여 총액조정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ㄴ) 품목별 조정방법의 경우 해당 공종별로 발주자로부터 인정받은 세부공사 내역별로 조정 받은 내용과 비율로 해야함

01 해당사례

사실
관계

한진중공업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증액조정을 받았으므로 30일 이내에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같은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증액 조정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6개 수급사업자에게 각각 법정기한을 14~159일 지연하여 조정하였음

공정위
판단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연하여 조정한 것은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내용 및 비율 이상으로 증액을 요구하였고, 신규품목이 추가되어 당사자 간 협의가 필요하였으며, 수급사업자 스스로 변경계약을 추후에 체결할 것을 요청하거나 피심인의 대금 조정 관련 공문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회신이 지연되는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고 주장하였으나, 공정위는 지연조정행위는 피심인이 증액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추가금액을 조정해야 함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처로부터 조정 받은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원하는 증액금액을 신청 하라고만 통보하는 등 피심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의결일: 2009.3.23)

사실
관계

에스케이건설은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제5공구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물가변동을 이유로 발주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2010.11.25., 2011.10.6. 및 2011.12.8. 총 세차례에 걸쳐 계약금액을 증액 받았으므로,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각각 법정기한인 30일을 59일에서 437일 초과할 때 까지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아니하였음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대금을 증액 받고도 8개 수급사업자에게 그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 주지 않는 것은 법 제16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물가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함(의결일: 2013.9.6)

02

Q&A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방법 및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서 원도급계약 시점과 하도급계약시점이 다른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물가변동을 적용해 주는 기준 시점이 하도급 계약 시점보다 앞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물가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해줄 필요가 없음. 또한 하도급계약 시점으로부터 물가 변동 적용시점까지의 기간이 원도급계약에서 물가변동이 적용된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조정 시 그 만큼을 공제할 수 있음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계약예정금액이 당해연도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금액임을 수급사업자가 인정하여 이를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명기한 경우에도 원사업자가 추가금액을 지급받았을 경우 이를 조정해 주어야 하는지요?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해 동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단, 예외적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당해 연도에 계약하면서 당해 연도의 물가상승분이 포함되어 있음이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통하여 입증되고,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물가변동에 다른 하도급대금의 증액을 해주지 않아도 됨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단가를 조정함에 있어 기존의 공종에 대한 추가 시공 부분과 신규 공종 추가의 경우 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하도급단가가 있는 공종에 대한 추가 시공부분 우선 당초의 하도급단가를 유사단가로 보고 도급단가의 등락률(설계변경에 따른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하도급단가를 결정·기존 하도급계약 내역서에 없는 신규 공종 부분 발주처로부터 적용 받은 단가를 기초로 하여 하도급거래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하도급단가를 결정

업무상 유의사항 Do&Don't



Do

- ✓ 설계변경 등에 의해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고, 30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이 이루어져야 함
- ✓ 설계변경 또는 물가연동으로 증액 또는 감액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조정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 ✓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협의를 완료하고 조정절차를 마무리하여야 함
- ✓ 협의 절차가 지연되어 30일이 초과되어 합의가 된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는 일수만큼 지연이자 또는 어음 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Don't

- ✓ 설계변경 또는 물가연동에 따른 조정을 특약으로 배제하지 말아야 함

5)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① 관련 법 조항

의무사항	내용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 16 조 2)	수급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② 위반유형

- (ㄱ) 수급사업자의 협의 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 (ㄴ) 수급사업자가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 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담당자를 통한 단가 조정 관련 지시·보고 등 간접적 형태의 협의를 포함함)에 임하지 않은 경우
- (ㄷ) 단가 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수급사업자가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경우
- (ㄹ) 수급사업자의 원재료 재고물량, 잔여 납품물량 등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시점을 지연하여 제시하는 경우

③ 수급사업자의 조정 신청

- (ㄱ) 수급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거나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의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ㄴ)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제조, 수리, 시공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
- (ㄷ) 공급원가 외의 비용은 재료비, 노무비 뿐만 아니라, 관리비 등이

추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고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추가금액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수급사업자는 별도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음

④ 원사업자의 협의 개시

- (ㄱ)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계율리해해서는 안됨
- (ㄴ) 구체적인 조정 대금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여야 함

01 해당사례

사실
관계

한전케이피에스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발주자인 하동화력본부 등 6개 발전소로부터 각 세 차례에 걸쳐 물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1개 수급사업자에게는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내용을 통지하지 않고 법정기한(30일)을 94 일에서 537일 지나서 하도급대금을 증액 조정하였음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한국전력의 계열사인 한전케이피에스가 발전소 설비 정비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조정을 지연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함
(의결일: 2014.5.18)



공급원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발주처로부터 원도급금액에 대한 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신청에 꼭 응해야만 하는 것인지요?



철근, 시멘트 등 건설 자재 가격 및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요청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 하는 것이며,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할 경우 위법임. 다만, 하도급대금 조정 요청 사유가 공급원가의 변동이 아닌 저가수주 등으로 인한 적자보전 등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협의 신청 내용 검토 결과 협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고 협의를 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업무상 유의사항 Do&Don't



Do

- ✓ 하도급 거래에서 원재료의 가격이 급격히 변동되면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은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협상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 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를 사전에 하도급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요청이 있으며, 조정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함
- ✓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고 관련내용에 대한 회의록 등을 작성, 상호 기명날인(혹은 서명)등을 하여 보관하여야 함

Don't

- ✓ 수급사업자의 협의 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개최, 의견 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아니됨
- ✓ 수급사업자가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담당자를 통한 단가조정 관련 지시, 보고 등 간접적 형태의 협의를 포함함)에 임하지 않으면 아니됨
- ✓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 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수급사업자가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여서는 아니됨

6) 선급금 지급의 의무

① 관련 법 조항

의무사항	내용
선급금의 지급(제 6 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그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② 위반유형

- (ㄱ)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금 또는 어음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경우
- (ㄴ) 선급금을 법정 지급기일내에 어음을 지급하고 어음만기일이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하였으나 이에 대한 어음 할인료를 미지급한 경우
- (ㄷ)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경우

③ 원칙

- (ㄱ)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해야 함
- (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④ 지급방법

- (ㄱ)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ㄴ)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액에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해야 함

01 해당사례

사실
관계

에어릭스는 수급사업자에게 탈질설비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체결 전 공사내역이 변경됐지만 관련 대금을 확정·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후 법정지급기일 보다 113일 초과해 선급금을 주면서 지연이자 1억 5,859만원을 지급하지 않음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에어릭스가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향후 재발 방지명령과 함께 선급금 지연이자(1억5,859만원)와 미지급 하도급 대금(3,300만원) 및 어음대체결제 수수료(131만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함(의결일: 2018.11.11)

사실
관계

상원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음에도 법정지급기일을 94일 초과하여 선급금을 지급할 때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지급하는 한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함

공정위
판단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선급금 지연지급 행위, 선급금 지급비율 미 유지 행위, 선급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행위로 하도급법 제2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조치함(의결일: 2013.11.26)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다음 기성에서 선급금 전체를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경우 하도급법 위반 여부인가요?



하도급법상 선급금은 장래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므로 기성률에 맞추어 공제해 나가는 것이 원칙인 바, 선급금 전체를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1996년 4월 10일에 발주자로부터 본사건물 신축공사를 100억원에 도급받아 1996년 5월 1일에 일부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10억원에 건설 위탁하고 발주자로부터 현금 10억원 선급금으로 수령하였다면 원사업자의 선급금 지급기일 및 지급금액은?



- 지급기일: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기 이전인 1996년 4월 10일이라면 건설위탁일인 1996년 5월 1일부터 15일 이내, 즉 1996년 5월 16일까지 지급해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이후인 1996년 5월 10일이라면 1996년 5월 25일까지 선급금을 지급해야 함

- 지급금액: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공사비의 일정률로 지급받았을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비의 10%를 선급금으로 받았으므로 수급사업자에게도 10%인 1억원을 지급해야 함. 발주자가 선급금의 사용용도 등 선급금의 사용내역을 지정하였다면 그 지정내역 별로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함



원사업자가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15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의 부도로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 하도급법 위반 여부인가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로 선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이므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자연이자를 지급해야 함. 미지급 선급금에 대한 화의채권 귀속 여부는 화의법상 문제로 별도 판단 필요함



발주처로부터 전체 공사에 대한 선급금 20%를 수령하고, 이 중 일부 공사에 대해 하도급 계약한 결과, 발주처와 계약한 도급금액의 120%일 경우 선급금 지급은 얼마인가요?



하도급금액이 도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정도 등을 감안하여 선급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하도급 금액에 발주자로부터의 선급금 수령비율을 곱한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함

업무상 유의사항 Do&Don't



Do

- ✓ 발주자가 선급금의 사용용도, 지급대상품목 등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용도에 한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면 됨. 이와는 반대로 발주자가 특정한 공사나 품목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전체 대금 중 하도급계약 금액의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해야 함
-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원사업자의 선급금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음
- ✓ 계약서상 선급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어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함
- ✓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지급 보증서를 지연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일 수만큼 선급금 지연 지급이 가능함
- ✓ 수급사업자가 보증한도 부족 등으로 선급금 지급 보증서를 미 제출할 경우에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선급금의 내용과 방법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함
- ✓ 선급금 지급 시 어음만기일유지의무나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Don't

- ✓ 수급사업자와 선급금 포기 각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됨
- ✓ 하도급법상 선급금은 장차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작업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기성률)에 맞추어 공제해 나가야 함. 따라서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다음 기성에서 선급금 전체를 일괄적으로 공제하여서는 아니됨

7) 관세 등 환급금 지급의 의무

① 관련 법 조항

의무사항	내용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 15 조)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경우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② 개념

- (ㄱ)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경우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관세 등을 환급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법 제15조제1항)
- (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 대한 관세 등 환급상당액의 지급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한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음(법 제15조2항)
- (ㄷ) 원사업자가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환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함(법 제15조 제3항)

③ 적용기준(원사업자 입증책임)

- (ㄱ) 원사업자가 수출용 원자재 등과 관련하여 관세를 환급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환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따라 지급해야 함
- (ㄴ) 환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보다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인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원사업자가 관세 환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함(지연이율: 연15.5%)

01

Q&A



원사업자가 관세 환급금을 법정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어떤 제재가 있나요?



하도급법상 관세 환급금을 법정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리 15.5%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관세환급의 기초자료인 기초원자재납세증명서 또는 분할증명서를 협력업체의 지연접수로 인해 해당 자재 또는 제품의 매출발생 및 관세 환급처리 종료로 관세 환급이 불가한 경우, 미지급 사유가 되는지요?



원사업자가 관세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의 협조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관세 환급에 필요한 기납증 등을 지연하여 인도한 경우, 그 책임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원사업자가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없다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업무상 유의사항



✓ 관세 등 환급액의 지연 지급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예시)

- ① 수급사업자가 기초원자재납세증명서 등 관세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원사업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인도한 경우
- ② 기초원자재납세증명서 등 관세 환급에 필요한 서류상의 기재내용이 실거래와 상이하여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③ 수급사업자가 직접 관세 환급을 받는 경우에 수급사업자로부터 관세 등 환급에 필요한 환급위임장의 발급을 요청 받았을 때 원사업자가 이를 지체 없이 발급해 준 경우

8) 내국신용장 개설의 의무

① 관련 법 조항

의무사항	내용
내국신용장의 개설 (제 7 조)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한 날(원사업자가 원신용장을 받기 전에 제조 위탁하는 경우 원신용장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해 주어야 함

② 개념

(ㄱ)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한 날(원사업자가 원신용장을 받기 전에 제조 위탁하는 경우 원신용장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③ 적용기준(원사업자 입증책임)

(ㄱ) 수급사업자가 영세하거나 내국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작성 능력이 없는 등의 이유로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원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ㄴ) 원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 연체 및 미지급 당한 상태에 있거나, 개설한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신용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등 월 1회 이상 일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기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백히 합의한 상태에서 그 정한 날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



수출용 물품을 제조위탁시 수급사업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늦게 제출함으로써 신용장 개설이 법정기일인 15일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도 법에 위반인가요?



이 경우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내국신용장 개설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음. 단, 수급사업자가 적기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이 경우에서도 원사업자는 물품매도확약서를 수취하는 대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어야 함



수급사업자 중 무역금융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내국신용장(Local L/C)거래를 구매승인서 거래로 변경하는 것은 하도급법에 위반되는지요?



하도급법 제7조에서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을 제조 위탁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물품구매 승인서로 대체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음. 즉, 원칙적으로 구매승인서로 내국신용장을 대신할 수는 없음

나.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1)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4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기준은 발주한 내용과 동종 또는 유사한 급부의 내용에 비하여 통상 지불하는 대가에 비해 낮은 금액을 부당하게 정하는 경우 임

① 관련 법 조항

금지사항	내용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제 4 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반유형

(ㄱ)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단가 인하(제4조 제2항 제1호)

- 일률적 단가인하는 제조하도급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행위 중 하나임. 그러나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인지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야 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일률적인 비율은 수급사업자별 경영상황이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거나 목적물 등의 종류, 거래규모, 규격, 품질, 용도, 원재료, 제조공정, 공법 등의 특성이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거나 일정한 규칙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비율을 말함

(ㄴ) 협조 요청 등을 통한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금액 할당(제4조 제

2항 제2호)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협조 등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하여 그 금액 만큼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임

③ 법 위반 예시

- (ㄱ) 원사업자가 환율변동, 임금상승, 물가인상, 가격경쟁 심화 등과 같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수지개선 또는 이익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구매비용 절감(원가절감) 목표를 정하여 이를 수급사업자별로 일방적으로 절감액을 할당한 후 수급사업자의 견적가격 또는 종전 단가를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빼고 수급사업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ㄴ) 원사업자가 발주자와의 협상에 의해 추가된 비용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별로 일방적으로 절감액을 할당한 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ㄷ)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함. 여기서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수급사업자별 경영상황, 생산능력, 작업의 난이도, 거래규모, 거래의존도, 운송거리, 납기, 대금지급조건 등의 거래조건, 거래기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존부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차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함
- (ㄹ)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임
- (ㅁ) 원사업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초안 상태의 생산량 증대계획 또는 신규 수주계획 문건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종전 계약보다 발주량을 대폭 늘려 줄 것처럼, 또는 그와 같이 수주가 이루어질 것처럼 언질을 주어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한 후 실

제로는 발주량을 늘려주지 않는 행위

- (ㅂ) 다른 사업자의 견적서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그것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ㅅ) 해당 단가 인하분을 타 품목이나 타 공사 등을 위탁할 때 보전해 줄 것처럼 하면서 단가를 인하한 후 그것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 (ㅇ)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결정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하도급대금을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다른 수급사업자의 계약조건과 동일한 지급조건인 것처럼 내비쳐 단가를 낮게 책정한 후 실제로는 만기 6개월의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

01 해당사례

사실 관계

현대모비스는 13개 품목의 자동차 부품을 제조위탁하기 위하여 8개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심의입찰을 실시하였고, 심의입찰에서 최고점수를 획득한 업체 또는 차 순위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면서 최저 입찰가보다 0.6%~10% 낮게 낙찰가를 결정하였음

공정위 판단

심의입찰이 경쟁입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경쟁입찰의 개념적 표식을 갖추었는지 여부(객관적 요건)와 입찰 관련자들이 이를 경쟁입찰로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주관적 요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최고점수를 받은 수급사업자의 입찰 가를 낙찰가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추가협상을 통해 당해 입찰에서의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낙찰가를 결정한 행위는 당연 위법함.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를 별도로 따질 필요 없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에 해당함(의결일: 2012.7.31)

사실 관계

지에스건설은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 공사 중 설비공사’ 등 4건의 공사를 수급사업자인 한기실업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직접공사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으며, 지에스건설은 2012년 10월부터 2016년 5월 기간 동안 하남 및 대전 공사현장 4건 공사의 하도급대금을 법 위반 최저 하도급대금 수준인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인 198억500만 원보다 11억3,400만 원이 낮은 186억 7,100만 원으로 결정함

공정위
판단

하도급법에 제4조 제2항 제6호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이에 공정위는 지에스건설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8억원을 부과함 (의결일: 2020.12.13)

사실
관계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중공업은 2016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들이 납품하는 선박엔진 관련 부품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종전 단가 대비 **%의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음. ‘2016년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력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률적으로 **%의 단가 인하를 해줄 것을 요청 및 입찰 통보 공문을 통해 종전 대비 **% 인하된 구매 목표금액을 충족시키는 업체가 없을 경우 해당 입찰이 유찰된다고 적시하였음

공정위
판단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여 하도급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함(의결일: 2019.12.18)

사실
관계

포스코ICT는 2014년 7월 11일부터 2015년 6월 17일까지 ‘광양 5고로 DCS H/W 1식’ 등 11건의 하도급계약의 체결을 전자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가 계약 건의 예산에 해당하는 설계금액을 산정하고, 소싱 그룹의 평균 낙찰율, 예비 투찰자들의 견적가격, 최근 구입가 등 여러 가격을 조사하여 그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조사금액을 선정한 후 조사금액과 같거나 조사금액보다 0.9~4.4% 더 낮은 금액으로 기준가격을 결정함, 또한, 전자상거래이용약관 및 입찰유의서 등을 통해 최초 설정한 기준가격이 재입찰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도 공지하지 아니함. 포스코ICT는 위와 같은 기준

에 의해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최저 입찰 가가 기준가격보다 높을 경우 유찰 시키고, 재입찰 과정에서 기준가격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한 후, 재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하거나 몇 차례의 유찰에도 기준가격보다 낮은 입찰 가가 나오지 않으면 최종입찰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최초 입찰가보다 5,000천원~416,250천원 낮게 계약금액을 결정함
포스코ICT는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자신이 책정한 기준가격 이하로 입찰 가를 제출하는 참여업체가 없을 경우 유찰 시키고, 기준가격을 임의로 변경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는 등 입찰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낙찰자 등을 선정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입찰 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이는 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공정위는 과징금 및 시정명령 조치함(의결일: 2018.3.5)

사실 관계

세진중공업은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공사 관련하여 34개 수급사업자와 2017년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도 대비 일률적인 비율(3~5%)로 단가를 인하하여 총 5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하였음

공정위 판단

조선 경기 악화 및 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청 등의 이유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세진중공업의 대금결정은 부당하기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등을 한 세진중공업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897백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자 고발 조치함

02

Q&A



원가절감 요인이 발생하여 이를 근거로 하도급대금을 당초보다 낮게 계약한 경우에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 되는지요?



합리적인 원가절감요인을 제시하여야 하며, 일률적으로 할당된 원가 절감 목표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보일 수 있음. 통상 장기적인 제조 납품의 경우 거래 초년도보다 이후에 원가절감 사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나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경쟁입찰 시 하도급대금 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최저가 금액이 실행예산보다 초과함을 이유로 추가 협상을 통해 최 저가 금액 보다 낮게 체결하면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이 경우 최 저가 입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찰 후 재입찰을 실시함이 타당함.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수급사업자에게 입찰조건과 달리 하도급대금을 더 낮춰 줄 것을 요구하여 거절당하자, 최저가 입찰자 이외의 입찰자와 단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법 위반으로 보고 있음



자재발주를 위한 사양설명 시 100톤이 필요하나, 공정에 따라 감소나 증가될 수 있다고 설명한 후, 실제 80톤만 필요하여 입고 후 대금 지급할 경우, 업체에서는 100톤을 생산하였으니 사주어야 한다고 했을 때 공정거래법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원칙적으로 수량과 단가를 사전에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임. 하도급거래일 경우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4호에서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어 법 적용가능. 즉, 자재의 생산시기, 납품주기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공정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탄력적으로 납품이 가능하다면, 증감의 폭에 따라 단가는 달리 적용하는 슬라이딩 단가결정 시스템. 즉, 납품량에 따라 단가를 달리 결정하는 것이 분쟁가능성을 최소화 가능(예, 100~120톤은 단가 1,000원, 99~80톤은 1,100원).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이 아닌 단순구매인 경우에도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따른 불이익 제공행위로 해석될 가능성 있음

업무상 유의사항 Do&Don't



Do

- ✓ 수급사업자들과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수급사업자와 거래규모, 경영상황, 작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된 근거에 따라 단가를 조정해야 함
 - ✓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의 당사자를 선정할 경우, 최저 입찰자가 예정가를 초과하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해야 함.
 - ✓ 예정가격을 공개할 필요는 없으나 예정가격이 미리 정해져 있음을 회사 내부 자료로 남기거나 공증을 통해 추후 예정가격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 ✓ 공증을 받기 어렵다면(비용, 절차상의 번거로움) 사전에 예정가격이 확정되어 있었음을 회사의 기안 문서에 남겨놓아야 함
 - ✓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수급사업자와 협의한 문건은 보관하여야 함(서면 보존의무)
 - ✓ 연료비 상승이나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비용 요청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함

Don't

- ✓ 최저 입찰자가 예정가를 초과했을 때,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최저가 낙찰자와 추가 협상을 통해 금액을 낮은 금액으로 결정하지 말아야 함 (부당한 하도급대금)
- ✓ 경영상의 위기'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동안 낮은 단가 설정을 요구한 경우, 기간 종료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낮은 단가를 요구해서는 안됨✓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거나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 함
- ✓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 함

2)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① 관련 법 조항

금지사항	내용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제 5 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 · 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 · 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반유형

- (ㄱ)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자재를 수급사업자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원사업자가 구입을 강제하거나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물품, 장비를 구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ㄴ) 계약당시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제조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가 지정한 부품이라고 주장하며, 원사업자가 고가의 부품 구매를 수급업자에게 강요하는 경우
- (ㄷ)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 구매처의 지정 등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계약 당시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건설위탁한 후에 발주자가 지정한 건설자재라는 이유로 고가의 자재구매를 수급사업자에게 강요할 경우 물품구매 강제행위에 해당하는지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발주자의 요구) 물품구매 강제행위로는 볼 수 없으나, 계약 당시 고가의 자재사용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이로 인해 하도급대금도 낮게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규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고가의 자재사용에 따른 차액만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어야 할 것임



수급사업자 B는 원사업자 A로부터 공사를 1억원에 수주 받으면서 하도급 공사에 필요한 1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A로부터 구매할 것을 요구 받았음. B는 물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1회 기성금으로 2천만원을 청구하였고 A도 승인 하였는 바, A가 승인한 2천만원에서 A가 제공한 물품대금 전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잔액만을 B에게 지급 하였을 경우 A의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인지요?



A가 B에게 물품을 구매하게 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면 A의 행위는 하도급법상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규정 위반이임. 또한 A가 기성금 지급 시 물품대금 전액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만 지급한 것은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 결제행위로 하도급법 제12조 위반이



전기기계 제조업자인 원사업자가 전기제품의 부품의 제조를 위탁함에 있어 구매담당자를 통해 자사상품의 판촉에 협력을 요청한 경우 하도급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요?

A

하도급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매담당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
의 제조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제품의 구입을 요청하였다는 점에서,
협조요청의 형식을 취하였지만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물품의 구매
강제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업무상 유의사항



- ✓ 원사업자가 계약 당시 아무 언급 없다가 제조위탁 후 발주자가 지정한 제조 자재라는 이유로 고가 자재구매를 요청하는 경우, 발주자의 요구이므로 물품구매강제는 아니나, 계약 당시 해당 자재의 사용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이로 인한 하도급대금이 낮게 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금지 규정에 위배되므로 차액보전 및 증액이 필요함
- ✓ 거래 시 거래사유 및 거래대금은 적정한지 확인해야 하며, 거래 과정에서의 하도급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구매를 강제하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함

3)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4대 불공정 행위: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① 관련 법 조항

금지사항	내용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제 8 조)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반유형

(ㄱ) 부당한 위탁취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제조 등의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함. 또한, 위탁을 할 때 정한 발주량 또는 사양 등 위탁한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도 포함됨. 여기서 위탁한 내용을 변경한다는 것에는 다음 세 가지를 포함함

-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서면에 기재되어 있는 위탁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당초에 위탁 내용과 다른 작업을 시키는 경우
- 목적물 등의 수령 후 추가적으로 재작업을 시키는 경우

※ 위탁 취소 시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위탁취소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고 위탁을 취소하는 것은 가능함

③ 법 위반 예시

(ㄱ) 원사업자의 판매량 감소, 사양변경, 모델 단종, 생산계획 변경, 내부 자금사정 악화 또는 발주자로부터의 발주취소, 발주중단 등 원사업자의 경영상황 또는 시장여건의 변동 등을 이유로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개발을 제조 위탁하면서 해당 금형으로부터 일정수량의 부품을 납품하도록 보장한다고 약정하였으나,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해당 부품에 대한 약정물량 중 일부만을 수령한 후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

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ㄷ) 원사업자가 위탁을 취소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동의, 합의를 강요하는 방법 등으로 수급사업자의 형식적인 동의, 합의를 받아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ㄹ)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목적물 등이 위탁내용과 다르거나 품질, 성능의 하자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ㅁ)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ㅂ)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하지 아니한 사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④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소지가 있는 사유

- (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는 부당한 위탁취소와 마찬가지로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ㄴ) 수급사업자가 직접 조달하기로 한 원재료의 공급지연으로 해당 기간을 넘겨 납품
- (ㄷ) 수급사업자가 직접 조달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하자가 있는 목적물 납품
- (ㄹ) 수급사업자가 생산 또는 운송과정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오손, 훼손된 목적물 납품

01 해당사례

사실
관계

삼성중공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협력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142개 사외 협력사에 제조위탁한 선박부품 6,161건을 임의로 취소 및 변경하였음

공정위
판단

삼성중공업은 위탁 변경 시스템(이하 PCR 시스템)을 통해 협력사에게 위탁취소 및 변경 등의 여부만을 선택하도록 했을 뿐, 협력사가 입게 될 손실 등의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음. 또한, PCR시스템에는 위탁 취소 및 변경 사유를 입력하는 항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협력사들은 이유를 모른 채 동의 여부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음.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에 과징금 및 시정조치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함(의결일: 2020.4.24)

사실
관계

SK오션플랜트는 2018년 4월말 A사에 위탁한 선박블록 조립작업의 물량과 단가를 변경했음에도 이에 대한 변경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고, 2018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는 A사에 맡긴 해양플랜트 구조물공사에 대해 추가 작업 물량을 위탁했지만 이에 대한 추가계약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음

공정위
판단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 이후 추가 위탁을 하거나 계약 내용을 바꿀 경우 이에 대한 계약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공정위는 SK오션플랜트에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함(의결일: 2023.4.19)



건설공사 및 일반자재공급을 하는 중소업체가 자재납품과 관련하여 당사의 기업윤리를 위반하여 자재납품 계약을 해지하였고 또한 현재 계약기간 중인 하도급 건설공사 계약을 해약하였다면 하도급법상 부당 위탁 취소 및 공정거래법 위반인지요?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 여기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사실상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임. 그러나 기업윤리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에 대하여 수급사업자가 서명하였다 하더라도 계약해지는 과정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바, 당해 기업윤리를 위반한 자재납품에 한하여 계약해지는 정당할 것이나 전혀 무관한 건설분야까지 해지하는 것은 기업윤리 규정을 너무 자의적이고 포괄적으로 적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대처가 필요함. 단, 계약해지 시에도 기납품분에 대하여는 대금정산이 수반되어야 함



공법 변경 시 발주취소 및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공법 변경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계약을 일방 취소한다면 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음

업무상 유의사항 Do&Don't



Do

- ✓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발주취소를 할 경우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를 충분히 마련하여야 함
- ✓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위탁취소와 관련한 협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 위탁취소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함
- ✓ 발주취소사유가 사전에 서면의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고지되어야 함
- ✓ 발주취소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투입된 비용이 있다면 정산하고,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함

Don't

-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수령을 거부해서는 아니됨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됨)
-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위탁 받은 작업 중단에 따른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작업 중단 전에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작업을 대신하도록 하였고, 작업 중단에 대해 시정요구 및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여서는 아니됨
- ✓ 수급사업자가 선행 작업의 납기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후행 작업의 위탁계약을 취소하였으나 원사업자가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사급 자재를 상당기간 지연하여 공급한 사실로 인해 납기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여서는 아니됨
- ✓ 수급사업자가 위탁을 받아 납품한 목적물 중 일부를 당사의 수주 실패 또는 지연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해서는 아니됨

4) 부당한 반품의 금지 [4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① 관련 법 조항

금지사항	내용
부당반품의 금지 (제 10 조)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이하 “부당반품”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위반유형

(ㄱ) 불명확한 검사 기준 및 방법에 근거한 반품

- 검사기준 및 방법을 정하지 않거나 정하긴 하였으나 그 기준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 기준을 적용하거나 일방적으로 검사기준을 적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공정/타당하지 않은 검사기준 및 방법을 사용하여 목적물 등을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반품하는 경우 부당반품이라고 볼 수 있음

(ㄴ)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대로 납품한 목적물에 대해 원사업자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품하는 것을 말함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발주중단 또는 클레임
- 원사업자의 생산계획 변경, 사양변경, 모델 단종, 판매부진, 재고 증가, 보관장소 부족, 소비위축 경제상황 변동 등

(ㄷ)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

- 검사 결과 목적물 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된 이유가 수급사업자의 책임보다는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 부자재 건축자재 등 원재료의 품질 불량 때문인데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반품하는 행위는 부당한 반품에 해당됨

(ㄹ)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

- 만일 원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부자재,

건축자재 등을 지연하여 공급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납기 내 납품 등이 곤란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반품하는 경우 부당 반품에 해당됨

(口)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는 부당한 반품에 해당됨

(ㅂ) 납기지연을 용인한 객관적인 사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납기지연을 용인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었음에도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행위는 부당반품에 해당됨

(ㅅ) 하자에 대한 책임

-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반품할 경우 부당한 반품에 해당됨

01 해당사례

사실 관계

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은 2016년 4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한 후 위탁한 목적물을 2016년 5월에 수령하였으나, 398만원 상당의 위탁 목적물을 물품 초과 납품 등의 이유로 49개의 목적물을 수령일로부터 578일이 지나 신고인에게 반품함

공정위 판단

피심인은 사양 등을 지정하여 에어필터 및 특주감속기의 제조를 위탁한 것으로 법상 제조위탁에 해당하며 범용제품이 아닌 피심인의 사양에 맞게 특별 주문하여 제작 및 납품된 제품으로 제3자에게 납품하는 것이 곤란한 품목이었음. 따라서, 해당 사건 목적물을 납품 받은 후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반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에 해당하므로 시정명령 처분함(의결일: 2022.3.31)

사실 관계

롯데쇼핑(주)는 '05.1. ~ '07.1. 기간 중 6개 수급사업자에게 롯데마트 기획 브랜드 상표인 '해피바이' 또는 '루드라' 상표를 부착한 선풍기, 전기장판 등 11개 품목의 생활용품을 제조 위탁한 후(PB상품), 납품 물품에 대하여 각 점포의 검품장에서 검사 후 매입을 확정하여 판매하다가 수급사업자와 계절상품 등 특정기간에 판매되는 상품은 기간 종료 후에는 반품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유로 판매 과정에서 팔리지 아니한 총 108,189천 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함

공정위 판단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의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하도록 위탁하여 피심인 상호가 기재되어 타회사에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과 상품 관련 제반관련법령 위반의 책임이 수급사업자에게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제조위탁에 해당함. 또한, 사전 약정은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거래상지위가 열악한 수급사업자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6개 납품업자에게 자신의 브랜드 상표를 부착한 11개 품목을 제조 위탁하여 납품 받은 후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

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품 받은 목적물을 반품한 것으로서 하도급법 제10조에 위반되어 과징금을 부과함(의결일: 2008.6.4)

02

Q&A



부당한 반품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을까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에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에 상관없이 수령한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모든 행위를 말함.
“반품”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 또는 인수한 후에 형식에 상관없이 수령 또는 인수한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모든 행위를 말함.



반품의 예외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수급사업자의 책임에 따른 반품은 가능 함. 발주한 목적물과 다른 물품 등이 납품된 경우, 파손 및 훼손 등 하자가 있는 물품이 납품 된 경우는 가능함

업무상 유의사항 Do&Don't



Do

- ✓ 반품 사유를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전에 설정하여야 하며, 클레임약정서는 사전에 교부되어야 함
- ✓ 사전에 서로 약정된 계약 규정대로 반품을 하되, 반드시 검사결과를 같이 통보하여야 함

Don't

- ✓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의 납품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반품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3배)의 대상이 됨
- ✓ 발주 착오로 인한 반품, 물품의 운송이나 보관상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품질상의 하자를 이유로 반품, 가공이나 조립단계에서 발생한 손해를 이유로 반품하여서는 아니됨. 이 부당한 반품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 검사 기준 및 방법이 불명확함에도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이를 반품하여서는 아니됨
-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당사가 공급한 자재 등의 품질불량 또는 공급지연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여서는 아니됨
- ✓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 외국수입업자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여서는 아니됨
- ✓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필 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여서는 아니됨
- ✓ 수급사업자의 납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정지연을 이유로 반품하여서는 아니됨

5)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의 금지 [4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① 관련 법 조항

금지사항	내용
감액금지 (제 11 조)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위반유형

(ㄱ) 소급단가 적용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단가인하에 합의를 하였는데, 합의일 이전에 위탁한 목적물에 인하된 단가를 적용하였음. 이것은 수급 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임
- 피심인은 2010. 1월부터 2011. 2월까지의 기간동안 4개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를 평균 1.0%~24.4% 인하하면서, 이미 입고된 물량에 대해서도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424,790천원을 감액한 사례에서 과징금 약 23억원을 부과하였음
(공정위 의결 2012.8.30. 제2012-188호)

(ㄴ) 원사업자의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의 발주취소

-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 감액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가 해당됨
- 현금지급이나 조기지급을 이유로 감액·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임

01 해당사례

사실
관계

(주)두산은 부성테크 등 16개 수급사업자들과 2008. 2. 1. ~ 2008. 4. 4. 기간 동안 단가인하 합의를 하면서 그 인하된 단가의 적용일을 합의일 이전인 2008. 1. 16.로 정함으로써 인하된 납품단가를 소급하여 적용함. 그 결과 합의일 이전에 입고된 196개 품목에 대한 납품물량에까지 인하된 단가가 소급 적용되어 16개 수급사업자들에 대하여 총 55,003천 원의 하도급대금이 감액되었음

공정위
판단

피침인과 16개 수급사업자들은 2008. 2. 1. ~ 2008. 4. 4. 기간 중 2008. 1. 16. 이후 입고분부터 적용하기로 단가 인하에 대한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침인은 이 사건 단가인하 합의 전에 입고된 물량에 대해서도 인하된 단가를 적용하여 그 차액을 정상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였음. 이러한 피침인의 행위는 단가인하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인하된 단가를 소급하여 적용한 행위에 해당하며, 단가인하 합의 과정에서 16개 수급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피침인이 계획한 목표를 거의 그대로 관철시켰기에 합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합의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일방적인 소급적용으로 인정됨(의결일: 2012.5.18)

사실
관계

한온시스템은 2015. 6. ~ 2017. 8. 동안 자동차 공조시스템 부품을 납품하는 45개 하도급 업체의 납품 대금 80.5억원을 106회에 걸쳐 이미 결정된 납품 대금을 사후적인 협상을 통해 차감하는 방식으로 감액함. 매년 회사 차원의 원가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하도급 업체별로 절감 목표 및 실적을 구체적으로 관리하였음. (특히, '15년 하반기에는 '도전 목표'라 불리는 추가 절감 목표를 세워 모든 협력사를 대상으로 10%의 추가 절감을 요구) 원가 절감 목표 달성을 위해 감액 협상 시 하도급 업체들의 거래 의존도, 영업 이익률 등을 파악하고 납품 대금 감액을 요구하였으며 따르지 않을 경우 물량 축소 또는 거래처 변경을 위협하며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

를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진행하였음

공정위 판단

하도급법 제11조에 따라 하도급대금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감액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감액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온시스템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였음. 또한 한온시스템은 감액 협상이 마무리되면 법 위반을 은폐할 목적으로 하도급업체와 감액 합의서를 작성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자발적으로 감액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였음

*1)감액 조건 등 합의는 원칙적으로 위탁 시 이루어져야 하나, 이 사건 감액은 위탁 개시 이후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이루어졌음

2)조사 과정에서 신규 수주, 물량 증가, 생산성 향상 등 대금을 감액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는 한온시스템의 주장은 회의록, 메일 등의 내부 자료에 나타난 실제 감액 경위와 상이하였고, 심지어 한온시스템이 제출한 입증 자료 다수가 조사 개시 이후 조작된 허위 자료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음

3)감액 합의는 하도급업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한온시스템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감액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이에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에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115억원을 부과함

(의결일: 2020.10.27)

사실 관계

(주)유니크는 지난 2019년 2월 27일 수급사업자 A사에게 위탁한 자동차 부품 제작 단가를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인하하기로 A사와 합의하였으나, (주)유니크는 단가인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 성립 이전인 2019년 1월 1일부터 2월 26일 기간 동안 제조가 완료된 제품에까지 인하단가를 소급 적용하여 하도급대금 4,264만원을 감액함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제조위탁 단가에 대한 인하 합의 후 소급 적용하는 행위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하는 것으로,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주)유니크에게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감액한 하도급 대금 4,264만원 및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명령과 함께 시점 명령,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함(의결일: 2023.4.7)



계약 중 설계변경으로 감액되는 경우와 당초 물량 정산을 하기로 하고 정산 시 감액하는 경우의 각각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도급계약이 먼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16조에 의거하여 15일 이내 변경 내역을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함 도급 계약 변경 없이 물량 감소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감액 발생시 서면발급 의무가 발생하여 정산협의 전 감액되는 물량과 감액방법, 사유, 감액금액,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함



처음에는 계약 수량과 단가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상황변화에 따라 수급사업자와 수량을 감축하는 합의를 한 경우, 단가인상을 별도로 하지 않으면 하도급법에 위반되는지요?



고정비 감소 등 계약 수량과 단가의 상관관계가 인정되고, 수량 감축에 따라 비용 등이 증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경우 하도급 법 위반 가능성이 있음.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은 ‘단가와 수량에 의해 하도급대금 확정 후 수량을 감축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 단가인상 등 보전을 해주지 아니하는 행위’를 법 위반 행위로 예시하고 있음



물량이 증가하였는데 당초 하도급계약에서 대금 변동은 없는 것으로 특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단가를 조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A

하도급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간의 약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며, 당초 계약 변동은 없는 것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단가를 적용하여 추가되는 물량만큼 대금을 증액 시켜주는 것이 타당함. 한편 [부당특약 심사지침]에서 ‘수급사업자는 입찰 전 현장 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내역서를 작성하므로 원사업자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약정’을 법 위반 행위 예시로 들고 있는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은 부당 특약으로 판단 받을 수 있음



Q

당초 입찰 시 교부하였던 사양 조건이 변경되어 하도급계약 금액을 감액하여야 하는데 이럴 경우 변경계약 체결로 가능한 것이 아닌지요?



A

계약의 주요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작업 변경 전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계약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중요한 사항임. 또한 하도급계약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 대비 감액이 될 때는 사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도 발급해 주어야 함

업무상 유의사항 Do&Don't



Do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수급사업자의 장비관리 소홀로 인해 장비가 훼손되어 해당 장비에 대한 적정수리비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는 정당한 감액에 해당됨
- ✓ 하도급계약 체결 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대금 산정자료에 중대하고 명백한 착오를 발견하여 이를 정당하게 수정하고 그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
- ✓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과 다른 목적물 납품하는 경우에는 해당목적물을 반품하면서 해당 금액만큼 감액할 수 있음
- ✓ 수급사업자가 불량품을 납품하는 경우, 해당 목적물의 금액만큼 감액이 가능함
- ✓ 수급사업자가 정해진 납기일을 초과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약정된 지체상금 규정에 따라 감액이 가능함
- ✓ 감액을 하기 전 감액사유와 기준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Don't

- ✓ 수급사업자와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위탁이 완료된 목적물까지 소급하여 인하된 새단가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됨
- ✓ 고객사의 발주취소, 현금지급이나 조기지급 또는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또는 납품가격인하 등을 이유로 감액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됨

6)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① 관련 법 조항

금지사항	내용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제 12 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 수리 · 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개념

- (ㄱ)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계약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다음 행위는 금지하는 것을 말함
- 해당 목적물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전에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 자기가 구입,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 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 (ㄴ) 사전에 물품구매대금 등의 결제를 사전에 요청할 경우에는 수급 사업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음을 원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함

01

Q&A



수급사업자는 제조위탁을 받은 후 발주자가 지정한 부품을 구매하여 다른 작업에 사용하였는데, 원사업자가 그 부품대금의 조기결제를 요구 시 하도급법 위반여부가 있는지요?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목적물 제조를 위해 사용 했어야 할 부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따르므로 이 경우에는 하도급법상 물품 구매대금 등의 조기결제청구 금지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원사업자가 유상 지급한 원재료의 대금결제에 대하여 하도급대금과 상계하지 않고 별도로 일괄 결제하는 방법이 하도급법 위반인지요?



하도급대금과의 상계여부를 불문하고 하도급대금 지급시보다 빨리 결제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소지가 있음. 즉, 별도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지급한 유상자재 대금을 당해 자재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에 대한 하도급대금보다 조기에 결제하도록 하면 안됨

업무상 유의사항



- ✓ 계속적인 하도급거래에 있어 원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한 경우, 실제 투입한 물량에 대한 가액 이상으로 하도급대금을 차감하지 말아야 함
- ✓ 자신의 장비를 사용하도록 함에 있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 대가를 과다하게 요구하여서는 아니됨
- ✓ 자신이 제공하는 중장비 임대료 등을 당월 대금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하게 하는 행위 또는 장비임대업자의 통상적인 중장비 임대료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지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7)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① 관련 법 조항

금지사항	내용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제 12 조의 2)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개념

- (ㄱ)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해서는 안됨
- (ㄴ) 거래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요구 등은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에 해당할 수 있음

01 해당사례

사실
관계

세화아이엠씨는 2016. 1. 12. 자신의 사업장 내 건물에서 2016년도 품질정책 설명회를 열어 향수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목적물의 검사 결과를 합격품과 불합격품으로 구분하고, 불합격품은 다시 세부적으로 A등급부터 E등급으로 구분하기로 하였음. 또한, 해당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 중 합격품에 대해서는 검사비용을 부과하고, 불합격품에 대해서는 검사비용과 더불어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품질검사 불합격에 따른 불이익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이후 해당 수급사업자 대표이사에게 품질검사 관련 정책 시행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명을 받은 뒤 2016. 2. 경부터 2016. 4. 경까지 납품한 목적물에 대해서는 자회사를 통해 검사비용을 부하였고 2016. 7. 경까지 납품한 목적물에 대해서는 검사비용 및 품질 페널티 비용을 부과하였음
피침인은 아래의 항목 등을 고려할 때,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목적물 검사비용을 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전가하였고, 그로 인해 피침인 스스로는 목적물 검사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또한, 자회사 역시 동일한 금액만큼의 경제적이익을 준 것으로 판단됨. 이에 공정위는 세화아이엠씨의 위법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함(의결일: 2021.6.1)

공정위
판단

사실
관계

현대삼호중공업(주)는 사외 수급사업자 4개사와 2007.7.16. ~ 2008. 7.15. 까지 파이프 피스를 도장하여 납품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사업자에게 무상으로 파이프 피스를 지급하면서 무상 사급자재에 대한 “지급보증증권”을 받고도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급자재 관련 연대보증 약정서”를 추가로 받음

공정위
판단

피침인은 사급자재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을 요구함에 있어 보증기관의 지급보증 외에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추가로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피침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이중보증을 하게 하였음. 지급보증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하여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로서 이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행위에 해당됨(의결일: 2009.3.20)

신규사례

사실
관계

효성중공업(주)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피심인이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4,325만 원을 수급사업자가 대신 부담하도록 요구함. 효성중공업(주)은 2개 수급사업자에게 각각 850만 원과 3,3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수급사업자가 대신 지급하도록 함.

공정위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대신 부담하도록 한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위반된다고 판단함. 피심인의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함
(의결일: 2025년 2월 4일)

업무상 유의사항



- ✓ 원사업자의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재물 및 경제적 가치 있는 이익을 포함. 이하 같음)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됨
- ✓ 하도급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 않아야 함
- ✓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 말아야 함

8)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유출행위 금지 [4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하도급 5배 배상제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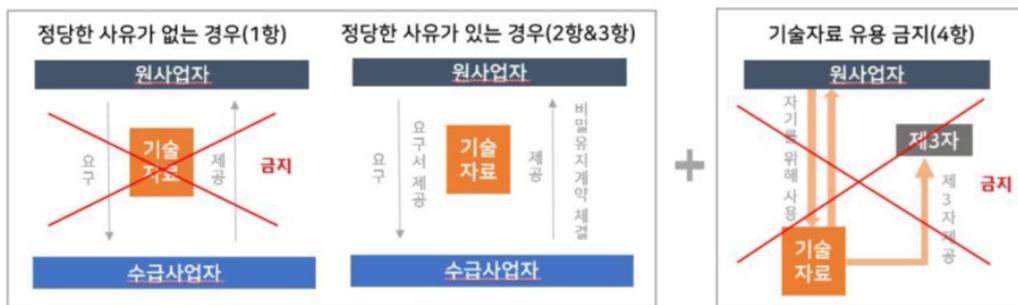
① 관련 법 조항

금지사항	내용
기술자료 제공 요구금지 등 (제 12 조의 3)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 3 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술자료의 정의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하도급법 제2조 제15항)

② 하도급법 제12조의3 주요 내용(요약)



③ 위반유형

(ㄱ) 기술자료제공 강요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정당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에 따른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제안서 등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재료 가격, 납품단가 구성내역 원가 등이 포함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

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술지도, 품질관리를 명목으로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들과 재계약시 기술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여 기술자료 제공을 유도하는 경우

(ㄴ) 취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이전계약(기술사용계약 등 포함)을 체결하고 기술 관련자료를 제공받아 필요한 기술을 취득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 종료 후 위 계약상의 비밀 유지의무에 위반하여 그 기술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제품을 상용화하거나 무단으로 다른 기업에 기술을 공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아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그 기술을 제공하여 가격경쟁을 하도록 한 후 그 수급사업자에게 납품가격의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하면서 수급사업자의 핵심기술을 탈취한 후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출원을 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선(先) 출원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선점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원사업자가 선(先) 출원하는 경우

(ㄷ) 비밀유지계약 미체결(2022년 2월 18일 시행)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을 요청하면서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법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지 않은 경우

④ 기술자료제공 요구 및 유용행위의 개념

- (ㄱ) 기술자료 제공 요구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의 제출, 제시, 개시, 물리적 접근 허용(전자파일 접속, 열람허용), 기술지도, 품질관리 등 그 방법을 불문하고 기술자료의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함.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함. 다만,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음.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의미함
- (ㄴ) 기술자료의 유용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를 벗어나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함. 원사업자가 취득한 기술자료 뿐만 아니라 ‘열람’ 등을 통해 취득한 기술자료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도 대상이 됨
- (ㄷ) 기술자료 유용의 위법성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사전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제시한 기술자료의 사용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사용함으로써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는지를 위주로 판단하게 됨

⑤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 (ㄱ) 원칙적으로 기술자료 제공 요구는 금지되나,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원칙적 불허, 예외적 허용
- (ㄴ) 나아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요구 목적 달성을 위

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추가요건 부과
→ 현실적으로 원사업자가 기술자료요구의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극히 어려운 바, 치밀한 사전 논리개발과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

⑥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

- (ㄱ) 취득한 기술자료를 취득 목적이나 사용범위를 벗어나서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됨
- (ㄴ) 원사업자의 계열사도 제3자 이므로, 수급사업자로부터 정당한 사유로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품질, 생산 등의 사유로 해외/국내 계열사로 반출하여서는 안됨
- (ㄷ) 기술자료를 유용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 有
- (ㄹ) 조사시효는 7년. 서류의 보존기간도 7년으로 규정

01 해당사례

사실 관계

1. 트레이 제작 도면 관련 서면교부의무 위반행위

삼성에스디아이(주)는 2016. 8. 18., 2016. 9. 13., 2017. 3. 3. 등 3차례에 걸쳐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트레이 제작도면을 다른 수급사업자 3개사에 요구하면서 법에서 정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음

2. 기술자료의 부당한 제3자 제공행위

삼성에스디아이(주)는 2018. 5. 18. 수급사업자에게 트레이 제작도면을 요구 후 송부 받은 도면을 중국업체 2개사와 합작하여 설립한 중국법인에 도면번호 및 수급사업자 명칭을 삭제한 후 이메일로 송부하였음

공정위 판단

1. 트레이 제작 도면 관련 서면교부의무 위반행위

트레이 제작도면은 적재물의 하중 및 적재량, 흔들림 허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완성된 것으로 다른 경쟁 사업자가 제작도면 없이 실물만을 보고 육안으로 각 수치를 측정하고 재질까지 추정하여 트레이를 역 설계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비밀로 관리하기 위해 권한 부여 및 직원 교육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기에 기술자료에 해당함. 그러나, 피심인은 제작도면을 요구하면서 하도급법에서 정한 기술자료 요구서를 사전에 협의하여 교부한 사실이 없음

2. 기술자료의 부당한 제3자 제공행위

피심인은 자신의 중국 시안 현지법인의 협력업체에 제공할 목적으로 이 사건의 트레이 제작도면을 취득하였음에도 전달 사실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지 않았고 수급사업자도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도면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기에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이 인정됨. 또한, 피심인 및 중국법인은 새롭게 제작 및 확보해야 하는 노력을 절감하고 납품시기를 단축할 수 있는 이익을 얻은

반면 수급사업자는 중국시장에서 기술성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상실하였음.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7천만원을 부과함(의결일: 2022.5.3)

사실
관계

공마스크팩시트 및 보건용 마스크 의약외품 제조회사인 피앤씨랩스는 국내 마스크팩 시트 시장 점유율(약 60% 이상) 1위 회사로 중소 수급사업자에게 마스크팩 원단의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 받으면서, 2017년 8월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원단의 제조공정도를 자사에 제공하도록 요구하였음. 그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음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서면 없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요구한 피앤씨랩스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함(의결일: 2023.2.22)

사실
관계

현대엠시스템즈(주)는 2015.6.부터 2018.5.까지 자사 카메라 개발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A사의 기술자(카메라 도면, 회로도 등)를 당초 제공된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하였음. 특히, A사 카메라를 대체할 자사 카메라 개발 과정에서 A사 기술자료를 B사 등 타 사업자들에게 송부하고, 이를 토대로 견적 의뢰, 표본 모형(샘플) 작업, 개발 회의 등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됨. 또한 A사와 거래가 중단된 이후에도 신규 개발된 자사 카메라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A사 기술자료를 사용하는 등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지속하였음

공정위
판단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의 제품을 대체할 카메라를 개발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여 기술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술자료 사용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사전 협의를 하거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대체 카메라 개발로 수급사업자의 납품이 중단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인정하였으며,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함(의결일: 2023.6.1)

사실
관계

현대자동차 그룹 소속 계열사인 현대오토에버는 스마트태그 시스템을 현대차에 공급을 하고 있음. 스마트태그 시스템은 위치추적 센서, 메모리, 무선통신 칩으로 구성된 실시간 위치추적 시스템을 뜻함. 현대오토에버는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스마트태그를 개발, 상용화하는 프로젝트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2018년 1월 스마트태그 시스템 프로젝트의 하드웨어와 펌웨어 개발을 담당했던 하도급업체 A사에게 통신 프로토콜 등 기술자료를 요구하였음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스마트태그 시스템 프로젝트를 진행한 하도급 업체에게 통신 프로토콜 등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한 현대오토에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함(의결일: 2023.6.12)



계약을 체결하면서 또는 계약 중 수급사업자에 대해 원가 정보를 요청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에 위반되는지요?



[기술자료 제공 요구. 유용행위 심사지침]은 ‘생산원가 내역서’를 ‘기술자료’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하도급법 위반 리스크가 존재함을 유의해야 함



아직 하도급 거래를 체결하기 전인데,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해도 될까요?



하도급법 상 기술자료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하도급거래 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나, 계약 전에 발생한 행위라도 이후에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됨을 유의해야 함. 또한, 하도급 거래와 무관한 별도의 거래를 위해 수급사업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당 사가 제공한 도면, 기술표준에 근거하여 작성된 수급사업자의 자료도 기술자료에 해당할까요?



하도급거래의 특성 상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기술자료에는 원사업자의 기술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원사업자가 제공한 도면, 기술표준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수급사업자의 기술 또는 노하우가 반영되었다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함. 특히 원사업자가 부품 등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대가를 지불했다고 하여 부품 제조 과정의 노하우 및 기술이 반영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까지 원사업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함

업무상 유의사항 Do&Don't



Do

[기술자료 요구]

- ✓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마다 기술자료 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함
- ✓ 기술자료 요청서는 기명날인(날인, 서명, 전자서명 등) 하여야 함(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요청서에 법률적으로 구속되지 않을 경우 서면 미교부로 판단될 수 있음)
- ✓ 기술자료 요청서의 법정 필수 기재사항 일부 항목을 특정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대략적인 예정일을 기재하여 서면을 발급한 후 해당사항이 확정되는 대로 이를 기재한 서면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함
-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함

[기술자료 유용]

- ✓ 공동개발 기술 산출물은 수급사업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기술자료를 사용하여야 함

Don't

[기술자료 요구]

- ✓ 기술자료를 요청하면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 ✓ 구두로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재료 가격, 납품단가 구성내역 원가 등이 포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 기술지도, 품질관리를 명목으로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 재계약시 기술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여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술자료 제공 요구를 유도하는

경우

- ✓ 기술자료 요구 시 기술자료 내역,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인도일 및 인도방법 등을 서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 정당한 대가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기술자료 유용]

- ✓ 기술이전 계약(기술사용계약 등 포함)을 체결하여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 종료 후 계약상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상용화하거나 무단으로 제3자에게 기술을 공여한 경우
- ✓ 기술력을 심사한다는 목적으로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기술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고 수급사업자의 경쟁사업자, 당사의 기존 거래처나 관계사 등에 기술자료를 제공하여 동일 기술을 개발하도록 하여 제품을 납품 받은 경우
- ✓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 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 받아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그 기술을 제공하여 가격경쟁을 하도록 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납품 단가의 인하를 요구한 경우
- ✓ 공동으로 기술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핵심기술을 탈취한 후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그 핵심기술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에 대하여 수급사업자가 출원을 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선 출원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선점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선 출원하는 경우

9)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금지

① 관련 법 조항

금지사항	내용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제 17 조)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개념

원사업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음

(ㄱ)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ㄴ)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ㄱ) 또는 (ㄴ)의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의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물품의 종류에 따라 제시하여야 할 자료, 자료제시의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의5에 따름

01 해당사례

사실 관계

삼성전자(주)는 각종 가전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자로 자사제품 판매활동의 일환으로 사내판매캠페인을 실시하며 부서별, 개인별 판매목표를 설정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자 및 우수부서에 대하여 표창하고 목표미달부서에 대하여는 실시기간을 추가 연장하여 목표량을 달성하도록 함. 각 부서와 사원들은 목표량 달성을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배정 물량을 판매하였고, 특히 냉열기 사업부는 약 3일간 냉장차 등 자사제품 124대를 수급사업자 등 거래업체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였음

공정위 판단

피침인은 수급사업자 등에게 판매한 물품대금을 피침인이 제작한 별도의 대금공제요청서를 통하여 수급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물품구입대금을 피침인이 지불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였다. 이는 사내직원 판매를 위장한 탈법행위에 의한 부당한 대물변제행위임이 인정된다고 의결함(의결일: 1986.3.12)

02

Q&A



대출 변제의 계약서에는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는지요?



하도급대금 지급 시 대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지와 계약서 기재시 법적 요건은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함



대출 변제 시 적법성 여부는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하는지요?



계약서로 사전에 합의하지 않고 사후에 일방적으로 대금을 대물로 지급하지 않는지와 계약내용과 달리 대물에 대한 평가액이나 지급 대상을 변경하여 지급하지는 않는지 확인을 해야함

업무상 유의사항



- ✓ 대물변제와 관련된 자료제공 후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중요한 사항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함으로써 수급 사업자가 불의의 타격을 입지 않도록 함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한 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작성·교부하고, 이를 보관하도록 함

10)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① 관련 법 조항

금지사항	내용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제 18 조)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반유형

- (ㄱ)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 인사에 간섭하는 경우
- (ㄴ) 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는 경우
- (ㄷ) 1차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이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 없이 2차 수급사업자의 선정·계약 조건설정 등 재하도급 거래 내용을 제한하는 경우
- (ㄹ) 수급사업자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경우
- (ㅁ)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ㅂ) 원사업자가 자신이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 거래의 목적달성과 관계없이 원사업자 자신이나 특정한 자(회사 또는 자연인)의 사적 이득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생산과정, 투입인력, 재료 배합 등을 실사하는 행위(다만,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공사 현장에 출입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③ ‘정당한’ 경영상 정보 요구 행위 예시

- (ㄱ) 원사업자가 관계법령상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예: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구분 지급 또는 직접 지급하기 위

하여 필요한 임금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ㄴ) 원·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상호 공유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ㄷ) 원·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신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ㄹ) 양산되지 않거나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품목에 관한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정산 등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ㅁ) 원사업자가 법 제3조의3에 근거한 협약체결의 대상이 되는 수급 사업자에게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의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01 해당사례

사실
관계

볼보그룹코리아(주)는 2006. 1. 1. ~ 2007. 9. 30. 기간동안 1차 수급사업자에게 중장비 관련 부품인 TRACK MOTOR COVER를 제조위탁 시 2차 수급사업자인 3개 업체(금형 제조업체)로부터 금형 견적서를 제출 받아 이들 업체 중 1곳과 직접 가격 협상을 통하여 금형 단가를 7,368천원으로 결정(이는 최저 견적 가 제출업체인 수급사업자 견적가 보다 10% 인하한 금액임)한 후, 1차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2차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 단가결정 시 그대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1차 수급사업자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한 사실이 있음

공정위
판단

피심인은 1차 수급사업자에게 중장비 관련 부품인 TRACK MOTOR COVER를 제조위탁 시 2차 수급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1차 수급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하여야 할 재하도급거래 내용을 제한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사실이 있고 이는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에 해당된다고 의결함
(의결일: 2009.1.8)

사실
관계

1. 협력사 경영관리 기준의 설정 및 관리

(주)포스코케미칼은 2010년경부터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협력사 경영관리 기준’을 정하여 운용하였다. 경영관리 기준은 협력사 임원의 임기, 임원 처우, 배당률, 이익잉여금 등 적정 자본 규모, 지분구성 등 협력사 내부 경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경영관리 기준이 변경될 때마다 관련 협력사에게 이를 설명하고 준수하도록 요청하였고, 협력사들이 경영 관리 기준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협력사 관리에 활용하였음

2. 협력사 및 임원의 평가지표(KPI)에 반영

(주)포스코케미칼은 2010. 8. 1. 경영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를 반영한 ‘협력사 KPI 평가지침’20)을 제정한 이후로 매년 협력사의 핵심성과

지표(KPI)를 토대로 협력사를 평가하고 해당 결과를 인센티브 지급 혹은 페널티(계약해지, 물량축소 등) 부과의 근거자료로 사용하였음
피심인의 행위는 자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사의 경영사안 전반에 대해 특정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자사의 사적 이득(내부 인사적체 해소 및 고위직급 직원 사기증진을 위한 직원 전직)을 취하고 거래상대방인 협력사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등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를 하였다고 공정위는 의결함(의결일: 2022.11.8)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사례로 아래와 같은 행위가 있음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위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공정위에서 고시한 요구가 금지된 경영상의 정보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아래와 같은 경영상의 정보가 있음

- ①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지급 내역 등)
- ②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매출 관련 정보(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 ③ 수급사업자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제품 개발·생산 계획, 판매 계획, 신규투자 계획 등에 관한 정보 등)
- ④ 수급사업자의 영업 관련 정보(거래처 명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납품조건(납품가격을 포함)에 관한 정보 등)
- ⑤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의 고유 식별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업무상 유의사항 Do&Don't



Do

- ✓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인상협의 시 하도급대금의 인상 폭 결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재료의 원가비중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가능함
- ✓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 입찰 시 발주처에서 수급사업자의 원가정보를 필수 제출자료로 지정하여 원가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함
- ✓ 계약의 특성상 실비로 정산하는 것이 적절한 항목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항목의 실비정산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함
- ✓ 다른 법령에 의해 원사업자에게 부여된 수급사업자 관리 및 감독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함
- ✓ 원사업자가 상생협력과 공정거래협약 이행을 위해 하도급업체에 경영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는 가능함
- ✓ 산재보험료 산출을 위해 임금대장 등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함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고, 협약체결에 따른 실적 확인을 위해 수급사업자와의 협약체결 내역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함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인건비, 복리후생비, 금융비용 등을 지원하고 그 범위 안에서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게 지원하도록 요청 내지 권하고, 지급내역을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가능함
- ✓ 수급사업자의 효율성 증진,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급사업자가 컨설팅 받고자 하는 경영전략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함

Don't

- ✓ 협력사에 대해 거래단절, 물량축소 등 불이익을 제공할 것을 거래조건으로 내걸면서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사업자와 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 자신의 특허로 개발한 부품이 아닌 일반부품의 제조를 협력사에 위탁하면서, 해당부품을 자신에게만 납품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 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게 간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 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등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 1차 수급사업자의 재 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2차수급사업자의 선정, 계약조건설정 등 하도급 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 수급사업자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원가내역, 생산과정, 투입인력, 재료 배합 등을 실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11) 보복조치의 금지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① 관련 법 조항

금지사항	내용
보복조치의 금지 (제 19 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반유형

- (ㄱ)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가 신고한 수급사업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협력사에서 배제시키거나, 협력사 신용등급을 하향조정 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01 해당사례

사실
관계

고성조선해양(주)는 부당하도급대금 결정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공정위, 감사원 등에 신고한 수급사업자A를 신용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하며 명예훼손은 기본계약서 위반 사유라는 이유로 계약해지예정을 통보하였음. 결국 피심인은 잔여물량에 대한 제조위탁계약을 타사와 체결함으로써 수급사업자A와의 하도급계약을 사실상 해지를 하였음

공정위
판단

수급사업자 A의 신고 및 진정내용은 피심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으로써 피심인의 명예훼손을 주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하도급거래 특성상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관련기관에 도움을 청하는 것은 수급사업자의 최소한의 자기방어권임을 감안하면 공정위 신고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피심인의 명예 실추를 이유로 거래를 중단한 것은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합리적 사유 없이 거래를 중단한 행위는 법상 보복조치에 해당된다고 의결함(의결일: 2013.11.20)



보복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요?



수급사업자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등을 주는 행위

- ① 원사업자가 동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 ②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 신청 행위
- ③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 ④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업무상 유의사항



- ✓ 법 위반 사실을 관계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정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 어음 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포기각서 제출을 강요한 후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12) 탈법행위 금지

① 관련 법 조항

금지사항	내용
탈법행위의 금지 (제 20 조)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반유형

- (ㄱ)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경우
- (ㄴ) 어음 할인료, 자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01 해당사례

사실
관계

(주)화인의 상무이사 장OO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미지급 어음 할인료를 물품대 선급금명목으로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한 후 이를 다시 회수하도록 피심인 화인의 경영혁신지원실 팀장과 자재팀장에게 지시하였고, 대표이사 이OO은 이러한 보고를 받고 도 이를 방지하였음

공정위
판단

피심인은 미지급 어음 할인료를 지급완료한 것으로 위원회에 통보한 후 수급사업자로부터 이를 다시 회수하는 탈법행위를 2회에 걸쳐 실시하여 법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고 법위반의 동기가 고의적이라고 인정되므로 고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의결일: 2017.1.9)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합의 후 합의서와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하였는 바, 그 후 감사원 감사결과 영수증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영수확인한 금액보다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적은 것을 확인하여 감사원이 공정위에 조치할 것을 통지하였을 경우, 원사업자의 행위는 허위자료 제출에 따른 탈법행위인가요?



하도급법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닌 점 및 수급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의 요구사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우회적인 방법으로 법을 면탈 하려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 다만, 공정위가 원사업자에게 영수증의 제출을 명한 것이 아니고 원사업자 스스로 제출한 것이라면 허위자료 제출을 통한 탈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업무상 유의사항 Do&Don't



Do

- ✓ 공정위 서면실태조사나 조치 결정 등으로 어음 할인료, 자연이자 등을 지급하고 이를 우회적으로 회수하거나 반납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지 확인

Don't

- ✓ 대금 지급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받은 후 이를 납품대금 등에서 감액 처리하면 안됨

13) 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관련 법 조항

금지사항	내용
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 3 조의 4)	<p>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원사업자가 제 3 조 제 1 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p>③ 제 2 항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에 해당하는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고, 같은 항 제 4 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특약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p>

② 위반유형

- (ㄱ) 원사업자가 제3조 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 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이나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민원 처리/산업재해 관련사항 등), 또는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다음과 같은 약정
-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단가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정하는 약정

-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반관리비 등 간접비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 기타 위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수급사업자의 권리·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책임이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사항

- 인·허가, 환경·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용
- 설계·작업내용의 변경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요구 등에 따른 재작업
 -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한 비용
 -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 부당 특약의 무효

- 2025년 4월 1일 시행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한 특약은 무효로 하게 됨.

01 해당사례

사실
관계

(주)동일스위트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 현장 설명서 및 특기시방서에 1. 민원처리 등과 관련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2. 돌관작업 비용을 견적에 포함하도록 하는 계약조건, 3. 입찰내역에 없는 상황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건 같은 계약조건을 설정하였음

공정위
판단

피심인이 설정한 계약조건은 1. 민원 처리 관련 비용 부담 및 2. 사전 소요비용을 정확히 예측이 어려운 작업 비용을 견적에 반영한 것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으로 법 위반에 해당함. 이에 공정위는 (주)동일스위트가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깎은 대금 14억5,10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 3,200만원을 부과함(의결일: 2019.5.9)

신규사례

사실
관계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수급사업자에게 방사선관리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부속서류인 용역시방서에 '분쟁, 논쟁 또는 의견차이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까지 원사업자의 해석을 따를 것'과 '실제 인력 투입시기·인원 등이 변동·지연되더라도 원사업자의 책임이 없다'라는 특약을 포함시킴.

공정위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이 설정한 특약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이에 따라 피심인의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는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로 인정되어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함. (의결일: 2025.3.6)

02

Q&A



계약서에 수급사업자에게 입찰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견적누락, 견적착오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고 약정한 경우 부당특약에 해당 하는가요?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과실(견적누락, 착오)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부당특약으로 보기는 어려움. 다만,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함을 주의해야 함



계약서가 아닌 현장설명서나,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된 내용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공정위 심사지침은 특약에 대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때 교부하거나 수령한 설계도면, 시방서, 유의서, 현장 설명서, 제안요청서, 물량내역서, 계약 및 견적 일반조건 ·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특약조건, 도급업무내역서, 발주서, 견적서, 계약서, 약정서, 협약서, 합의서, 각서 등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 ·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정을 통해 설정한 계약조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권리 ·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정이면 부당한 조건을 추가하면 안됨

업무상 유의사항



- ✓ 일정한 유형의 특약을 설정한 경우, 부당한 특약으로 간주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와 합의가 있어도 그 조건이 부당한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 ✓ 부당한 특약은 민법 제103조, 제104조 또는 약관규제법에 반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로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당한 특약을 근거로 한 행위는 법적 구속력 또한 없는 점을 유의해야 함

다. 발주자의 의무사항

1)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관련 법 조항

의무사항	내용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제 14 조)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 범위

(ㄱ) 직접 지급해야 할 금액의 확정

- 직접 지급 금액의 확정이 직접 지급 의무의 전제이며, 직접 지급 금액은 원사업자의 기성검사 및 발주자 또는 감리자 등 의 승인(검수)에 의해 확정될 수 있을 것임
- 원사업자의 비 협조 등으로 확정이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의 합의에 의할 수 있을 것임

(ㄴ) 발주자의 직접 지급 한도

- 발주자가 직접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금액 범위임
-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선급금 중 미공제금이 남아있을 경우, 발주자는 직접 지급하기에 앞서 미 공제 선급금을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음

라. 수급사업자의 준수의무사항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원칙으로 하므로 수급사업자의 의무사항 등은 상대적으로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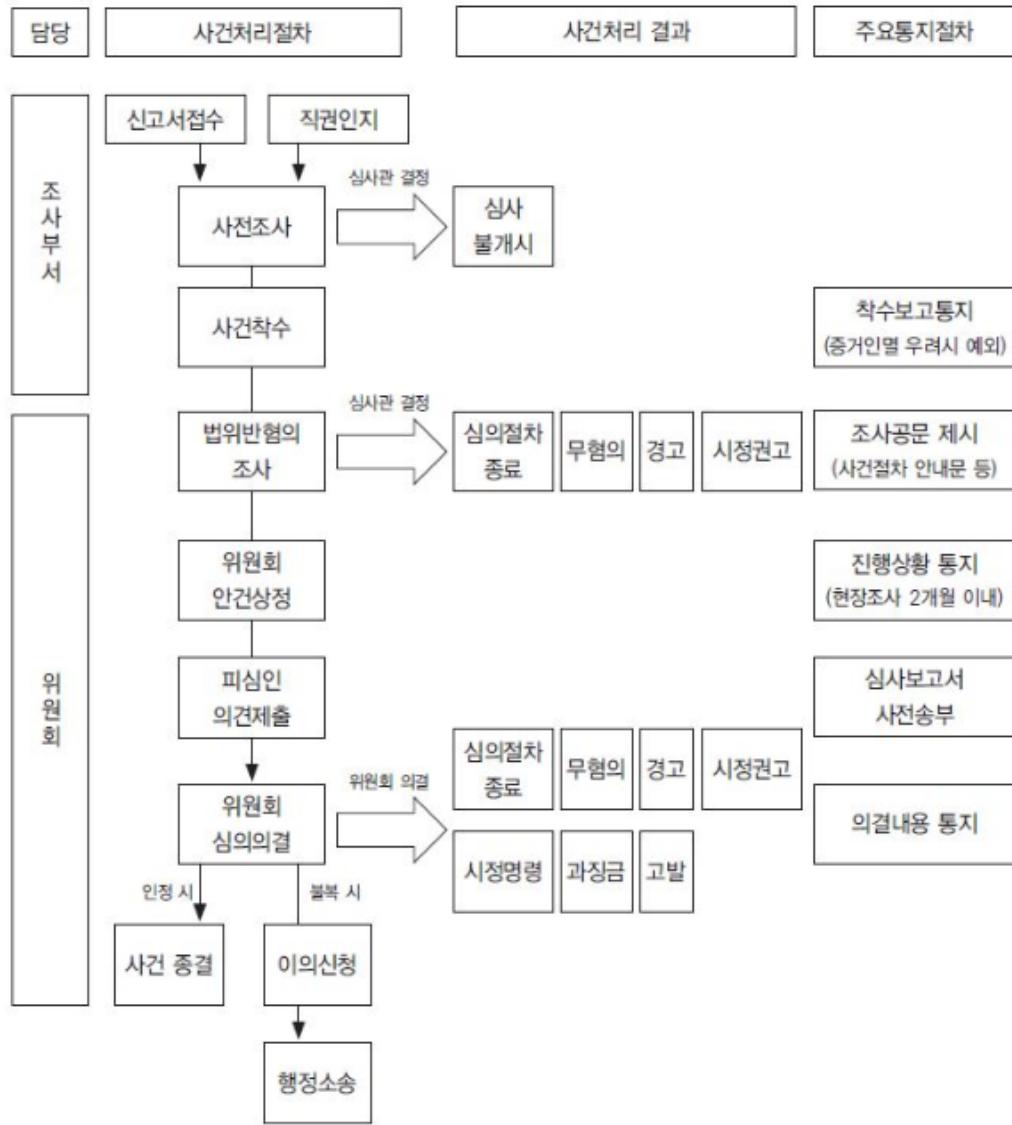
1) 서류보존 의무

의무사항	내용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제 3 조 9 항)	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

의무사항	내용
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 (제 21 조)	<p>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위탁의 내용을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p> <p>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데에 협조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수급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증거서류 등을 공정위에 자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p>

5. 하도급 사건처리 절차도



[하도급 사건처리 절차도, 오승돈 변호사 저 「하도급법」]

가. 위원회 의결 유형

- 1) 조사중지: 소재불명으로 조사곤란
- 2) 심의절차종료: 적용요건 험결, 신고 취하, 위반여부 판단곤란
- 3) 무협의: 법 위반 사실 없거나, 위반행위 증거 없음
- 4) 종결처리: 위반행위 시정조치 이행확보 곤란
- 5) 경고: 위반행위 경미, 시정조치 실익 없음
- 6) 시정명령: 법위반
- 7) 공표명령: 위반정도가 중대하고, 위반동기가 고의적
- 8) 과징금: 악질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
- 9)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요청: 지나치게 악질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
- 10) 고발: 시정명령 불이행

나. 법 위반에 대한 제재(양벌규정, 하도급법 제31조)

1) 규정내용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

2) 규정취지

- ① 양벌규정이란, 법위반 행위를 직접 행한 행위자 외에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도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법인의 경우 법률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것에 불과하므로 징역형, 벌금형 등의 형벌을 받을 수가 없어 범죄능력이나 수형능력이 부인된다.
- ② 법인이 법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실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양벌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법인 자체에도 벌금형은 부과할 수 있다.

- ③ 하도급법처럼 법인에 대해 양벌규정을 둔 취지는 특히 사전에 법 위반 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고,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 3 조제 2 항제 3 호를 위반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의2제5항제1호	1,000		
나. 법 제3조제5항을 위반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0조의2제4항	3,000	4,000	5,000
다. 법 제3조의5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30조의2제5항제2호	100	200	300
라.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0조의2제6항	100	250	500
마. 법 제2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	법 제30조의2제3항			
1) 원사업자		1,000	2,500	5,000
2) 원사업자의 임원, 종업원과 그밖의 이해관계인		100	250	500
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의2제7항	50	75	100

사.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2,000	5,000	10,000
2)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		200	500	1,000
아.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경우	법 제30조의2제1항제3호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2,000	5,000	10,000
2)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		200	500	1,000
자.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 항에 따른 조사를 부·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30조의2제2항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10,00 0	15,00 0	20,000
2)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		2,500	3,500	5,000

라. 벌금

- 1) 다음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30조 제1항)
 - ①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규정을 위반한 자
 - ② 부당한 특약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 ③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규정에 위반한 자
 - ④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규정에 위반한 자
 - ⑤ 선급금의 지급규정에 위반한 자
 - ⑥ 내국신용장 개설의무를 위반한 자
 - ⑦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규정에 위반한 자
 - ⑧ 검사의 기준, 방법 및 시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 ⑨ 부당반품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 ⑩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감액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 ⑪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 ⑫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
 - ⑬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
 - ⑭ 하도급대금의 지급 규정을 위반한 자
 - ⑮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아니한 자
- 2)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① 보복조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 3)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①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 ② 탈법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 ③ 시정조치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마. 과태료

- 1)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우 1억원 이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법 제30조의2 제1항)
 - ①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요 내용을 누락 또는 거짓으로 공시한 자
 - ② 공정위의 조사 및 의견 청취를 위한 출석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 ③ 공정위에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 2)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에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우 2억원 이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3)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원사업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 그 원사업자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4)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대금 연동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한 원사업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5)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법정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아니한 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6)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원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대리점법



III. 대리점법_관련부서: 영업/AM/PS/마케팅 등

1. 대리점법 개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5.12.22 제정, 2016.12.23. 시행)은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태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계기로 대리점 거래에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제정되었음

, 이 법률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가. 대리점 거래의 정의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에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함

☞ 용어 정리

- 1) "공급업자": 생산하거나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을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함
- 2) "대리점": 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하는 사업자를 의미함
- 3) "재판매": 일반적으로 대리점이 공급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다시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의미함
- 4) "위탁판매": 일반적으로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상품 또는 공급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을 공급업자의 계산으로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의미함. 통상적으로 대리점은 위탁판매가 완료된 때 공급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이러한 판매에 대한 대가로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음

나. 대리점 거래 적용 제외

- 1) 대리점이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자가 아닌 경우 대리점법 적용 대상이 아님
- 2) 중소기업은 업종별 평균 매출액 400억원~1,500억원이하, 자산총액 5,000억원이하여야 하며,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어야 함

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법 적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리점 거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보다 우선하여 적용, 대리점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예: 구속조건부 거래 등 거래상 지위남용 이외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은 공정거래법 규정이 적용됨

라. 분쟁조정(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협의회를 두고 분쟁조정)

- 1) 분쟁조정당사자가 협의회에 신청서 제출하여 분쟁조정을 신청(단, 공정위 조사중인 사건을 제외)하거나, 공정위가 협의회에 조정을 의뢰
- 2)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고, 중단된 시효는 조정조서 작성 또는 분쟁조정 불성립으로 종료시 다시 진행.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는 분쟁조정 신청은 다시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음
- 3) 분쟁당사자간 합의 사항을 이행한 경우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며, 분쟁조정당사자간 조정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반면 조정 불성립시 조정절차가 종료되며, 공정위 사건처리절차가 개시됨

2. 대리점법 상세내용

가. 대리점거래 계약서 작성 의무

1) 관련 법 조항

의무사항	내용
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제 5 조)	①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이하 "대리점거래 계약서"라 한다)를 대리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법정 서면 필수 기재사항

- ①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에 관한 사항
- ②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 ③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 ④ 상품의 반품조건에 관한 사항
- ⑤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 ⑥ 계약해지의 사유 및 계약해지 절차에 관한 사항
- ⑦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 ⑧ 그 밖에 대리점거래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계약서 작성 및 보관시 유의사항

- ① 계약체결 즉시 계약서 작성 및 교부
- ② 필수적 기재사항 누락 없었는지 확인
- ③ 공급업자 이외에 대리점의 기명 또는 서명 날인도 반드시 받아야 함
- ④ 공급업자는 거래종료 후 3년 간 보관하여야 함

나. 대리점법상 금지행위

1) 구입강제행위의 금지 [3배 배상제 대상]

① 관련 법 조항

의무사항	내용
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제 6 조)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ㄱ) 구입강제는 상품 또는 용역의 주문 강요 및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조성, 주문내용의 일방적 수정, 주문하지 않은 상품 또는 용역의 일방적 공급 등을 통해 구입이 이루어지는 행위를 포함함
(ㄴ) 구입이 강제되는 상품 또는 용역은 공급업자가 직접 대리점에 공급하는 것일 수도 있고, 공급업자가 직·간접적으로 지정하는 사업자의 것일 수도 있음

② 법 위반 유형

- (ㄱ) 남아있는 재고 정리를 위해 주문이 없는데도 대리점에게 밀어내기 하는 유형
(ㄴ) 거래처에 대하여 구입하지 않으면 향후 계속적인 거래에 영향을 받을 것임을 직·간접적으로 알려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
(ㄷ)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대리점에게 주문하지도 않은 상품을 임의로 공급하고 반품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
(ㄹ) 대리점에게 과대한 물량을 할당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이 그 할당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행위
(ㅁ) 대리점업자가 청약 또는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이를 구입한 것으로 정산하거나 이에 준하여 회계처리하는 행위
(ㅂ) 대리점업자의 동의 없이 유통기간이 임박한 상품, 신제품, 판매

가 부진한 비인기 제품 등을 일정 수량 이상 반드시 구입 또는 인수하도록 하는 행위

- (ㅅ) 대리점업자가 판매하는 상품과 무관한 비품 등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ㅇ) 대리점에 대해 상품을 구입하도록 지속적으로 종용하고 구입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 불이익을 주거나 실적점검을 통해 구입 물량이 적은 대리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등 대리점이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여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ㅈ) 대리점의 주문량이 공급업자가 정한 할당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리점의 주문내역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미달된 할당량을 공급하는 행위
- (ㅊ)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 비인기 제품, 재고품 등을 일방적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ㅋ) 대리점과 사전 협의 없이 대리점별 매출 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고, 대리점이 시달된 매출 물량을 주문하지 아니하면 일방적으로 물량을 공급하거나 구매한 물량의 반품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하는 행위
- (ㅌ) 대리점별로 이월상품에 대한 구입금액을 할당하고, 임의로 품목이나 수량을 정하여 공급하는 행위
- (ㅍ) 신제품에 대한 대리점의 주문량이 생산량에 미달되는 경우 대리점별로 임의로 할당한 재고물량을 공급하는 행위
- (ㅎ) 대리점이 신상품이나 인기상품을 주문할 때 원하지 않는 재고상품이나 비인기상품을 함께 뚫음으로만 공급하는 행위

01 해당사례

사실
관계

남양유업(주)는 제품회전율이 낮아 유통이 부진한 제품 등의 재고를 강제로 소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 10월경부터 2013. 5월경까지 불가리스 등 총 26개의 품목과 관련하여 대리점들로 하여금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또는 주문하지 않은 제품 등을 지속적/상시적으로 구입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있음

공정위
판단

1. 거래상지위 존재 여부

피심인과 거래하는 대리점의 대부분은 사실상 전속대리점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어, 피심인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매우 높은바, 피심인과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음. 또한,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대리점별 매출목표를 부여하여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실적 제고 요청하는 등 대리점의 업무를 지휘감독 하였음

2. 부당성 여부

수요예측 실패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고 재고를 강제소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위사실이 이루어짐. 또한 유통기한이 짧은 유제품을 대리점들의 합리적인 예측 물량 또는 주문 물량과는 관계없이 이를 초과하여 일정한 물량을 할당하고 이를 구입하도록 강제하였음. 결정적으로 대리점 계약서에 대리점이 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피심인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품을 임의 공급하더라도 이를 구입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임

이에 공정위는 대리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하고 대형유통업체 파견사원 임금을 전가한 남양유업(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함(의결일: 2013.7.8)

사실
관계

대림자동차는 2007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과다한 재고와 연체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일부 대리점에게 이륜차를 강제로 판매하였음. 대림자동차의 일부 대리점은 내수 위축이나 판매 부진 등으로 이미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연체 이자(연 11%)를 부담하는 상황이었으며, 대림자동차는 7개 지역별 사업소의 담당자를 통해 매월 대리점에 하루에도 수차례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퇴근시간까지 기다리며 제품 공급 중단 또는 계약 해지를 거론하며 사업소 담당자가 원하는 수량만큼 대리점이 구입하도록 강요하였음

공정위
판단

피심인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대리점에게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대리점의 여신거래 한도를 증액하여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과 같이 자기와 거래하는 대리점에게 구입할 의사가 없는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함(의결일: 2015.2.27, 서울고법 선고 2015누45528 판결(확정))

2) 부당한 이익제공강요 금지[3배 배상제 대상]

① 관련 법 조항

의무사항	내용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금지 (제 7 조)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ㄱ) 대리점에게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로서 경제상의 이익에는 금전, 유가증권을 비롯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
- (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상대방에게 전가하여 소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행위도 포함

② 법 위반 유형

- (ㄱ) 대리점업자에게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협찬금 등 경제상 이익을 공급업자를 위하여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ㄴ) 자신이 구입하는 물량의 일정 비율만큼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ㄷ) 대리점에 대하여 산출 근거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협찬금이나 기타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는 행위
- (ㄹ) 자기의 필요에 의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거래처로 하여금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경우
- (ㅁ) 자기의 연구비용, 직원 야유회 비용 등을 강제적으로 부담시키는 경우

01 해당사례

사실
관계

기아자동차(주)는 납품업체와 천연가죽시트세트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여 오던 중 납품업체에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명분으로 납품 받은 순정용품인 전연가죽시트 및 비순정용품인 가죽핸들카바 등을 같은 회사로 하여금 구입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음

공정위
판단

피심의인은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자기의 책임하에 판매하는 것이 정상인 상거래관행임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사원을 파견받아 피심인의 각 정비사업소에서 판매하는 모든 자동차용품 판매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공정위는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이익제공을 강요한 행위임이 인정된다고 의결함(의결일: 1999.10.5)

사실
관계

SK브로드밴드는 자신의 종합 유선 방송 및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관련 신규 고객 유치 및 사후 관리 등을 수행하는 대리점들에게 (1)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대리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수수료 지급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함. (2) 품질·성능 등의 문제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아 악성재고화된 알뜰폰(제품명: ZTE ME)의 재고 물량 소진을 위해서 대리점 현장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PDA 총 564대를 자신의 알뜰폰으로 교체하도록 하고, 대리점에게 교체 실적표를 배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함. (3) 대리점주가 보유한 다수의 디지털 방송(30대)·초고속 인터넷 서비스(35회선) 상품을 신규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신규 대리점 명의로 변경시킨 후, 기존 서비스이용 계약기간(3년 약정, 2017년 2월)까지 계속 보유하도록 강요함

공정위
판단

(1)상 일방적 수수료 감액 행위는 불이익 제공, (2)상 구입 의사가 없는 상품 밀어내기는 구입 강제, (3) 자신의 실적(매출) 유지를 위한 비용부담 강요는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로 판단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3억5천1백만 원을 부과함(의결일: 2020.10.16)

3) 판매목표강제행위

① 관련 법 조항

의무사항	내용
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 (제 8 조)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ㄱ)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영업 목표를 제시하고, 열등한 지위에 있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거나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판매 부진에 대한 위험을 전가하고,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행위로서 대리점의 자생적 발전기반을 저해하고, 공정한 거래기반을 침해하므로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임

② 법위반 유형

- (ㄱ) 신규 가입자 유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업무 위탁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이월시켜 지급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감액하여 지급하는 행위
- (ㄴ)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상품·용역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반품 조건부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
- (ㄷ) 공급업자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대리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주거나 줄 것을 나타내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자와의 계약을 중도에 해지
 - 정당한 이유 없이 제품의 공급을 중단
- (ㄹ) 대리점에게 매월 일정액 이상의 판매목표를 부여하고 실제 판매액이 목표액에 미달했을 경우 목표액과 실제 판매액과의 차액을 실제로 판매한 것처럼 하여 그에 상당하는 판매수수료를 대리점

에 지급하게 하는 경우

- (口) 판촉을 위한 순수한 유인수단의 범위를 넘어 판매목표와 연계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 (ㅂ) 장려금이 포함되어야 정상적인 유통마진율이 확보되고 그 장려금 지급율이 정상적인 유통마진율에 근접할 정도로 높은 경우
- (ㅅ)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신제품의 판매를 중지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ㅇ) 대리점이 판매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반품조건부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반품하지 못하게 하고 대리점이 제품을 인수 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여 추후 대금지급시 공제하는 행위
- (ㅈ) 대리점이 판매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사에서 대리점을 대신하여 강제로 미판매 물량을 덤팡 판매한 후 발생손실을 대리점의 부담으로 하는 행위

01 해당사례

사실
관계

귀뚜라미홈시스는 대전유성대리점에 판매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였으며, 이러한 판매목표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음. 2007년 보일러 판매업체인 귀뚜라미홈시스가 한 전속대리점에 2007년도 목표 판매량을 보일러 2천 대로 통지하고 판매량이 목표치에 미달하자 지난해 2월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음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판매목표 강제행위에 해당한다며 앞으로는 판매목표 강제를 하지 않도록 귀뚜라미홈시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함 (의결일 2009.11.20)

사실
관계

(주)엘지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자신이 관할하는 대리점에게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를 부과하면서, 유치된 초고속인터넷 신규 고객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목표를 동시에 설정 함. 또한,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는 미달성된 목표 1 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5만원의 장려금을 차감하는 ‘TPS 정책’ 을 운용함. 매월 말 목표 달성을 여부를 점검하고 대리점이 ‘TPS 정책’ 외의 타 장려금 제도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장려금에서 ‘TPS 정책’에 따른 목표 미달성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함

공정위
판단

공급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유치 및 관리를 위탁받은 대리점에게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초과하여 수수료까지 차감하는 방법으로 판매목표를 강제 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함(의결일: 2021.5.24)

4) 불이익제공행위의 금지

① 관련 법 조항

의무사항	내용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제9조)	<p>②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제 6 조부터 제 8 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p>

- (ㄱ)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규정은 공급업자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들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일반조항적 성격을 가지며, 제6조부터 제8조의 행위가 아니더라도 공급업자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거나 공급업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ㄴ) 거래조건: 각종 구속사항, 저가매입 고가판매, 가격 조건, 대금 지급방법 및 시기, 반품, 제품 검사방법, 계약해지 조건 등 모든 조건 포함
- (ㄷ) 불이익: 대리점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입강제 · 이익제공강요 · 판매목표 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불이익으로 인정되어야 함
- (ㄹ) 거래조건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거래조건 불이행, 거래관계에서 사실행위 강요 등 합리적 이유 없는 거래거절, 계약해지 포함
- (ㅁ) 불이익이 금전상 손해인 경우 손해의 존재 및 범위까지 확정되어야 함

③ 법 위반 유형

- (ㄱ) 대리점과 제품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설정하는 경우
- (ㄴ) 거래상대방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

항을 설정하는 경우

- (ㄷ) 공급업자의 사유로 불량 제품이 발생한 경우 교환비용의 일부를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거나 반품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경우
- (ㄹ) 상품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ㅁ) 판매장려금 지급 제한 사유와 무관하게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 (ㅂ) 판매물량에 상응하는 부동산 등 담보를 제공받으면서 대금결제의 이행을 보충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당좌수표 또는 백지어음을 예치토록하거나 연대보증인의 입보를 요구하는 등 이중담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ㅅ) 납품 자체에 대한 지체상금은 규정하면서 대금 지연에 대한 이자지급은 면제하도록 한 조항을 설정하는 경우
- (ㅇ)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파손되거나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
- (ㅈ) 계약기간 중에 대리점의 신용도 등에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대리점의 외상매입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기존 담보금액을 대폭 증액하는 행위
- (ㅊ) 공급업자의 요구에 따른 설비투자 등을 했을 경우 대리점이 부담한 비용의 규모에 비하여 이를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 (ㅋ) 대리점에게 시정기회 부여 및 소명기회 제공 등 대리점계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리점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01 해당사례

사실 관계

(주)아모레퍼시픽은 방판특약점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던 중 방문판매원을 방판특약점주 및 방문판매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방판 특약점 또는 직영영업소와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도록 임의로 재배정한 사실이 있음. 이는 피심인의 방문판매 유통경로 확대를 위한 이른바 세분화 전략에 의한 것으로 기존의 방판특약점과 계약하고 영업 중이던 방문판매원 중 일부를 임의로 인근의 신설 방판특약점 또는 직영영업소로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신규 거점을 확장하였음
피심의인이 임의로 실행한 반복적인 세분화 행위는 방판특약점주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중인 거래처와의 거래를 중단하게 함으로써 독립된 사업자인 방판특약점의 자유로운 거래처 선택을 제한하는 등 사업활동을 제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판특약점에 매출액 감소 및 거래기회 상실 등의 불이익을 초래하였으므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불이익 제공으로 인정됨(의결일: 2019.12.10)

사실 관계

제일사료는 대기업집단인 하림지주 소속 계열사로 대리점을 통해 가축사육 농가에 사료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작년 12월말 현재 총 117개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음. 공정위에 따르면 2009년 1월~2021년 12월 13년간 제일사료 소속 대리점(130개)이 관리하는 가축사육 농가(1817개)가 대리점에 사료대금을 지연 지급하며, 이에 따라 발생한 연체이자에 대한 책임을 대리점에게 전가하였음. 또 제일사료는 2017년 1월~2021년 12월 대리점 계약서상 자동연장규정에 따라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해 오면서 해당 기간 동안 108개 대리점에 대해 416건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음

공정위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으로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6,700만원과 과태료 1,250만원을 부과하였음(의결일: 2023.5.17)

신규사례

사실
관계

오비맥주 주식회사는 맥주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로서, 대리점과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으며, 대리점과의 거래에서 물품대금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대리점에게도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요구하고 입보시키는 행위와,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않은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였음.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이 물품대금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대리점에게도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요구하고 입보시키는 행위와,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않은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음. 피심인의 행위는 대리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과 거래상대방에 대한 통지명령 및 보고명령을 부과하였음. (의결일: 2025.01.02)

5) 경영활동간섭금지

① 관련 법 조항

의무사항	내용
경영활동 간섭 금지 (제 10 조)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ㄱ) 거래처의 경영에 대한 관여는 제조업자의 판매정책을 침투시키기 위함 이외에 경영지도, 채권보전, 마케팅 정보의 수집 등 여러 가지의 이유에 의하여 일어날 수 있으며, 그 행위 자체가 곧바로 대리점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그 결과 거래처의 사업 내용 등에 대하여 정상적인 상관습에 비추어 지나친 제한이나 의무를 과하는 것으로 될 경우는 위반이 됨

② 법 위반 유형

- (ㄱ) 공급업자가 자기의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판매촉진행사에 대리점이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ㄴ) 대리점에 소속된 임직원이나 판매원의 선임·해임·계약, 근무·영업지역, 거래조건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강요하는 행위
- (ㄷ) 대리점의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자금출납 내역 등 판매업자의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ㄹ) 대리점의 거래상대방, 영업시간, 거래지역 등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강요하는 등 부당하게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 (ㅁ) 거래처 임직원의 선임·해임, 변경 등에 대하여 공급업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게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거래중단,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ㅂ)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의 거래처 또는 판매내역 등을 조사하거나 제품 판촉행사시 공급업자와 사전 합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01 해당사례

사실
관계

한국지엠(주)는 대리점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대리점의 온라인 광고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내용을 정한 SNS활용지침(광고 시 사전 허가, 매체 한정, 개별 댓글 및 메시지 금지 등)을 제정하였고, 또한 활용지침의 구속력 확보를 위해 정도영업규정(활용지침 준수)을 제정하고 위반 심의절차규정까지 마련하였음. 이를 통해 특정 채널을 통한 광고활동 이외 다른 매체를 통해 광고시 규정 위반으로 대리점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았음

공정위
판단

피신인은 SNS활용지침을 통해 특정 채널을 제외한 모든 온라인 매체에서의 광고 활동을 금지하는 등 대리점의 온라인 매체에서의 광고활동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인센티브를 차감하는 등 제재조치를 시행하였으므로, 대리점의 판촉활동을 일방적으로 정해 이행을 요구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위반이 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함(의결일: 2022.7.10)

사실
관계

위니아에이드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위니아전산시스템에 판매금액 정보를 ‘필수’ 입력토록 하는 방식(대리점이 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 저장해야만 최종소비자에게 상품의 배송 · 설치 가능)으로 대리점이 운영하는 총 182개의 매장으로부터 총 117,033건의 가전 상품 판매금액 정보('20년 기준)를 취득함. 또한 판매촉진 정책 시행하면서 판매기준가(권장소비자판매가) 및 판매하한가(최저소비자판매가)를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시달하고, 대리점으로부터 취득한 판매금액 정보를 이용해 대리점이 자신이 시달한 가격에 상품 판매했는지 확인함

공정위
판단

상품 판매금액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써 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마진율 마진 판매가격 공급가격이 노출되어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대리점의 판매금액 결정권 침해 행위로 판단하여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부과함(의결일: 2023.4.26)

신규사례

사실
관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는 대리점과의 거래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였음. 대리점의 거래처를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였으며 대리점 통합 관리 전산프로그램인 스마트시스템을 통해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였고, 대리점의 소모품 거래처를 제한하는 계약 조항을 포함시켰음.

공정위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이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와 대리점의 거래처를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한 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음. 피심인의 행위는 대리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과 거래상대방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하였음.

(의결일: 2025.04.06)

6) 주문내역 확인 요청 거부 또는 회피금지

① 관련 법 조항

의무사항	내용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제 11 조)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청약 또는 구입의사를 표시한 제품, 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ㄱ) 대리점이 최초에 주문한 내용을 공급업자의 직원이 임의적으로 변경하거나 대리점이 최초 주문 후 수정한 주문내역의 확인을 거부하는 행위 등은 구입강제행위나 불이익제공행위 등으로 연결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이러한 주문내역 확인 요청 거부 또는 회피행위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불공정한 대리점 거래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의 조항임

7) 보복조치금지[3배 배상제 대상]

① 관련 법 조항

의무사항	내용
보복조치의 금지 (제 12 조)	공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리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ㄱ) 공급업자는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분쟁조정신청, 공정위 신고, 조사협조,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한 대리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됨

(ㄴ) 대리점에게 주는 불이익은 거래의 정지나 물량의 축소는 물론 계약 해지, 반품 제한, 금전의 미지급 및 일부 지급 등은 물론이고 거래조건 설정이나 거래과정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대리

점보다 차별적으로 불리하게 취급하는 경우도 포함됨

② 법 위반 유형

- (ㄱ) 대리점이 법 위반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했음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대리점계약에 자동갱신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 (ㄴ) 대리점이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음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이 초래될 정도로 공급 물량을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리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 (ㄷ) 대리점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음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조건이나 결제조건 또는 지원사항 등을 다른 대리점에 비해 현저히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01 해당사례

사실
관계

(주)에스카이아는 대리점 1개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해약했으며, 신고인이 이를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자회사 (주)영에이지로 하여금 (주)영에이지와 신고인 간의 대리점계약도 해약하게 한 사실이 있음

공정위
판단

피심인은 대리점과 계약을 해약한 사유로 고객에 대한 불친절, 피심인 공장에 무단출입, 경품용 우산의 판매, 구두 수선료의 과다징수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결과 피심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타당성이 없었으므로 일방적으로 피심인의 대리점에 대한 행위는 계약관계에서 본사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공정위는 의결함(의결일: 1987.7.27)

3. 대리점법 위반시 제재

- 가. 시정조치(23조): 법 위반 행위의 중지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나. 시정권고(24조): 공정위가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

다. 과징금

- 1) 위반행위의 내용 · 정도, 기간 · 횟수,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고려
- 2) 관련매출액: 법 위반금액

구입강제	구입 강제한 상품 · 용역의 가액
경제상이익제공 강요	강요한 금전 · 물품 · 용역, 기타 경제상이익의 가액
불이익제공	판매장려금 미지급시 삭감 미지급한 금액 공급업자 귀책으로 파손 · 훼손된 상품 반품거부 시 해당 물품 가액 공급업자 귀책으로 인한 반품비용 전가 시 해당 비용

- 3) 정액과징금: 최대 5억원

라. 징벌적 손해배상(제34조)

- 1) 일정 위반행위에 대해 발생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
- 2) 구입강제(6조),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7조), 보복조치(12조)

마. 형사처벌(제30조)

- 1)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필요 전속고발제
- 2)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곧바로 벌칙 적용 가능

대상행위	제재수위
구입강제(6 조)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7 조)	
판매목표 강제(8 조)	
불이익 제공행위(9 조)	징역(2년 이하) 또는
경영활동 간섭(10 조)	벌금(1억 5천만원 이하)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 회피(11 조)	
보복조치(12 조)	
시정조치 명령 위반(23 조)	

바. 과태료

- 1) 조사 방해 · 거부, 허위자료 제출, 서면계약서 미교부 · 미보관 등
- 2) 최대 2억원 범위 내에서 부과 가능



A대리점이 주로 영업하고 있던 지역에 새로운 대리점을 개설하면서 A대리점으로 하여금 당해 지역 외의 지역에서 영업하도록 종용하였다면 법위반인가요?



판매지역의 결정은 대리점이 스스로 결정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의 판매지역을 좌우하는 것은 법위반이 될 수 있음



본사 판매정책상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판매활동 및 관리가 필요한 특수 수요처에 대해 판매대리점의 판매활동을 제한할 경우 대리점법 위반인가요?



판매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로 볼 수 있으나, 부당한 거래상대방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행위로 인해 거래가 제한되는 특수 수요처의 범위, 판매대리점간 경쟁을 감소시키는 정도, 위반에 대한 제재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음



당사가 대리점별 영업지역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 대해 불이익을 준 경우 불공정행위인가요?



부당한 지역제한으로서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 위반이 될 수 있음. 대리점법상 '경영활동 간섭' 행위(대리점법 제10 조, 시행령 제7 조)의 일종으로, 공정거래법상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지역 제한(공정거래법 제45 조 제1 항 제7 호)



회사 관리의 편리를 위해 대리점을 본점 소재지별로 구분하여, 당사의 관리 영업점을 지정하는 경우 대리점 본점이 이전함에 따라 그 의사와 무관하게 관리영업점을 변경하는 경우 적법한가요?



대리점의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대리점을 관리하는 영업 점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법상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음



회사가 협력업체에 판매목표를 할당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수수료 수준을 차등하는 영업정책을 시행하였을 경우 대리점법 위반인가요?



단순히 실제 판매량에 비례하여 결과적으로 수수료가 차등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율 자체를 차등 한다면 대리점법 위반이 될 수 있음. 이 때, 목표가 과다한 수준인지, 실제 거대상대방이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실제 제재수단이 사용되었는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회사가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대리점별로 판매목표 할당하는 것은 불공정행위인가요?



대리점별 판매목표의 할당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목표달성을 미달 시 장려금 차등, 계약해지 등과 같은 불이익이 주어짐으로써 사실상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결과가 된다면 위법일 가능성이 높음

판매장려금 지급 등 자발적인 협력을 위한 수단으로 판매목표가 사용되는 경우 또는 구매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촉구하거나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판매목표의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대리점으로 하여금 적정량을 재고로 보유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대리점에게는 불이익을 줄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 되는가요?



대리점이 취급하는 물품의 속성 등을 감안할 때, 본사의 적정재고량 유지 유도행위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다만 대리점들의 의사에 반한 임의 할당, 밀어내기 등으로 비춰질 수 있는 행위는 법 위반임

“...(전략)...원고(대림자동차)의 내부문서상 ‘PUSH 판매’는 대리점들의 의사에 반한 구입강제를 의미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역시 내부문서에 ‘밀어내기’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원고의 밀어내기로 대리점들은 적정수준의 유통재고를 초과해 과잉재고를 보유하게 되었고, 이로써 대리점들에 대한 연체채권이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원고는 구입강제를 위해 대리점과 사이에 약정된 여신거래한도를 임의로 증액하거나 여신거래 한도를 초과해 대리점에게 이륜차를 판매하기도 하였다.... (중략)...원고 측 직원은 요구물량을 구매하지 않을 시 대리점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서 대리점주가 요구물량에 대한 주문에 동의할 때까지 해당 대리점을 떠나지 않거나 수시로 전화를 걸어 구입을 강제하였고, 대리점주가 여신거래한도가 남아있지 않다면서 구매를 거절하면 원고는 임의로 여신거래한도를 늘려서까지 요구물량에 대한 주문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후략)....” [2017. 8. 18., 서울고법 선고 2015 누 45528 판결.]

공정거래법



IV. 공정거래법_ 관련부서: 전사

1. 공정거래법 목적 및 특성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공정거래법상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요약

구분	내용
불공정 거래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공정거래법 제 45 조)<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거래거절 ② 차별적 취급 ③ 경쟁사업자 배제 ④ 부당한 고객유인⑤ 거래강제 ⑥ 거래상지위 남용 ⑦ 구속조건부거래 ⑧ 사업활동 방해⑨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부당지원행위)
부당 공동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가 상호간의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인상하기도 하고, 시장을 분할하기도 하며, 출고를 조절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당 공동행위 유형(공정거래법 제 40 조)<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가격의 결정·유지·변경 ② 거래조건 설정 ③ 거래제한 ④ 시장분할⑤ 설비제한 ⑥ 상품의 종류·규격 제한협정 ⑦ 영업의 주요부문 공동 관리⑧ 입찰담합 ⑨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부당지원행위)
부당 지원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당지원행위는 개념상으로는 독립된 기업 간에도 발생할 수 있으나, 주로 동일 기업집단내의 계열회사간의 내부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통상 ‘부당내부거래’라고 함<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당내부거래 유형(공정거래법 제 47 조)<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부당한 자금지원 ② 부당한 자산 상품 등 지원③ 부당한 인력지원 ④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등

2. 불공정거래 행위

가. 부당한 거래거절

사업자는 거래 개시 또는 지속 여부와 거래 상대방 선정에 대해 자유롭게 선정할 권리가 있으나, 이를 거절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관련시장에서 경쟁 제한 효과를 초래한다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거래거절은 공동의 거래거절과 기타의 거래거절로 구분됨. 회사의 생산 또는 판매정책상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와 거래를 하지 않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1) 공동의 거래거절

-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 중단,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대상 행위

- 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공동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 ② 공급거절, 구입거절, 거래개시의 거절, 거래 계속의 거절 등
- ③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용역의 수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3) 위법성 판단기준

- ①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
- ② 공동의 거래거절은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이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됨
※ 아래와 같은 경우 공정거래 저해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ㄱ) 재고 부족이나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부도 등 채무불이행 가능성 등으로 인해 공동의 거래거절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ㄴ) 특정사업자가 공동의 거래거절을 당하더라도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 경우
 - (ㄷ) 사업자들이 사전에 당해 사업영위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거래

자격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미달되는 사업자와의 거래개시를 거절하는 경우

(ㄹ) 공동의 거래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ㅁ) 공동의 거래거절에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용어 정리 - ‘정당한 이유 없이’와 ‘부당하게’의 구분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와 ‘부당하게’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
- ‘정당한 이유 없이’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 유형은 당연위법의 원칙이 적용되어 행위의 외형이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되면 원칙적으로 위법하며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행위자에 있음
- ‘부당하게’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 유형은 합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당해 행위의 유형이 있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 불공정성과 효율성 증대효과 등을 비교 형량하여 경쟁제한성, 불공정성효과가 보다 큰 경우에 위법한 것으로 보며, 공정위에서 부당성을 입증해야 함

4) 기타의 거래거절

- ①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 중단,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5) 제한되는 대상 행위

- ① 사업자가 단독으로 특정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 ② 거래거절에는 공급거절과 구입거절, 거래개시의 거절과 거래 계속의 거절이 포함됨. 또한,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하

는 상품 · 용역의 수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도 포함

- ③ 불특정다수의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음

6) 위법성 판단기준

- ① 거래거절 대상이 되는 물품 · 용역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여부
- ② 거래거절을 당한 특정사업자가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여부
- ③ 거래거절로 인해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경쟁의 정도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게 되는지 여부
- ④ 거래거절로 인해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시장진입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 ⑤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에 금지된 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공동행위 등)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는지 여부 등
※ 거래거절의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ㄱ) 생산 또는 재고물량 부족으로 인해 거래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물량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 (ㄴ)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신용결함, 명백한 귀책사유, 자신의 도산 위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거래거절 이외에 다른 대응방법으로 대처함이 곤란한 경우
 - (ㄷ) 당해 거래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ㄹ) 단독의 거래거절에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01 해당사례

사실
관계

포스코는 협력작업 계약에 따라, 화성기업과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화성기업 대표에게 협력작업의 사업양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계약 만료시점에 거래를 종료함

공정위
판단

화성기업은 포스코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많은 인력과 장비를 포스코 사업장에 투입하고 있으며, 포스코 이외의 거래처 확보가 어려움으로 포스코는 화성기업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음. 사업양도를 강요한 행위는 위와 같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한 경영간섭에 해당.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기간의 종료에 따른 재계약 여부는 계약 당사자의 자율적판단사항이나, 본 건은 협력작업에 투입되는 인력과 설비규모, 대체거래선의 부재 등을 감안할 때 계속적인 거래가 전제 또는 예상되는 계약관계로서 사업양도에 응하지 않자 타당한 사유 없이 계약연장을 하지 않을 계획임을 통보하였는 바, 이는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함(의결일: 2000.7.12)

사실
관계

피심인들은 대구 동구·수성구 및 경북 경산시 지역의 레미콘 시장에서 특정사업자에게 레미콘의 공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함으로써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공동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함

공정위
판단

피심인들은 대구 동구·수성구 및 경북 경산시 지역의 레미콘 시장에서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로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으로 레미콘의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향후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공정거래법(2011. 12. 2. 법률 제1111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함(의결일: 2013.9.5)

02

Q&A



본사가 정해준 가격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불만을 샀다는 이유로 재판매 대리점과 거래를 중단하였다면 문제가 있나요?



재판매 대리점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제품 판매가격은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며, 따라서 대리점의 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하는 것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서 법 위반임. 또한 이를 이유로 거래거절을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금지하고 있는 목적달성을 위한 거래거절로서 불법행위임



거래종료의 사유가 회사 내 정책적인 사유로 인하여 특정 수급사업자와 거래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 어떤 절차를 갖춰야 하는지요?



회사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거래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 거래상대방이 다른 거래처를 물색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기간을 부여 필요

업무상 주의해야 할 행위



- ✓ 주문하지 않은 상품의 구입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거래를 중단하여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 ✓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상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달성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 ✓ 독과점지위의 강화, 계열회사의 지원, 끼워팔기, 재판매가격 유지 및 배타조건부거래를 목적으로하거나 이와 연계된 경우

나. 차별적 취급

사업자는 가격 등 거래조건, 거래내용 등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으나, 거래조건, 거래내용 등의 차별적 설정이 자기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경쟁을 저해할 경우 법 위반임

차별적 취급은 1)가격차별, 2)거래조건차별, 3)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4)집단적 차별로 구분됩니다.

1) 가격차별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① 대상 행위

(ㄱ)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른 가격차별행위

☞ 가격이란,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상대방이 실제 지불하는 모든 대가. 여기에는 할인율 등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도 포함됨

② 위법성 판단기준

(ㄱ) 행위자가 가격차별로 인해 시장에서 지위를 유지·강화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ㄴ) 가격차별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의도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ㄷ)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대방의 경쟁사업자가 가격차별로 인해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아래와 같은 경우 차별적 취급의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ㄱ) 거래수량의 과다, 운송비, 거래상대방의 역할, 상품의 부패성 등 의 요소에 근거하여 한계비용 차이나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차별 취급하는 경우

(ㄴ)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

히 상회하는 경우

(ㄷ) 차별취급을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거래조건차별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① 대상 행위

(ㄱ) 가격 이외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이는 가격이나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건(예: 수량할인 등)을 제외한 계약의 이행 방법, 대금의 결제조건 등 거래내용면에서의 차별을 말함

② 위법성 판단기준

(ㄱ) 행위자가 거래조건 차별로 인해 시장에서 지위를 유지·강화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ㄴ) 거래조건차별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의도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3)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① 대상 행위

(ㄱ)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는 가격 등 거래조건·거래내용 등의 차별 행위가 대상이 됨

② 위법성 판단기준

(ㄱ) 가격 등 거래조건·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계열회사에 대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 대해 현저하게 불리하게 취급하였을 경우에는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하여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 또는 경제력 집중 우려가 있는 것으로 봄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을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음

- 거래수량의 과다, 운송비, 거래상대방의 역할 등에 근거하여 한

계비용 차이나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차별 취급하는 경우

-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차별취급을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집단적 차별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① 대상 행위

(ㄱ)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차별 취급하는 행위(합의가 없더라도 성립될 수 있으며, 실제로 차별행위가 행해져야 함)

② 위법성 판단기준

(ㄱ) 집단적 차별행위의 위법성은 가격차별 및 거래조건 차별의 경우에 준하여 판단함

(ㄴ) 집단적 차별은 여러 사업자에 의해서 행해지므로 원칙적으로 가격차별 및 거래조건 차별의 경우에 비해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 이 큰 것으로 봄

01 해당사례

사실
관계

골프존은 스크린골프 가맹점에게만 ‘투비전(Two Vision)’ 신제품을 제공하고 비가맹점에게는 제공하지 않았으며, 특히 차별적 제공에 따라 3,000개 이상의 스크린골프 비가맹점들이 경영난에 시달리는 만큼, 가맹점들과 유사한 기능의 투비전 제품을 공급하도록 함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가맹점들의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으로, 가맹점에게만 골프시뮬레이터 신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한 골프존에 대해 신제품 공급명령을 부과하고, 5억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조치함
(의결일: 2018.11.15)

사실
관계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차량용 배터리 부품업체에 최저임금이나 전력비 상승 등을 이유로 총 4회에 걸친 가공비 29.4% 인상을 단행하였으나, 산업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특정 수급업자에게는 2018년 3월에 처음으로 가공비를 6.7% 인상하면서 차량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업체와 차별 취급함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최저임금이나 전력비 등이 상승하면 차량용 배터리 부품과 산업용 배터리 부품 모두 가공비 인상요인이 발생함에도 산업용 배터리 부품의 가공비만 동결한 차별 취급이라며 한국아트라스비엑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함 (의결일: 2021.2.18)

02

Q&A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격차별’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가격차별’은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한 가격의 차이가 존재하고 그런 가격의 차이가 부당하여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성립



물품을 구입하면서 비계열회사인 A사가 계열회사인 B사보다 견적가격을 싸게 제시하였음에도 B사와 거래하기로 하였다면 법 위반인가요?



A사가 공급하는 물품이 가격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거나 불량률이 높은 등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면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단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이 될 수 있음

업무상 주의해야 할 행위



- ✓ 구매물량이나 거래기간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사업자에게만 지불조건을 현저히 유리하게 하는 행위
- ✓ 우리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래상대방과 그렇지 않은 상배방을 차별하여 시장지배력을 높이는 행위
- ✓ 계열회사와 거래하면서 비계열회사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낮은 대가를 받는 행위

다. 거래상 지위남용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물품구입 강제 등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므로 법에 위반됨

거래상 지위남용은 1)구입강제, 2)이익제공 강요, 3)판매목표 강제, 4)불이익제공, 5)경영간섭으로 구분됨

1)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① 대상 행위

(ㄱ)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대상이 되며, 구입요청을 거부하여 불이익을 당하였거나 주위의 사정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입강제가 있는 것으로 봄

2) 이익제공 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① 대상 행위

(ㄱ) 거래상대방에게 금전·물품 등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대상이 됨

(ㄴ) 경제상 이익에는 금전, 유가증권, 물품, 용역을 비롯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됨

(ㄷ) 계열회사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도 포함됨

(ㄹ) 이익제공 강요에는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여 소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행위도 포함됨

3) 판매목표 강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① 대상 행위

- (ㄱ)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판매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대상이 되며, 대상상품 또는 용역은 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것이어야 함
- (ㄴ) 판매목표 강제는 대리점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체결 후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됨

4) 불이익 제공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당해 행위를 할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 여부 판단

① 대상 행위

- (ㄱ)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거래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당초부터 설정하였거나 기존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말함. 거래조건에는 각종 구속사항, 저가매입 또는 고가판매, 가격(수수료 등 포함) 조건, 대금지급방법 및 시기, 반품, 제품검사방법, 계약해지 조건 등 모든 조건이 포함됨

- (ㄴ) 거래상대방에게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거래조건을 불이행함은 물론 거래관계에 있어 사실행위를 강요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함. 불이익제공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 등을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음. 다만, 불이익이 금전상의 손해인 경우에는 법률상 책임 있는 손해의 존재는 물론 그 범위(손해액)까지 명확하게 확정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절차에 의해 이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거래상 지위남용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5)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① 대상 행위

(ㄱ)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서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가 대상이 됨

01 해당사례

사실
관계

포스코케미칼은 2017년 8월부터 세강산업과 포스코의 광양제철소 화성공장 설비 배관용접작업에 대한 연간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지속해오다 2019년 7월, 계약기간이 6개월 남아 있음에도 해당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관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거래를 종료함. 세강산업은 포스코케미칼의 로재정비 부문의 협력사 중 하나로 포스코케미칼이 포스코로부터 위탁 받은 광양제철소 내화물 보수작업과 관련된 부대용역, 화성공장 설비 배관용역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임 공정위는 포스코케미칼이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물량을 이관한 행위는 세강산업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함
(의결일: 2022.7.10)

공정위
판단

사실
관계

쿠팡(주)는 자신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마진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경쟁 온라인몰에서 일시적 할인판매 등으로 판매 가격이 하락하면 총 101개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였음 쿠팡(주)의 행위는 납품업자와 경쟁 온라인몰과의 거래내용을 제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납품업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고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한 경영간섭행위에 해당하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억 9천 7백만원을 부과함(의결일: 2021.9.23)

공정위
판단

사실
관계

(주)와이케이건기는 2018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미니 굴삭기 렌탈 업무 취급 여부에 따라 대리점을 차별하여, 렌탈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대리점 6곳에 판매 대수 당 위탁수수료 100,000원을 삽감하여 지급함

공정위
판단

렌탈 업무 취급 대리점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주)와이케이건기의 사업상 재량사항에 해당하나, 렌탈 업무를 취급하지 않은 6개 대리점에 대해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위탁수수료를 감액한 것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과정에서 대리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부과함(의결일: 2023.4.3)

02

Q&A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상대방이 경쟁자 또는 사업자가 아니라 일반 소비자인 경우,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상대방이 경쟁자 또는 사업자가 아니라 일반 소비자인 경우에는 단순히 거래관계에서 문제될 수 있는 행태 자체가 아니라, 널리 거래질서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라는 측면에서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 사업자의 불이익 제공행위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유사한 위반행위 유형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등 거래질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대리점이 기 거래실적을 감안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분기 판매 계획을 초과해서 구매한 경우 초과량에 대하여 가격을 할인해 주면 판매목표 강제행위에 해당하나요?



계획량을 초과하지 못했을 경우,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계획량을 초과했을 경우 일정한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판매 목표 달성을 강제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나, 판매계획량은 대리점이 전 분기 실적 등을 감안하여 구매하겠다고 요청하는 양을 기준으로

상호 결정한 것이고, 또한 대리점에게 정상적인 마진을 보상해준 상태에서 순수하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시행된 것이라면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업무상 주의해야 할 행위



- ✓ 구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구입을 요청하거나 일방적으로 밀어내기 하는 행위
- ✓ 독과점적 지위의 강화, 판매지역 제한, 밀어내기 등 공정거래법상 위법, 부당한 행위를 달성할 목적으로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
- ✓ 거래상대방과 제품 판매,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설정하는 행위
- ✓ 경영지도라는 명목 하에 생산품목, 시설규모, 생산량, 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과도한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 ✓ 납품업자가 타 거래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행위

라.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함과 동시에 구매, 유통경로의 독점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곤란하게 한다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후생의 저하를 초래하게 되므로 법에 위반

구속조건부거래는 1) 배타조건부거래, 2)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으로 구분됨

1) 배타조건부 거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① 대상 행위

(ㄱ)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라 함은 현재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포함함

(ㄴ) 배타조건의 내용에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직접적으로 경쟁사업자 와의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공급하는 품목에 대한 경쟁품목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을 포함함

(ㄷ) 배타조건의 형식에는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경쟁사업자 와 거래시에는 불이익이 수반됨으로써 사실상 구속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됨. 위반시 거래 중단이나 공급량 감소, 채권회수, 판매장려금 지급중지 등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당해 배타조건이 사실상 구속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음

2)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① 대상 행위

(ㄱ) 거래상대방의 판매지역을 구속하는 행위가 대상이 되며, 판매지역 구속에는 그 구속의 정도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판매책임지역

을 설정할 뿐 그 지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책임지역제(또는 판매 거점제), 판매지역을 한정하지만 복수판매자를 허용하는 개방 지역제한제(Open territory), 거래상대방의 판매지역을 할당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 제재함으로써 이를 강제하는 엄격한 지역제한제(Closed territory)로 구분할 수 있음

- (ㄴ) 거래상대방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도 대상이 되며, 거래상대방의 영업대상 또는 거래처를 제한하는 행위임. 예를 들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대리점(또는 판매업자)을 가정용 대리점과 업소용 대리점으로 구분하여 서로 상대의 영역을 넘지 못하도록 하거나 대리점이 거래할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를 지정하는 행위 등이 해당됨
- (ㄷ) 상기의 구속조건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나 거래지역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의 요구나 당사자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을 포함함. 조건은 그 형태나 명칭을 묻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구속을 받는 것으로 충분함

01 해당사례

사실
관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국내 누진다초점렌즈 시장점유율이 약 40%로 업계 1위인 호야렌즈는 2017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대리점이 할인 판매점에 누진다초점렌즈를 납품하지 못하도록 막고, 대리점의 할인판매점 공급 금지를 위해 모든 대리점에 공문·전화로 ‘불응하면 출하 정지 등 조치가 가능하다’고 통지했고 할인판매점에서 직접 렌즈를 구매해 제품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리점의 할인판매점 거래 여부를 감시함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및 제29조 제1항(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적용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700만원을 부과함(의결일: 2021.11.15)

사실
관계

크라운제과는 자신의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과 거래함에 있어서 계약서 상에 대리점이 관할 영업구역 외에서 영업을 할 때, 피심인의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대리점이 관할 영업구역을 이탈하여 거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함

공정위
판단

크라운제과는 자신의 대리점과 거래함에 있어 대리점의 거래지역에 대하여 행정구역 기준, 일정한 판매지역을 할당해 주고 해당 판매지역 내의 소매점등과 거래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즉, 대리점이 크라운제과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해당 판매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에 판매할 경우 사전에 크라운제과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리점이 피심인에게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판매지역 이외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피심인과 대리점 간에 체결한 거래약정에 따라 피심인이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이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로 법 위반에 해당함(의결일: 2010.2.8)



제조업체가 대리점과 계약 시 계약서상에 판매 및 영업지역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법 위반이 되는지요?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서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됨. 단, 지역의 판매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는 특정지역에 대한 판매책임제, 판매거점제 등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지 않음



대리점에게 판매지역을 일정한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가 되는지요?



지역제한의 경우 구속성의 정도에 따라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즉, 지역구속성이 약한 단순한 지역책임제나 판매거점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됨(제조업자가 대리점에 대해 일정한 지역을 주된 판매지역으로 설정할 뿐 지역 외의 판매도 허용되는 경우). 그러나 지역구속성이 강한 지역제한은 문제가 됨. 예컨대 해당제품의 시장이 독과점 상태에 있고, 지역제한이 이를 심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지역제한을 어겼을 때 공급중단, 계약해지 등 제재수단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됨

업무상 주의해야 할 행위



- ✓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 우리 회사와 거래하는 거래 상대방에 대해 전속거래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 거래상대방에 대해 경쟁사 제품·용역의 취급을 제한·금지하는 행위
- ✓ 대리점 등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판매지역을 제한하고, 지역제한 위반시 공급중단, 계약해지 등의 제재를 가하는 행위
- ✓ 지역제한이 재판매가격 유지, 가격차별 등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행위
- ✓ 거래상대방에게 특정사업자와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3.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3배 배상제 대상]

가. 부당한 공동행위 정의

제 40 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 · 협정 · 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당한 공동행위(Cartel, 담합)란 부당하게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행위를 말함

1)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요건

다음의 3가지 요소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되어 법에 위반됨

① 둘 이상의 사업자

(ㄱ) 둘 이상의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

② 합의의 존재

(ㄱ) 사업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는 계약·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함

(ㄴ) 이해한다는 눈짓만으로도 합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가 없이 진의(眞意) 아닌 의사표시에 의해 합의한 경우도 부당공동행위로 인정됨

(ㄷ) 법원은 합의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으며, 합의가 존재하는 이상 그 합의 내용에 따른 실행행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카르텔이 성립됨

③ 경쟁제한성

(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사업자 간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사업자가 가격, 수량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야 함

나. 부당 공동행위 유형

1) 가격의 결정·유지·변경

①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ㄱ) 공동으로 가격 인상·인하율을 결정하거나 일정수준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 (ㄴ) 경쟁 건설기계업체와 특정제품에 대해 가격인상을 합의하는 행위
- (ㄷ) 할인율, 이윤율 등 가격 구성요소의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거나 일률적인 원가 계산 방법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격을 동일하게 하는 행위
- (ㄹ) 과다경쟁 방지, 고시가격 준수 등을 이유로 할인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②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ㄱ) 동일한 원가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동일한 원가인상 요인이 발생하여 동일한 수준의 가격인상을 한 경우

③ 법률 등에서 가격수준을 직접 정하고 있는 경우

2) 상품·용역의 거래조건이나 대금지급 조건을 공동으로 정하는 행위(거래조건 설정)

①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ㄱ) 경쟁사업자와 공동으로 대금지급 방법을 제한하거나, 상품 인도 일부터 대금지급 기일까지의 기간이나 어음의 만기일 등을 정하는 행위
- (ㄴ) 경쟁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등의 공급방식, 운송조건 등을 제한하거나, A/S의 기간, 내용, 방법 등을 제한하는 행위
- (ㄷ) 경쟁사업자와 공동으로 공급자의 가격인상 요구를 거부하기로 하거나 특정 공급자에게서만 구매하기로 하는 행위

②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ㄱ) 거래조건이나 대금지급 조건으로 동일화함으로써 증진되는 소비자의 이익이 사업자 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월등히 큰

경우

- (ㄴ) 법령 등에 따라 일정한 거래방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행위(거래제한)

①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ㄱ) 사업자별로 상품의 생산량, 출고량 등을 할당하거나 용역조건을 제한하는 등 공동으로 그 수준을 결정하는 행위
- (ㄴ) 최고·최저 생산량, 필요 재고량 등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 간에 생산량 등 수량의 수준을 정하는 행위
- (ㄷ) 가동률, 가동시간, 시설의 신·증설 및 개체 등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출고·수송 수량을 제한하는 행위

②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ㄱ) 원재료 공동구매로 원가를 절감함으로써 효율성 증대 및 소비자 이익을 증진시키는 경우
- (ㄴ) 제품 수송차량을 공동 활용하여 원가절감 및 소비자 이익을 증진시키는 경우

4)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시장분할)

①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ㄱ) 공동으로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거나 거래처 또는 거래 지역을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 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공동으로 특정한 사업자를 우량 업자 또는 불량업자로 구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설비제한

①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ㄱ) 사업자별 생산·판매시설 등 설비의 규모를 할당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
- (ㄴ) 공동으로 설비의 신·증설 또는 개체를 제한하거나 폐기하도록 하

는 행위

- (ㄷ) 공동으로 장비의 도입자금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설비의 신·증설 또는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의 종류·규격 제한협정

①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ㄱ) 공동으로 규격 또는 종류별로 생산품목을 할당하거나 생산품목을 결정하는 등 사업영역을 설정하는 행위
- (ㄴ) 거래승인 거부, 거래시기 제한 등 신상품의 출고를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 공동 관리

①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ㄱ)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판매, 거래, 원자재의 구매, 기타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는 행위
- (ㄴ) 가격의 공동결정이나 판매량 제한 등 경쟁제한적 효과를 목적으로 경쟁사업자들 간에 생산, 판매, 구매 등을 담당하는 공동회사를 설립하는 행위

8) 입찰담합

‘입찰담합’이란 입찰자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단독 입찰인 것을 그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쟁자가 있는 것처럼 제3자를 시켜 형식상 입찰을 하게 하는 소위 들러리를 세운다거나, 입찰자들끼리 특정한 입찰자로 하여금 낙찰 받게 하거나 당해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들 상호 간에 가격경쟁을 하는 경우 당연히 예상되는 적정한 가격을 저지하고 특정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입찰실시자에게 그 상당의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올 정도의 가격으로 낙찰되도록 하기 위한 사전협정으로서 그 어느 경우이건 낙찰자가 된 입찰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경우를 말함

9)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부당지원행위)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함

※ 정보교환 담합 행위 규율(공정거래법 제40조)

구 공정거래법 (시행 2021.05.20. 법률 제 17290 호, 2020.05.19. 일부 개정)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 2021.12.30. 법률 제 17799 호, 2020.12.29. 전부개정)
<p>제 19 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p> <p>① 사업자는 계약 · 협정 ·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p> <p>9. 제 1 호부터 제 8 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p> <p>⑤ 2 이상의 사업자가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 · 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 · 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p>	<p>제 40 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p> <p>① 사업자는 계약 · 협정 · 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9. 그 밖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 · 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p> <p>⑤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p> <p>1. 해당 거래분야, 상품 · 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 · 양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p> <p>2. 제 1 항 각 호의 행위(제 9 호의 행위 종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제외한다)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때</p>

☞ 시사점

- 개정 시행령은 출고량, 판매량뿐만 아니라, 거래조건, 대금 및

대가의 지급조건 등도 정보교환담합의 대상이 되는 정보라고 규정하여 규정 대상을 넓힘. 사업자들 간에 시장동향 파악을 위해 출고량, 판매량 등의 정보가 빈번하게 교환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정보교환이(실질적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고 할 때) 위법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통상 교환되는 정보가 가격과 같은 전략적 정보에 해당하고, 시장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개별기업에 대한 정보에 해당하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일수록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개정된 시행령을 통하여 정보교환담합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구체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어 금지되는 정보교환담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 사건마다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다. 공동행위의 예외적 허용

- 1) 공동행위 중 산업정책적 고려의 필요성이 있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 인가를 통해 이를 법위반으로 보지 않음
- 2) 공동행위가 다음의 목적을 위해 행해지는 경우로서 공정위 인가를 받은 경우는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음(공정거래법 제40조 2항)
 - ①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 ② 연구·기술개발
 - ③ 거래조건의 합리화
 - ④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라.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1) 시정조치(공정거래법 제42조)

공동행위 행위자에 대한 당해 행위 중지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2) 과징금(공정거래법 제43조, 시행령 [별표 6])

공동행위 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매출액의 20% 한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40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함

☞ 용어 정리 – 관련 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의미함

3) 벌칙(공정거래법 제124조)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마. 자진신고자 감경제도(Leniency Program)

부당한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가 그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과징금 또는 시정조치, 고발을 면제 또는 감경 해 주는 제도(공정거래법 제44조, 시행령 제51조)

- 1) 리니언시(Leniency)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기업이 그 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 제재의 수준을 감면하는 제도를 말함
- 2) 첫번째 자진신고자(1순위)는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완전 면제받게 되며, 두번째 신고자(2순위)는 과징금(50% 감경) 및 시정조치를 감경
- 3)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면 조치를 받고자 하는자는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에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01 해당사례

사실
관계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가 발주한 광양항과 포항항의 항만하역용역 입찰과정에서 6개 업체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전에 업체별 물량과 투찰가, 낙찰 순위 등을 합의한 뒤에 이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남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물량 배분 담합 및 입찰 담합 금지 조항을 적용하여, 6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5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함(의결일: 2022.6.14)

사실
관계

공정위는 백신 제조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녹십자와 한국백신판매 등 6개 백신총판, 에이치원메디 등 25개 도매상을 포함해 32개 사업자들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인플루엔자, 간염, 결핵, 파상풍 등 총 24개 품목에 대해 입찰 담합한 것으로 드러남. 이들은 낙찰 과정에서 번갈아가며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하고 써낼 가격을 공유하고 147건을 낙찰 받음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독감이나 간염 등 국가 예방접종사업용 백신 입찰에서 담합한 32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9억원을 부과하기로 함(의결일: 2023.7.20)

신규사례

사실
관계

피심인들은 의류 및 학생복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경기도 구리지역 중고등학교의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음. 피심인들은 가격경쟁을 회피하고 유찰 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음.

공정위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여 입찰에 참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음. 피심인들의 행위는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였음. (의결일: 2025.02.06)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온 경우를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도 있나요?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



사업자들끼리 담합하여 상품의 종류 및 규격을 결정하는 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나요?



사업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자신들이 생산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종류 및 규격을 결정한다면, 이는 사업자들 독자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을 서로 합의하여 결정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위법임



부당한공동행위(담합)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담합을 판단하는 기준을 아래의 2가지로 구분이 가능

①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의 존재

-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인 합의까지 포함함
- 당초부터 하의에 따를 의사가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해 합의한 경우도 부당공동행위로 인정됨. 합의가 존재하는 이상 그 합의 내용에 따른 실행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카르텔이 성립됨

② 카르텔 성립요건으로서 ‘경쟁제한성’이 있어야 함

-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서 시장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함



다른 사업자를 따라서 가격이나 판매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도 공동행위에 해당하나요?



사업자간에 직접적인 의사교환 등을 통한 전면적인 합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경쟁사업자의 행동을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으로부터 경쟁사업자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의식적 동조행위라 하며, 이 경우 제반 정황으로 보아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되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됨



경쟁업체 전원이 담합하여 입찰을 기피하거나 유찰시킨 후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나요?



경쟁업체들간 합의에 의해 경쟁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입찰담합에 해당됨

업무상 주의해야 할 행위



- ✓ 경쟁사업자와의 모임은 그 형태와 구체적 논의내용,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참가사실만으로도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추정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으로, 경쟁사업자와의 만남은 자제해야 함
- ✓ 업계모임이 공정거래법규를 위배하거나 위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컴플라이언스 전담부서에 보고하여야 함

4. 부당한 지원행위(내부거래)

가. 부당한 지원행위 정의

제 45 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사업자 간, 특히 계열회사 간의 지원행위는 현재기업의 퇴출을 막거나 경쟁 기업의 압박을 통해 경제력 집중의 유지 및 확장 수단이 되고 있으며, 또한 피지원 기업이 위치한 개별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침해하게 되므로 공정 거래법에 위반됨

1) ‘부당하게’ 의미

‘부당하게’는 ①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 집중의 효과(경제력집중)와 ②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경쟁저해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2)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지원객체가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 · 유지 또는 강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지원객체가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
- ④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퇴출이나 타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저해되는 경우
- ⑤ 관련법령을 면탈 또는 회피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 경쟁수단 또는 절차를 통해 지원행위가 이루어지고,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부당한 지원행위 유형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헐값제공 또는 고가매입)

① 주요내용

- (ㄱ) 자금, 자산, 상품용역, 인력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 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또는 특수관계인과 현금 기타 금융상 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함
- (ㄴ)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 정상조건과 약간의 차이만 있어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가 성립
- (ㄷ) 특수관계인과 현금 기타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도 해당함

2) 사업기회제공

① 주요내용

- (ㄱ)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함(생산위탁, 판매위탁, 구매위탁, 지원업무 위탁, IT, 물류, 광고, 건물관리 등)
- (ㄴ)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로 거래조건 등이 공정하더라도 자신이나 그 자회사가 수행하던 사업을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가진 회사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경우 규제대상이 되며, 비용절감 혹은 효율성 제고를 위한 Outsourcing이 사업기회의 유용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

② 법규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 (ㄱ) 회사가 당해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 (ㄴ)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 (ㄷ)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

3)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① 주요내용

- (ㄱ) 거래상대방 선정이나 계약체결과정에서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또는 거래조건 등 당해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 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하는 등 당해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함
- (ㄴ) 거래규모가 상당한 경우 행위객체의 사업능력 등을 외부업체와 비교할 때 외부업체가 우월함에도 대주주가 일정 지분을 갖는 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함임

※ 안전지대 관련 사항

- (ㄱ) 거래상대방간 상품·용역의 연간 거래총액(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으로 함)이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2미만이고,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
- (ㄴ) 평균매출액: 직전 3개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사업연도 초일 기준으로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 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평균매출액으로 봄

다. 부당한 내부거래 제재

1) 시정조치(공정거래법 제49조)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금지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중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

2) 과징금(공정거래법 제43조, 시행령 [별표 6])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여부를 결정.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기본 과징금을 산정하고,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1차 조정)과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등에 따른 조정(2차 조정)후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위반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부과 과징금을 결정하게 됨. 내부거래시 공정위는 최대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10 범위내로 과징금을 부과함

3) 형사 제재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형사 제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의한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소가 제기될 수 있음

※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p>Ⓐ 중소기업들이 합하여 1/2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는 시장에 참여하는 계열회사에 대하여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금·자산·상품·용역·인력지원행위를 하여 해당 계열회사가 시장점유율 5% 이상이 되거나 시장점유율 기준 3 위 이내의 사업자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p> <p>Ⓑ 지원객체가 지원받은 경제상 이익으로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경쟁사업자보다 상당기간 낮게 설정하여 경쟁사업자가 해당시장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p> <p>Ⓒ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분야에서 기업집단 외부의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가 진입하기 힘들어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지원객체가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별다른 위험부담 없이 안정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함으로써 사업기반이 공고하게 되는 반면, 해당 기업집단 외부의 다른 경쟁사업자들은 지원주체와 같은 대형 거래처와 거래할 기회가 봉쇄되는 경우</p> <p>Ⓓ 지원객체가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자금력, 기술력, 판매력, 제품 이미지 개선 등 사업능력이 증대되어 사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서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유리하게 되는 경우</p> <p>Ⓔ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를 통해 지원객체가 사업기반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재무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강화하게 되는 경우</p> <p>Ⓕ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자기의 계열회사에 대하여 지원행위를 함으로써 해당계열회사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신규진입이나 퇴출이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p>	<p>Ⓐ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가 기업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대상회사나 사업부문에 대하여 손실분담을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경우</p> <p>Ⓑ 개별 지원행위 또는 일련의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1 억원 이하로서 공정거래 저해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p> <p>Ⓒ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 7 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거나, 사회적 기업에게 각종 용역을 위탁하거나, 사회적 기업에게 시설·설비를 무상 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경우</p>

01 해당사례

사실
관계

기업집단 ‘경동’ 소속 경동원은 계열회사인 경동나비엔에게 외장형 순환펌프의 거래가격을 매출원가보다 낮은 수준, 심지어 변동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납품함

공정위
판단

이러한 경동원의 저가 거래로 인해 경동나비엔의 외장형 순환펌프 및 기름보일러 시장에서 경쟁상 지위가 유지, 강화, 관련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상승하는 등 공정거래 저해 효과가 나타남.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6억 8천만원을 부과함(경동원 24억 원, 경동나비엔 12억원) (의결일: 2022.5.18)

사실
관계

기업집단 삼성의 계열회사인 삼성전자 등 4개사는 2013년 4월부터 지속적으로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면서,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의 15% 추가 지급, 물가/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의 계약구조 설정을 통해 웰스토리가 고이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

공정위
판단

약 9년간의 지원행위를 통해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웰스토리에게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으며, 웰스토리는 내부거래를 통해 취득한 안정적 수익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배당을 실시함으로써 총수일 가의 핵심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수행함. 또한 웰스토리는 이 사건 지원행위를 발판으로 단체 급식 경쟁입찰에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독립 급식업체의 생존을 위협했고, 지원행위에 의해 웰스토리의 사업기반과 재무상태가 인위적으로 유지, 강화됨으로써 웰스토리의 경쟁 여건이 다른 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하게 제고되었음.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 및 미래전략실장을 고발 조치함(의결일: 2021.6.24)

사실
관계

2005년말 (구)엘에스전선은 총수일가와 공동출자하여 엘에스글로벌인 코퍼레이티드를 설립하고, 다수 계열사가 핵심 품목인 전기동을 구매 또는 판매하면서 이 회사를 거치도록 하는 거래 구조를 설계한 뒤 총수일가의 승인을 받음.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엘에스니꼬동제련은 자신이 생산한 전기동을 판매 시에, 엘에스전선은 수입전기동을 트레이더로부터 구매 시에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중간 유통단계로 추가하여 통행세를 지급해옴. 이 과정에서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는 전기동 중계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장의 지위를 확보했고, 부당이익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IT)서비스 분야로까지 사업을 확장했으며, 총수일가도 막대한 사익을 실현함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구)엘에스전선[현(現) (주)엘에스]이 직접 그리고 엘에스니꼬동제련(주)에게 지시하여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주)를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함(의결일: 2018.9.11)

사실
관계

롯데피에스넷은 기존의 직거래방식과는 달리, 2009년 9월부터 2012년 7월 현재까지 ATM기를 제조사인 네오아이씨피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인 롯데알미늄((구)롯데기공)을 통하여 구매하였음

공정위
판단

피심인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인 롯데알미늄 주식회사를 중간 유통단계로 하여 간접 구매하면서 직접 구매할 때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는 방법으로 롯데알미늄 주식회사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롯데알미늄 주식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였으며,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649백만원)을 부과함(의결일: 2012.9.13)

**사실
관계**

기업진단 부영 소속 (구)대화기건은 (구)부영엔터테인먼트 주식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되는 가치 등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조건인 주당 5만원의 가격으로 총액 45억원의 신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해 (구)부영엔터테인먼트를 지원함. 당시, (구)부영엔터테인먼트의 가치는 지속적인 적자로 인한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주당 주식평가 금액이 0원이었음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구)대화기건이 유리한 조건으로 (구)부영엔터테인먼트를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6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함(의결일: 2023.5.17)

**사실
관계**

세아창원특수강은 CTC가 이태성 회장 개인 회사에 인수된 이후인 지난 2016년 1분기부터 2019년 2분기까지 CTC에 정상할인(1kg당 400원)보다 이례적으로 높은 할인(분기당 300톤 이상 구매시 1kg 당 1,000원)을 제공하였고, 이는 CTC만 달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물량 할인 제도를 설계한 것이며, 다른 기업에는 이런 할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음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세아창원특수강이 총수 일가 개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검찰 고발과 함께 3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함(의결일: 2023.10.6)



계열회사 간의 제반거래에 있어서 공정거래법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계열회사 간의 거래에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행위와 부당지원행위가 주로 문제됨. 따라서 계열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계열회사와 차별하여 계열회사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아울러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자금, 자산, 인력 등을 거래하는 방법으로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계열회사에 직원을 파견할 경우 소규모 인원이라 비용 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는지요?



특정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인원을 파견하는 경우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다수 계열회사들이 동시에 특정 계열회사에 인원을 파견한다면 인력을 통한 부당지원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부당지원이 될 수 있음. 따라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비용 정산은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음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적자에 허덕이는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와 거래시 특별한 역할이 없는 해당 계열회사를 거래 중간단계에 포함시켜도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여 거래하면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지하는 부당지원행위 중 ‘통행세 지원행위’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해외 거래처와 계약하면서 역할이 없는 계열회사를 끼워 넣는 행위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유의가 필요함

업무상 주의해야 할 행위



- ✓ 특정사업자에 대해 조달금리보다 저리로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
- ✓ 상장자 주식의 발행가격이 주가추이, 주가전망, 재무구조 등에 비추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특수관계인 등이 인수에 참여하거나 기존 주주인 특수관계인 등이 자기의 지분을 현저히 초과하여 인수하는 경우
- ✓ 원업체에게 공장, 매장, 사무실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임대한 경우
- ✓ 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지원주체가 부담한 경우
- ✓ 인력파견 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충당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한 경우

무역거래



V. 무역거래_ 관련부서: 수출 및 수입업무 담당부서

1. 무역거래 자율준수의 필요성 및 프로그램 운영 목적

UN은 1960년대부터 경제제재 프로그램을 수립하였고, UN 회원국들은 UN이 정한 제재 프로그램을 준수하고 있음. UN 제재 프로그램은 분쟁의 확대를 방지하고, 핵 확산을 줄이며, 테러위협 및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유지되고 있음

두산밥캣은 여러 국가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회사에 적용되는 다양한 경제 제재 조치에 관한 법과 규정, 금수 조치 및 기타 제한 조치를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이러한 제재에는 UN안전보장이사회, 각국 정부 및 정부기관이 외교, 안보, 경제상의 이유 및 국제 조약에 따라 제정한 여러 법과 규정이 포함됨

이러한 경제제재는 수출 금지 국가의 개인 또는 단체 간의 대부분의 거래를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쿠바, 이란, 북한, 시리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도네츠크/루한스크 지역 및 러시아, 베네수엘라, 미얀마 등이 포함됨(이 목록은 국제 정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국제 무역 및 경제제재 위반 시 거래/무역 중지, 자산 동결, 국제 거래 블랙리스트 등재, 교정 프로그램 가동 강제, 평판 훼손, 고객/투자자 이탈 등 회사가 입게 될 수 있는 불이익과 손해가 매우 크기에 국제 무역 및 경제제재 관련 위반사항이 없도록 해야 함

2. 주요 경제제재

가. UN 제재

UN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UN 회원국으로 하여금 특정 대상과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무기금수, 자산동결, 여행금지 등의 조치가 사용됨. UN제재 결의를 위반한 개인이나 조직, 기업을 조사하는 등 회원국으로 하여금 UN제재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있음

나. 대한민국의 경제제재

우리나라는 UN 회원국으로서 국내 입법 및 정책 집행을 통해 UN 제재조치를 이행하고 있음. 주요 관련 법령으로는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테러자금금지법”), 출입국관리법 등이 있음

다. 미국의 경제제재

미국은 국제비상 경제권한법을 포함한 다수 법령과 대통령 행정명령 등에 따라 국가안보나 대외정책 등의 목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적용범위나 제재 수준이 가장 광범위하고,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역외 적용하고 있음. 특정국 전체(예: 쿠바, 이란, 북한)에 대한 포괄적 제재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특정 개인, 단체, 분야에 대한 거래를 표적으로 제재하고 있음. 특히, 미국의 제재대상에 관여된 ‘제3자’를 제재하는 ‘2차 경제제재’는 미국 달러 결제에 필수적인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는 금융제재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으며 당사와 같은 무역 거래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1) 1차 경제제재(primary sanction):

미국인(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모든 법인 및 그 법인의 해외 자회사, 외국 회사의 미국 자회사/지사,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물리적으로 미국에 있는 개인)의 제재 대상과의 거래 제한

2) 2차 경제제재(secondary sanction):

제재대상과 거래한 제3국 개인, 단체,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도 미국인으로 하여금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거래 제한

한편, 외국인간의 거래라도 ►미국인의 관여, ►미국 원산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미국 달러화 사용 등 미국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경제제재 대상 지정 가능

라. EU의 경제제재

EU는 공동 대외안보정책(CFSP: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의 목적인 평화,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및 국제법 수호를 장려하기 위해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음. EU는 UN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며 UN제재를 강화하거나, 필요시 EU의 자체적인 제재를 부과. EU는 미국과 같은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제재를 두고 있지는 않으며, 무기금수, 자산동결, 여행금지(비자금지) 등이 조치됨. EU의 제재는 EU 관할권 내 영토·국민의 행위 대해서만 적용

마. 전략물자(Strategic Goods) 거래 제한 국제 협정 준수

전략물자란 대량살상무기, 테러 등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나 기술을 의미하며, 포괄적으로 품목 자체가 직접적으로 대량살상무기 등에 사용되지는 않아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무기 제작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들을 이중용도품목(Dual-use goods)라고 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

[비확산 조약과 국제수출통제체제]

구분	통제대상 물자 및 기술	회원국	발족년도	한국가입
핵공급국그룹(NSG)	핵무기(원자력전용 및 이중용도 품목·기술)	48 개국	1978년	1995년
호주그룹(AG)	생화학무기(생화학물질 및 이중용도 품목·기술)	43 개국	1985년	1996년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미사일 및 운반체(미사일 및 이중용도 품목·기술)	35 개국	1987년	2001년
바세나르 채제(WA)	재래식 무기(군용물자 및 이중용도 품목·기술)	42 개국	1996년	1996년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을 위해 사전에 ▶정부로부터 허가를 득하거나(대한민국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선스를 각 국 정부로부터 취득하여(미국, EU의 경우) 수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통제하고 있음

3. 적용범위

- 가. 두산밥캣의 모든 구성원은 두산밥캣이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경제제재 법령을 사전에 파악하고 엄격히 준수하여야 함. 이는 근무장소, 역할, 지위, 고용형태 (full-time, part-time)을 막론하는 두산밥캣 그룹 소속의 모든 임직원에게 해당됨
- 나. 두산밥캣과 거래하거나, 두산밥캣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제3자 또한 무역거래 프로그램의 준수 의무가 있음

4. 기본원칙

- 가. 경제제재의 통상적인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와의 거래는 금지됨
 - 1) 대한민국의 정부 및 기관이 제재 대상자로 지정한 자
 - 2) 미국 정부가 지정한 제재 대상 국가 및 개인(SDN, Specially Designated Nations)
 - 3) EU가 지정한 경제제재 대상자
 - 4) 기타 정부/국제기구가 제재 대상자로 지정, 공표한 개인 또는 기업, 단체
- 나. 경제제재에 대한 검토는 거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적용되어야 함. 따라서 경제제재 위반 위험이 없다고 판정되는 경우에 한해 거래를 진행하여야 함
- 다. 경제제재와 관련한 사항은 반드시 보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5. 업무 시 준수사항

임직원들이 무역거래를 진행할 때는 다음 두가지 관점에서 고려가 필요함

가. 고려사항

- 1) 거래하고자 하는 거래상대방은 제재 대상인가요?
- 2) 거래하고자 하는 물품은 거래 불가 품목인가요?

나. 거래상대방 관점의 검토

1) 검토 시점

- ①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규 등록을 검토하는 경우
- ② 거래상대방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2) 검토 내용

- ① 거래상대방의 국적이 거래를 할 수 없는 국가인지 여부
-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의 거래상대방 이더라도, 개인/회사가 거래 금지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③ 거래상대방과 관련한 주요주주(개인/회사)가 거래금지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검토 방법

① 거래상대방의 국적이 아래 URL에서 거래를 제한하는 국가인지 확인

- (ㄱ) US: <https://ofac.treasury.gov/sanctions-programs-and-country-information>
(ㄴ) EU: <https://www.sanctionsmap.eu/#/main>
(ㄷ) KR: <https://sanction.kosti.or.kr/home/nationHomeIndex.do>

② 거래상대방(개인/집단)을 아래 URL을 통해 검색하시어 거래가 제한된 개인 또는 집단인지 확인

- (ㄱ) UN: <https://scsanctions.un.org/search/>
- (ㄴ) EU: <https://sanctionssearch.ofac.treas.gov/>
- (ㄷ) KR: 무역안보관리원 검색 및 외교부 대북독자제재 리스트 확인
 - <https://www.yestrade.go.kr/>에서 ‘우려거래자 검색’ 서비스 사용
 - https://www.mofa.go.kr/www/wpge/m_25834/contents.do
- (ㄹ) EU: <https://www.sanctionsmap.eu/#/main>

※ 검색하는 거래상대방의 명칭은 반드시 공식적인 명칭(여권에 기재된 성명,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명칭 등)이어야 함

- ③ ①, ②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거래검토를 중단하고, 반드시 주관부서(CP팀)와 논의
- ④ 새로운 거래상대방(딜러 등)을 검토할 때 전담부서(CP팀)은 Due Diligence Questionnaires (DDQ)를 거래상대방에게 작성하도록 하고 위험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

※ 검증 과정에서, 추가적인 확인을 위해 세부 사항(여권사본, 사업자 등록증, 무역거래 허가 증빙 등)이 요청될 수 있음

다. 거래 품목 관점의 검토

1) 검토 시점

- ① 새로운 부품을 ERP의 Item Master에 등록하기 전
- ② 전담부서(CP팀)에서 전략물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③ 관세청 등 정부기관에서 전략물자 판정서를 요청하는 경우

2) 검토 내용

- ① 해당 품목의 세번부호가 적절하게 제대로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
- ② 해당 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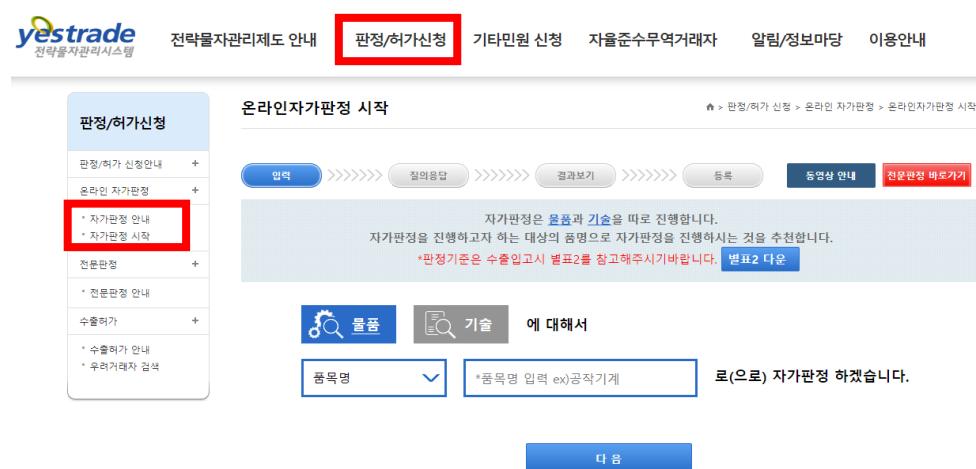
3) 검토 방법

※ 품목 세번부호 부여 적절성 검토

- ① 새로운 품목(완성차, 부품)을 ERP 시스템에 등록할 때 임의의 세번부호로의 등록을 지양하고, 관세법령정보포털의 세번·상품 검색 등을 통해 품목의 성질과 특성에 부합하는 세번부호로 부여받아야 함.
(관세법령정보 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
- ② ①의 방법으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수출입 통관 관리 부서 또는 회사와 거래하는 관세사무소 등 전문가를 통해 세번부호가 제대로 부여되어 있는지 확인

4) 전략물자 해당 여부 검토 방법

- ① 전략물자관리시스템(<https://yestrade.go.kr>)에 접속
- ② 판정/허가신청> 온라인 자가판정> 자가판정 시작을 클릭하시어 온라인 자가판정 시스템 접속



- ③ 드롭다운 메뉴를 ‘HSK 번호’로 변경 후 확인하고자 하는 제품의 세번부호(10자리 숫자)를 입력

- ④ 아래와 같이 해당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하라는 체크리스트가 나오는 경우, 전략물자 또는 이중용도 품목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품목임

- ⑤ 전략물자 또는 이중용도 품목으로 의심되는 경우, 아래 순서로 조치
- (ㄱ) 전담부서(CPT팀)에 전략물자 판정 문의
 - (ㄴ) 전략물자 판정 요청서와 체크리스트 작성 및 관련 자료 파일 송부
 - ✓ 전략물자 판정 요청서
 - ✓ 체크리스트(전담부서에 제공)
 - ✓ 품목의 재질, 성능, 크기 등을 알 수 있는 카탈로그, 도면 등의

자료(이 자료는 무역안보관리원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공되는 자료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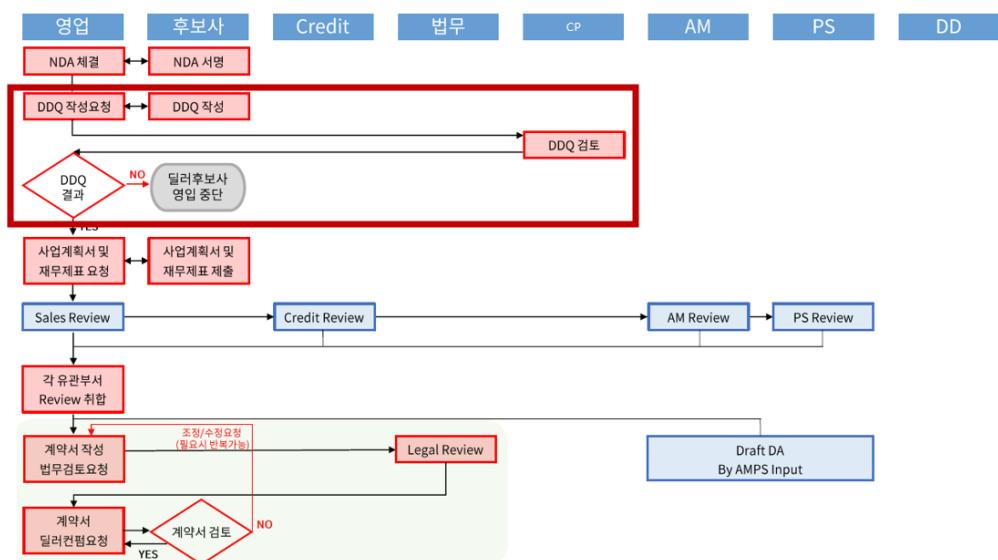
- (ㄷ) 주관부서는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전략물자 자가판정서 작성
- (ㄹ)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수 없거나 응답이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역안보관리원을 통해 전문판정을 의뢰(이 경우 영업일 기준 25일 소요)

6. 업무 상 주의사항

가. 거래상대방을 등록하기 전 Due Diligence Questionnaires를 작성 후 확인

- 1) 거래상대방과 거래 전, 거래상대방이 제재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회사는 우려거래자와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추진하는 경우 내부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수출품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등의 수출허가(상황허가)가 필요함.

[참고: 신규 dealer screening 절차]



나. 우려거래 징후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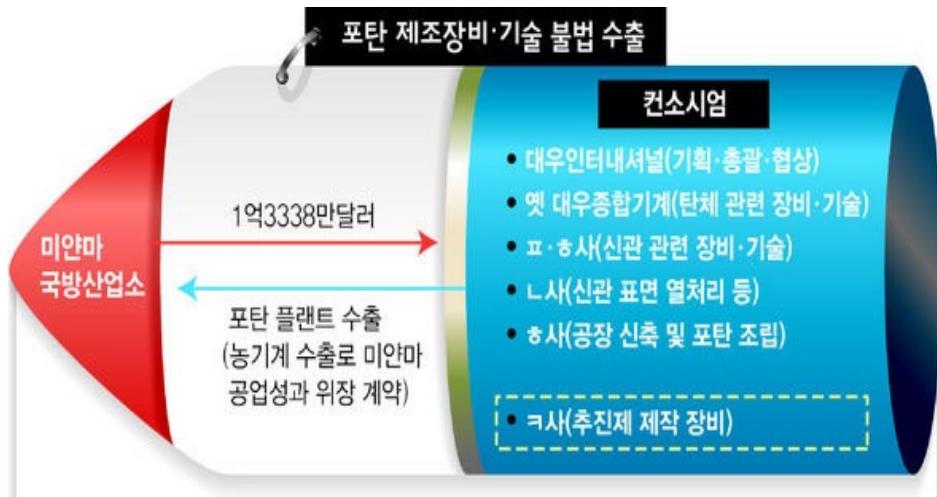
거래상대방, 구매자, 최종 수하인 또는 최종 사용자가 다음과 같은 행동으로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

을 알았거나 그러한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

- 1) 구매자가 해당 물품 등의 최종 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 2)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 등이 최종사용자의 사업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3)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 등이 수입국가의 기술수준과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경우
- 4)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 등이 활용될 분야의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 5)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 등의 수출을 요구하는 경우
- 6)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 등에 대한 설치·보수 또는 교육훈련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 7) 해당 물품 등의 최종 수하인이 운송업자인 경우
- 8) 해당 물품 등에 대한 가격 및 지불 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 9) 특별한 이유 없이 해당 물품 등의 납기일이 통상적인 기간을 벗어난 경우
- 10) 해당 물품 등의 수송경로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
- 11) 해당 물품 등의 수입국내 사용 또는 재수출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12) 해당 물품 등에 대한 정보 또는 최종목적지 등에 대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

7. 관련 사례

가. 대우종합기계(邱 두산공작기계, 現 DN솔루션즈) 미얀마 불법 수출(2006)



1) 사건 개요

미얀마 국방연구소에 포탄 생산설비(공작기계)와 기술(제작도면)을 불법 수출하여 대외무역법을 위반함

약 USD 133M(한화 1,400억원)에 달하는 계약 규모였으며 일반 산업용기계를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대금을 직원 개인 계좌로 수령하였음

2) 시사점

구 계열사에서 발생한 전략물자 관련 사건이며, 당시 임직원이 구속된 사건임. 미얀마는 당시 방산물자 수출 요주의 국가였으며 이들은 수출품을 속여 (농기계 부품 제작을 위한 공작기계)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 또는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불법으로 수출하였음

3) 당부사항

미얀마는 현재(2023년 11월) 미얀마 민주화 운동 탄압 등 인권 침해의 사유로 미얀마 군부 및 군부와 관련된 개인 및 집단은 제재 대상임. 이에 미얀마와 관련한 거래를 담당하는 부서는 업무 시 주의를 요함.

나. ZTE의 대 북한-이란 제재 위반(2017)

1) 사건 개요

중국 최대 통신장비기업인 ZTE는 미국의 대 북한-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USD 1.2B(KRW 1조 4천억)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함

ZTE는 퀄컴, 마이크론테크놀러지 등 미국 기업으로부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대규모로 구입한 후, 북한/이란에 수출하여 미국의 경제제재를 위반하였음. ZTE는 2010년부터 6년 간 미국의 휴대전화 네트워크 장비 USD 32M 어치를 이란 기업에 수출하고, 북한에는 28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음

2) 시사점

ZTE에 미국 정부가 부과한 벌금은 사상 최고액이었으며, 당시 미국 법무부장관은 “미국 정부가 법을 위반하고,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임을 강조

3) 당부사항

UN의 국제제재 외에도 각국 정부는 각 국가의 안보 등의 사유로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있음. 이 중 미국의 경제제재는 위반시 강력한 징벌을 하고 있음. 이란, 쿠바 등 미국과 적대적인 국가에 대한 경제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시민, 미국 국적의 기업 외에도 해외 국적의 개인/기업에도 역외적용을 하고 있음.

다. 3M의 대 이란 제재 위반(2023)

1) 사건 개요

3M은 이란 거래 및 제재 규정을 위반 한 54건의 잠재적 민사 책임에 대한 해결책으로 OFAC과 USD 10M의 벌금에 합의하였음. 3M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두바이의 자회사를 통해 반사 식 번호판 시트를 이란의 법집행 단체가 통제하는 기관에 판매. 특히 미국인 직원이 이란 거래를 지원하여 제재를 위반하였으며, 위반된 거래의 본질을 숨기기 위해 허위 진술, 누락/계약 세부 내용을 변경함

2) 시사점

본 건은 미국의 3M사의 두바이 자회사 3M Gulf를 통해 이란에 제품을 판매하여 미국의 대 이란 경제제재를 위반한 사건임. 3M은 2018년 허가되지

않은 이란 판매 건을 발견하여, OFAC에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하고 관련자를 해고/징계하였으며 수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자진 시정을 하였음

3) 당부 사항

미국의 Sanction program 위반 시 양형 기준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Compliance program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 임. 3M의 경우 OFAC의 조사 당시 3M Gulf에서 Compliance program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3M 본사는 해당 건을 발견한 후 OFAC에 자진 신고하였고, 자진신고 한 부분이 참작되어 양형에 고려되었음. 제대로 운영되는 Compliance program은 혹여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법령 위반 시의 폐널티를 경감할 수 있는 수단임.



회사의 일반적인 거래도 경제제재의 대상인가요?



회사의 일반적인 거래가 경제제재를 제정 및 시행하는 국가나 국제 기구의 제재와 무관하다고 오해할 수 있으나, 이러한 거래들도 경제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제제재 프로그램은 미국에 자회사를 둔 외국 기업 또는 외국 기업 자체가 경제제재를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도 역외적용을 하고 있으며, US달러가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와 거래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제제재 대상은 한번 지정되면 바뀌지 않나요?



경제제재는 단순하거나 일관되지 않습니다. 대상 국가나 법인, 품목 등 적용 대상과 기준 등 그 내용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Donald Trump 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이란 경제제재를 일시적으로 유예한 사례가 있으며, 최근에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EU는 2023년 9월 30일부로 러시아산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2023년 현재 이란은 미국의 경제제재 대상입니다.)



경제제재를 고의로 위반하지 않았다면 정상참작이 될 수 있을까요?



경제제재의 내용을 알지 못했거나, 알고 있더라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경제제재 위반에 대해 고려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대외무역법에 의거하여 미수범, 즉 불법 거래를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위법을 저지른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경제제재를 위반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경제제재 위반자는 국가안보상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관련자 징역, 벌금 등의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23년 11월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는 북한과 이란의 불법 자금세탁을 도운 혐의에 대해 5.5조원 상당의 벌금을 납부할 것을 미국 정부와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바이낸스는 미국 시장에서의 철수를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제재 위반에 따른 처벌은 해당 거래의 금지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거래와 무관한 외환/금융/기타 상품의 거래 등 전방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제제재 관련해서 어떻게 검토를 해야 할까요?

새로운 거래상대방이 생기면 이 거래상대방이 제재 대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 이 거래상대방의 국적이 제재 대상 국가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이란, 알카에다/ISIL 관련 국가, 탈레반 관련 국가,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 수단, 미얀마 등)

그리고 SDN list에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제재 대상 국가와, SDN list에 대한 안내는 05. 업무 시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거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거래상대방의 Due diligence questionnaires를 거래상대방이 작성하게 하시고, 작성된 Due Diligence Questionnaires를 전담부서(CP팀)에게 검토를 의뢰하면 됩니다.

수출 통관 신고 과정에서 세관에서 전략물자 판정서를 요구하는 경우



**A**

대한민국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자는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사전에 수출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수출 신고 시 신고한 세번부호를 기준으로 전략물자 또는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출 신고를 요하는 상황허가 품목인지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판정 기초 자료(도면, 카탈로그, spec sheet 등)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전담부서(CP팀)에 05. 업무시 준수사항> 2) 거래품목 관점의 검토> ① ~ ④ 항에 따라 전략물자 판정을 요청하십시오

**Q**

세번부호는 수출 품목마다 다 검토를 해야 하나요? 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위해 일괄적으로 분류하면 안 되나요?

**A**

세번부호는 수출하는 품목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구분하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를 부여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분류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까지 분류하는 것입니다. 업무 편의 상 일괄적으로 일반적인 세번 부호를 부여하는 경우 통관지연, 관세오납부, 통관법 위반, 과징금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략물자 검토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우리가 어떤 품목을 수출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세번부호가 부과된다면 회사는 전략물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1차적인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전략물자의 수출은 경우에 따라 수출허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세번부호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는 것은 위법 risk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Q**

Sales order를 시스템에서 생성했는데 hold가 되어있어 후속 진행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두산밥캣의 sales order는 실시간으로 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만약 hold가 발생하였다면 확인이 필요한 거래로 판단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의로 hold를 release 하지 마시고, 전담부서(CP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시 점검사항



VI. 업무 시 점검사항_ 관련부서: 전사

1. 공정거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가. 하도급법 관련

항목	구분(법조항)	점검사항
협력업체 선정	하도급법 제2조 (정의)	협력업체가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인가?
		위탁의 내용이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의 범위에 포함되는가?
		계열사와 비계열사를 심사 및 평가할 때 서로 다른 심사기준을 사용하지 않는가?
		협력업체가 연간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인가?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적용대상)
입찰공고	하도급법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공지된 입찰 조건에 따라 당사자를 선정하였는가?
		사전 예정가는 적절하게 결정되었는가?
		경쟁입찰로 계약체결시, 입찰 및 계약조건을 사전고지하였는가?
		경쟁입찰로 선정시, 낙찰된 최저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았는가?
		최초 제시된 낙찰 조건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었는가?
		최저가 입찰 시 최저가 업체가 배제되었는가?
		유찰 기준은 사전에 고지되었는가?
서면 보관	하도급법 제3조의 4 (부당한 특약의 금지)	계약조건이 충분히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가?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였는가?
		특약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하는가?
		특약이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이 있는가?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추가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특약이 있는가?
		민원 처리 및 산업재해 관련 처리 비용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약정을 설정하였는가?
		책임 분담에 관해 원사업자에게만 유리한 편향적인 보상 조항을 설정하였는가?
		고객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무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약정이 있는가?

		불량이 발생한 경우, 원인 규명을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필요 이상의 비밀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하였는가?
대금 결정	하도급법 제 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대금 결정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는가?
		수급사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대금을 결정하였는가?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가?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협력사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가?
		물량증대(다량발주)를 전제로 하여 협력사에게 견적토록 한 후, 실제 소량발주가 되었으나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가?
		단가결정시, 협력사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는가?
		다량발주(물량증대)를 약속하고, 단가결정 후, 그에 못 미치는 발주를 하였는가?
		수의 계약 대상 업체는 사내 구매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낙찰자가 선정되었는가?
		수의 계약시 시장의 정상가 보다 10%이상 단가 인하를 요구하지는 않았는가?
위탁 취소 및 수령 거부	하도급법 제 8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발주취소가 사전에 서면의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고지되었는가?
		발주취소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투입된 비용에 대하여 정산이 이루어졌는가?
		당사가 딜러,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였는가?
		협력사의 납품수령요구에도 불구하고, 보관장소 부족 등 당사의 사유로 수령을 지연하였는가?
		당사에서 일방적으로 납기를 연기통보한 적이 있는가?
부당반품	하도급법 제 10조 (부당반품의 금지)	거래해지, 거래거절, 거래종료 전 협력사에게 새로운 거래처 선택의 기회 등 충분한 유예기간(1개월)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종료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는가?
		당사가 이미 수령한 물품에 대하여 고객의 클레임을 이유로 반품하였는가?

		당사가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 협력사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였는가?
		협력사의 납기, 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납기 지연을 이유로 반품하였는가?
		당사의 생산계획 취소 등 협력사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하였는가?
부당반품	하도급법 제9조 (검사의 기준·방법·시기)	계약서 작성 또는 발주 나가기 전에 검사기준 및 방법을 기재(포함) 또는 협의하였는가?
		목적물 인수를 거부 또는 지연하였는가?
		사전에 합의하여 검사기준·방법·시기를 정한 후에 당사가 일방적으로 합의된 사항을 변경하여 검사에 적용하였는가?
		검사기준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하지 않고 당사가 일방적으로 검사기준을 정하여 불합격 처리하였는가?
		지금까지 적용되던 검사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통상 합격품으로 판정될 수 있었던 제품을 불합격 처리하였는가?
		당초 합의된 검사 기준 및 방법과 다른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는가?
		불량품 발생을 예상하여 대금지급을 유보하였는가?
		수출할 물품제작을 의뢰한 경우, 검사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력사에게 인수증을 교부하였는가?
		물품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협력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는가?
		검사기간이 초과된 후, 불량품이 발생하여 반품시킬 경우, 1:1로 교환하였는가?
하도급대금 감액	하도급법 제11조 (감액금지)	당사가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 납품하지 못한 이유로 단가를 인하하였는가?
		계속적 거래관계 유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는가?
		하도급계약의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내역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감액하였는가?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단가 인하였는가? 대금지급시점의 일반 물가 및 시공에 소요되는 자재가격 등이 계약시점보다 낮아진 것을 이유로 단가를 인하하였는가?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대금을 감액하였는가? 수출용품의 하도급거래에 있어 당사가 환차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당초 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켰는가? 하도급대금을 인하할 경우, 인하사유와 기준을 해당협력사에게 사전에 전달하였는가? 단가인하를 일시에 일률적으로 실시하였는가? 단가인하 합의 후, 소급해서 단가를 적용하였는가?
대금 지급	하도급법 제 13 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60 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어음 할인료나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였는가? 수급사업자에게 하자 이행을 위해 하자이행증권과 별개로 일정금액의 하도급대금을 유보하고 있는가? 협력사와 거래의 매출과 매입이 발생하는 경우, 협력사로부터 거래대금과 매출대금의 상계처리여부에 대하여 협의 없이 상계처리 하였는가? 대금지급시, 자사 및 기타회사의 물품으로 대금을 지급한 적이 있는가?
하도급대금의 조정	하도급법 제 16 조의 2 (원재료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원자재가격변동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10 일 이내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 개시하였는가? 경제상황 변동(물가변동 등)에 따른 단가반영요청시 10 일 이내에 협의 절차가 개시되었는가?
기술자료 요구/유용	하도급법 제 12 조의 3 (기술자료 제공 요구금지 등)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기술자료를 요구하였는가? 기술자료 요구 시 사전에 서면을 교부하였는가?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에 기술자료 내역,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 인도일 및 인도방법 등을 적시하여 제공하는가? 대가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가? 세부적인 원가자료 요구 시 서면으로 요구하였는가?

		<p>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기존 계약을 파기하였는가?</p> <p>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임의적으로 협력업체나 계열사에 제공하였는가?</p> <p>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선 출원하였는가?</p>
사급자재 및 장비	하도급법 제 12 조 (물품구매 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p>협력사에게 제조에 필요한 자재 등을 당사로부터 구매하도록 하고, 물품을 납품하기도 전에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였는가?</p> <p>당사로부터 제조에 필요한 장비나 물품을 사게 한 후, 당사 납품분에 대해 일부 하도급대금 지급 시 실제 투입한 양보다 더 차감하였는가?</p>
경영간섭 및 보복조치	하도급법 제 18 조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p>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등을 제한하였는가?</p> <p>협력사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이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 목적과 관계없이 2차 협력사의 선정, 계약조건 설정 등의 재하도급 거래내용을 제한하였는가?</p>
	하도급법 제 19 조 (보복조치의 금지)	<p>협력사의 경영자료 등 일방적으로 자료를 징구하거나 인사청탁을 명목으로 경영에 간섭하였는가?</p> <p>거래물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으로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였는가?</p> <p>일정물량을 구입한다는 조건하에 생산설비를 증설(투자)하도록 하게하고, 거래물량을 축소하거나 거래중단을 하였는가?</p> <p>협력사가 당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한다는 사유로 거래중단 또는 거래물량을 축소하였는가?</p> <p>사전예고기간 없이 거래중단 및 물량축소를 하였는가?</p>

나. 대리점법 관련

항목	구분(법조항)	점검사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	대리점법 제 5 조 (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계약서는 반드시 문서 또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는가?
		대리점 계약 체결시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에게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는가?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합의를 거쳐서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가?
		당사는 대리점에 대하여 적용하는 정책 및 지원(장려금제도 및 각종프로모션 등), 대리점 영업전략, 예상매출액, 판촉활동 등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가?
		당사거래조건을 실제보다 우량하거나 경쟁사업자 대비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당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고 있지는 않은가?
	대리점법 제 6 조 (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당사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는 않은가?
대리점법 제 7 조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대리점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기부금·협찬금 등 거래와 무관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대리점에 계약체결을 이유로 이중담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당사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는 않은가?
대리점법 제 8 조 (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	당사는 대리점의 경영활동을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있지는 않은가?	당사는 대리점의 경영활동을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있지는 않은가?
		당사는 대리점의 경영활동을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 공정거래법 관련

항목	구분(법조항)	점검사항	
가격 결정, 유지, 변경	공정거래법 제 40 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가격 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경쟁사에게 요구, 제공 또는 교환한 적이 있는가?	
		경쟁업체와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율(폭)을 결정하거나, 일정수준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가 있었는가?	
		경쟁업체와 공동으로 평균가격, 기준가격, 표준가격, 최고 및 최저가격, 금리협정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가격설정의 기준을 정하는 행위를 하였는가?	
		경쟁업체와 할인율, 이윤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대해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거나 일률적인 원가 계산의 방법을 공동으로 결정한적이 있는가?	
상품·용역의 거래조건이나 지급조건 결정	공정거래법 제 40 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경쟁업체와 거래 조건이나 지급 조건에 대한 의견을 서로 교환한 적이 있는가?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 거래 제한		경쟁업체와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한 적이 있는가?	
		경쟁업체와 공동으로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 및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 구입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한 적이 있는가?	
		경쟁업체와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할 것을 합의한 적이 있는가? 또는 사업자별로 할당한 적이 있는가?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제한		경쟁업체와 공동으로 참가사업자간에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거나,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합의를 한적이 있는가?	
		경쟁업체와 공동으로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사업자하고만 거래하도록 거래 상대방을 제한한 적이 있는가?	
		경쟁업체와 공동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특정한 사업자를 우량업자 또는 불량업자로 구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적이 있는가?	

설비제한	경쟁업체와 공동으로 업계 전체 또는 개별 사업자 별로 설비 총량 또는 신·증설 규모를 정한 적이 있는가?
	경쟁업체와 공동으로 장비 도입을 제한하거나 또는 유도한 사실이 있는가?
상품의 종류· 규격 제한	경쟁업체와 공동으로 특정 종류 또는 규격의 상품 또는 용역을 생산 또는 거래하지 않도록 한 사실이 있는가?
	경쟁업체와 공동으로 새로운 종류 또는 규격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또는 공급을 제한한 사실이 있는가?
입찰	경쟁입찰 시 사전에 입찰 참가자와 낙찰자, 응찰금액, 응찰물량 등 입찰 관련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또는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
	거래 상대방과 입찰가격, 입찰수량, 입찰거래조건 등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협의, 약정한 경우가 있는가?
경쟁업체 모임 참여	위와 같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
	위와 같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는가?
	경쟁업체 모임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업계모임 참여 신고서를 제출하였는가?
	경쟁사 임직원과 만난 자리에서 가격 등 거래 조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가?
	경쟁사 모임시 관련 내용을 기록하였는가?
	당사가 독자적으로 사업판단을 통해 가격등을 결정한 경우, 관련 내용이 문서내용에 적시되었는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가격이나 거래조건의 결정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협력”이나 “공동으로” 문구가 적시되었는가?
	문서 작성시, 경쟁사 자료 또는 정보 인용시 출처를 명확히 하였는가?

2. 무역거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자기진단 체크리스는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를 검토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때 최소한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업무 시 아래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항목	점검사항
거래상대방에 대한 검토	경제 제재 대상 목록에 거래하는(하고자 하는) 대상이 등재되어 있나요? 고객, 공급사 또는 기타 제 3자의 지배구조를 확인하였나요?
취급하는 제품에 대한 검토	취급하는 제품은 이중용도 품목 또는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였나요? 취급하는 제품은 수출하는데 수출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하였나요? 취급하는 제품은 거래 제한 품목인지 확인하였나요?
수출국가에 대한 검토	수출하려는 국가는 제재 대상 국가 또는 정권과 우호적인지 확인하였나요? 수출하려는 국가는 대금 지급 관련된 이슈가 있는지 확인하였나요? 수출하려는 국가는 부패 위험이 높은지 확인하였나요?
최종사용자에 대한 검토	최종 사용자와 최종 수혜자가 경제 제재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나요? 판매 계약 시 최종 사용자 및 제재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였나요?(이 부분은 최종사용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중요합니다.)
거래에 대한 검토	경제 제재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거래인지 확인하였나요? 취급하는 품목을 배송하고자 하는 지역이 경제 제재가 적용되는 지역인지 확인하였나요? 회사를 대신하는 제 3 자나 제품 운송하는 운송업체와 같은 제 3 자가 경제 제재 대상인지 확인하였나요?

3.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예방가이드

가. 부당지원 행위 예방을 위한 행동 지침

1) 계열사와의 거래 전 검토사항

- ① 계열사와 거래 시에도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선정하고,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할 경우 수의계약의 사유가 적정한지(효율성, 보안성, 긴급성)를 검토하여 결정
- ② 계열사와의 관계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음

(ㄱ)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

- 주된 사업영역에 대한 역량 집중, 구조조정 등을 위해 회사의 일부 사업을 전문화된 계열사가 전담하는 경우 그 일부 사업과 관련하여 그 계열사와 하는 거래
-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래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노하우 축적, 업무 이해도 및 숙련도 향상 등 인적·물적으로 협업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거래
- 거래목적상 거래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인력 보유 현황, 대규모·연속적 사업의 일부로서의 밀접한 연관성 또는 계약이행에 대한 산뢰성 등을 고려하여 계열사와 하는 거래

(ㄴ)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

-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통신기반시설 등 필수시설의 구축·운영, 핵심기술의 연구·개발·보유 등과 관련된 경우
- 거래 과정에서 영업·판매·구매 등과 관련된 기밀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 등 핵심적인 경영정보에 접근 가능한 경우

(ㄷ)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

- 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해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로 인한 전산시스템 장애 등 회사의 외적 요인으로 인한 사업상 긴급한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

③ 계열사와의 거래 시 ‘내부거래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유형별 사전 검토 및 승인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함

(ㄱ)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심의 및 승인

- 계약건별로 거래금의 다과, 재화, 용역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내부거래에 대해서 사전에 CFO의 심의 및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

(ㄴ) 내부거래위원회 승인

- 계열사와 동일거래 유형의 분기 또는 년간 거래 규모가 공정거래법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전 사전에 내부거래 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2) 거래조건 관련

- ① 매출/매입거래 시 정당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가격을 협상하도록 하고, 특히 계열사인 경우 비계열사와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격을 높거나 낮게 산정하지 않도록 유의
- ② 상품·용역 거래와 무관하게 계열사 또는 타 회사에게 무이자 또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함
- ③ 계열사 또는 타 회사와의 사이에 무상으로 인력을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않도록 함

3) 통행세 관련

- ① 거래구조상 중간 단계에 계열사 또는 타 회사를 포함하여 거래할 경우, 해당 회사의 거래상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의사 결정하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함
- ② 협력사로부터 직접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그것이 당사에 유리한 경우라면 불필요한 중간 단계를 추가하여 구매하지 않도록 함

나. 하도급법 준수를 위한 행동 지침

1) 협력사와의 계약 체결

① 하도급법 적용여부에 대한 유의사항

- (ㄱ) 고객이 당사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당사는 대기업으로 고객사와 당사간 거래는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님
- (ㄴ) 당사가 협력사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협력사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면 하도급법 적용됨(19p 참조)
- (ㄷ) 당사가 자회사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자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어 하도급법 적용대상은 아님
→자회사와 당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됨에 따라 부당지원 이슈에 유의 필요
- (ㄹ) 단순 제품, SW 라이선스 구매 등 단순 물품구매의 경우: 하도급법 상 업무위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설치/시운전 조건이 있는 경우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② 협력사에 업무를 맡기려고 할 때 유의사항

- (ㄱ) 고객이 긴급으로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 당사 정규직은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님에 따라 업무지원을 할수 있으나, 협력사의 업무지원이 필요하다면 계약체결 후 업체에 업무를 위탁해야 함
- (ㄴ) 고객의 긴급 요청으로 수주계약 전 협력업체 인력이 활용이 필요한 경우
 - 수주계약 전 선투입 재원을 확보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업무를 진행

2) 협력사와 자료 요청

① 기술자료의 범위

- (ㄱ) '기술자료'란 수급사업자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 및 자료를 의미
- (ㄴ) 기술자료에는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이거나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 재산권 관련 또는 기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적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또는 자료가 해당

※ 회사 홈페이지에 홍보 목적으로 게시되어 있는 자료나, 제3자 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팜플렛, 카탈로그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의 필요

② 기술자료 요청 절차

- (ㄱ) 공정위 심사지침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는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
 - (ㄴ) 공동으로 특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자료
 - (ㄷ)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
 - (ㄹ)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시 원재료의 원가비중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ㅁ) 제품에 하자의 원인 규명을 위해 하자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
- (ㅂ) 기술자료 제공요구 절차
 - (ㅅ) 기술자료는 반드시 회사 시스템을 통해 요청하며, 요청 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제시하고, 수령 전까지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해야 함

③ 기술자료 활용 가이드

- (ㄱ) 기술자료 유용행위 예시
 - (ㄴ) 수급사업자의 (입찰)제안서에 포함된 기술자료를 유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
 - (ㄷ) 거래 개시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제품의 디자인을 단순 열람한 후, 이를 도용하여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 생산도록 하는 경우
 - (ㄹ) 수급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권 · 실용신안권 등을 공동 출원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ㅁ) 기술자료 활용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수급사업자가 반환(폐기)을

요구하였음에도 반환(폐기)하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

④ 경영정보 요구 금지

- (ㄱ)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경영상의 정보
- (ㄴ)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원가에 관한 정보(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등)
- (ㄷ)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매출관련 정보(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 (ㄹ)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 지급내역이 기재된 회계관련 정보
- (ㅁ) 수급사업자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제품 개발·생산 계획, 판매계획, 신규투자계획 등)
- (ㅂ) 수급사업자의 영업관련 정보(거래처 명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납품조건 등)

3) 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하도급업체와 변경계약

- (ㄱ) 프로젝트 수행 중 변경계약이 가능한 경우
- (ㄴ) 전체 개발업무 공정이 지연되어 하도급 업체 개발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 증액 변경계약이 필요
- (ㄷ) (제3의) 타 업체의 업무개발이 지연되어 하도급 업체 개발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 증액 변경계약이 필요
- (ㄹ) 하도급 계약 변경절차 준수
- (ㅁ) 업무범위 변경이 있는지 먼저 확인
- (ㅂ) 하도급 업체와 변경계약 체결 요청

② 하도급업체와 계약해지

- (ㄱ) 하도급 업체의 귀책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ㄴ) 하도급 업체의 부도나 파산선고 등 중대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ㄷ) 하도급 업체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 목적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ㄹ) 하도급 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해지를 진행하는 경우
- (ㅁ) 계약 해지 사유 등을 명확히 하여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반드시 사전에 업체에게 해지 통보를 해야 함

4) 입고검사 및 대금지급

① 하도급 업체의 입고 및 검사 요청

- (ㄱ) 하도급 업체에서 검사를 요청하였으나, 결과물이 미흡한 경우 검사 요청을 반려할 수 있으나, 검사 요청을 반려하기 위해서 하도급 업체 귀책사유가 명확해야 함
- (ㄴ) 하도급 업체의 검사 요청에 대해 10일 이내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함

②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준수

- (ㄱ)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하도급대금 지급 기준
- (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
- (ㄷ) 당사가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받았다면 15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

다. 대리점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위한 행동 지침

- 1) 대리점거래 계약시에는 공정위에서 명시한 8가지 거래 조건을 명시한 당사의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체결(대리점과의 계약조건 변경시 CP팀 및 Legal팀 사전 검토 필요)
- 2) 대리점으로부터 주문 접수시 구두 주문 접수를 지양하고 정식 서면 주문서 등 발주내역을 접수하고 이를 보관
- 3) 대리점에 불리한 계약 조건을 설정하거나, 경영간섭에 해당할 수 있는 조건을 설정 금지
- 4) 대리점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위탁판매 수수료 및 각종 인센티브에 대해 약정액을 적기에 지급(미지급/지급지연/감액 금지)
- 5)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설정하여 구입을 강요하거나 목표미달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 금지
- 6) 대리점에 판촉행사 또는 제품 홍보비용 등을 전가하거나 경제상의 이익을 강요하는 행위 금지
- 7)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제한하거나, 영업비밀을 요구하거나 인사에 개입하는 등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금지
- 8) 대리점의 임직원 선임·해임 및 근무지역·근무조건 결정 시 지시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는 행위, 대리점 거래처·영업지역·영업시간 등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금지
- 9) 재판매거래 대리점에 재판매 가격을 유지하도록 강제하거나 미준수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 10) 대리점 거래를 위한 부동산 담보 설정시 담보설정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거나 대리점과 분담
- 11) 정당한 사유에 의한 반품 발생시 대리점과의 계약 조건에 의해 반품을 허용하고 처리

- 12)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사전에 서면 통보 및 시정기간 부여 등 계약서에 명기된 해지 절차를 준수
- 13)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를 이유로 거래 정지 또는 계약 해지 등 보복행위 금지

4. 신고센터 절차

가. 접속경로

- 1) URL: <https://ethicshelpline.doosan.com/>
- 2) QR CODE: 파일 참고



나. 신고하고자 하는 회사 선택 후 신고 접수

※ 두산밥캣은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신고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DOOSAN 사이버 신고센터

Language ▾ Go

운영방침

두산 사이버신고센터는 임직원과 외부인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법령, 두산 Credo 및 윤리규범 등 내부규정 위반행위, 기타 부당한 행위를 신고대상으로 합니다.

신고는 일명 또는 실명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익명신고 등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 등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선의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합니다.

임직원의 신고에는 회사의 내부신고제도 운영규정이 적용되며, 본 규정은 두드림 또는 주관부서를 통하여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이버신고센터 이외에도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주관부서 방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대상회사

신고하고자 하는 회사를 선택하여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선택 ▾

온라인 신고하기 클릭

우편신고

전화/팩스신고

이메일신고

DOOSAN 사이버 신고센터(두산밥캣)

Language ▾ Go

여러분의 소중한 신고를 사실 중심으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고, 개인적 비방이나 추측은 자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고 방법

설명 신고 여부 설명 익명

신고자 정보는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으실 수 있으나,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익명신고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 분류

선택하세요



신고자 구분

임직원 협력업체 고객 기타

신고자 내용

제목 *

내용 *

육하원칙(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에 따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찾아보기

첨부파일은 30MB 이하 파일만 지원합니다(동영상, 음성 파일 지원)

결과 회신

회신방법

전화 이메일 회신 불필요 기타

등록

5. 유관 부서

내용	관련부서
I. 자율준수 프로그램	전사
II. 하도급법	구매/연구개발/생산/AM/PS/영업 등
III. 대리점법	영업/AM/PS/마케팅 등
IV. 공정거래법	전사
V. 무역거래	영업/수출 및 수입업무 담당부서 등(1회성 거래 포함)
VI. 업무 시 점검사항	전사

6. 법규 위반사항 발생시 신고 (HOT-LINE)

	성명	연락처	E-mail
자율준수관리자	양영모 전무	031-5179-3483	davidyang@doosan.com
자율준수전담부서장	김태훈 팀장	031-5179-3368	coolth@doosan.com

발행인 두산밥캣 CLO&CCO

발행처 CP 팀

발행일 2025년 6월